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김 선 영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

지도교수 오 수 창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선 영

김선영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록]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

김선영

한 국가의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는 그 국가의 정치문화, 이념, 구조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조선에서는 국가의 고유한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서 및 기록류를 관리해왔다. 지식인층에 의한 정치가 유지될 때는 국가의 지식·정보 역시 지식인 계층에 공개하는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이렇듯 대체로 지식·정보가 지배층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독점의 양상은 근대화와 함께 변화하여 유통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유통의 대상은 일반 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불법 강점을 부인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선이 남긴 지식·정보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어땠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에는 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관서의 서고들, 그리고 궐 밖에 위치한 행궁이나 각 지방의 사고들에서 개별적으로 도서와 기록류를 소장하고 있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도서 및 기록류를, 서로 구분을 이루는 가운데 같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일제의 관여 이래 일련의 재편을 겪게 되었다.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는 궁내부 속사들이 통폐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부사, 홍문관, 돈녕사의 기능이 규장각에 통합됨으로써 규장각의 기능이 형식상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일제가 궁내부 예산의 절감을 위해 추진한 것이었다. 1908년 초에는 궁내부 훈령으로 궁내부 산하의 각 서고를 조사하도록 했다. 1908년 9월 23일, 「규장각 분과 규정」이 제정되어 규장각 아래에 전모과·도서과·기록과·문사과의 네 분과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일본의 궁내성 도서료와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기

구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각 분과에 의해 궁내부 산하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 아래에 종류별로 집결되었다.

전모과에서는 어제·어필, 선첩·선보 등 황실과 관계되는 전모 자료를 관리했다. 도서과는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행궁 내에 있던 도서들 약 10만 책을 모아 '제실도서'로 관리했다. 기록과는 궁내부의 기록 편찬의 사무를 담당하는 한편으로, 궁내부 산하에 있던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종 등록류, 의궤류와 각종 공문서류 등의 보관을 담당하였다. 이 자료들은 '궁내부기록'으로서 규장각 기록과 소관이 되었다. 문사과는, 전통적인 문사(文事)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 그리고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렇듯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 산하 각 과로 집결되는 변화가 있었고, 분과마다 종류별로 분리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도서와 관련해서는 제실도서관의 개관이 기획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개관하지 않았고,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규장각이 폐지되고 자료만 남았다.

순종대 규장각 산하로 모여있던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강점 이후 약 5개월간 궁내부 잔무취급직에 의해, 그리고 약 4개월간 이왕직에 의해 관리되다가 1911년 6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 강제접수되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과 취조국 폐지 후 그 사무를 이어받은 참사관실은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 조선 도서 및 기록류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이나 문서관의 개관과 같이 그 지식·정보를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도서, 기록, 문서철, 첩 등 종류를 불문하고 일괄 '도서'로 취급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정리했고 목록과 해제를 작성했다. 총독부 각 부서에서는 식민 통치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이 자료를 참고하고 활용했으며 조사기구에서 만든 목록과 해제는 그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 취조국·참사관분실 자체로도 본연의 구관제도조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취조국·참사관분실 서고는 당시 속칭 '규장각'으로 칭해지고 있었는데,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곳에 소장된 자료들이 소개되고 활용되었다.

총독부의 자료 활용의 목적은 점차 '역사 편수'에로 그 비중이 옮아가게 되었다. 1922년 11월을 기하여 학무국의 소관으로 옮겨져 '학무과분실'이 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학무국 산하 공공도서관으로서 조선총독부도서관 설치를 추진하여 1925년에 개관하였다. 당시 학무과분실 도서 일부만을 총독부도서관 개관시 기초장서로 보관전환했다. 학무과분실의 대부분의 도서 및 기록류는 여전히 폐쇄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면서 지식·정보의 독점이라는 전근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를 근대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 도서·기록류를 분리·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시대 도서 및 기록류 중 일부는 1911년 6월 당시 이왕직 관할로 정해져 장서각 도서를 이루었다. 이왕직 소관이 된 자료로는 무주 적상산사고 도서 및 기록류와 봉모당에 보관되고 있던 전모 자료, 구 도서과에서 신규 구입한 도서 등이 있었다.

한편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특수관권에 의해 이루어진 반출의 사례들은, 일제의 도서 관련 정책의 주목적이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온전히 보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해체의 측면을 보여준다. 통감부 시기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반출건과 조선총독부에서 오대산사고본 실록을 도쿄제국대학으로, 의궤를 궁내성 도서료로 '기증'을 명목으로 반출한 건은 상당 수준 사실관계의 규명이 이루어졌다. 오대산사고본 실록은 관동대지진 당시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며, 잔존본에 한해 환수되었다. 나머지 두 건에 관해서도 근년까지 환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반출건들이 존재한다.

먼저 규장각 소장의 도서출납부상에는 일부 도서가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에게 기증되어 그에 의해 데라우치문고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책들은 모두 야마구치 현지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또한 1920년대 일본이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의 전후 복구 원조로 도서 1만 3천여 책을 기증할 때 당시 학무과분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 도서가 38종 포함되었다. 여기에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 통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책자 몇 가지가 첨가되어 보내

졌다. 이 도서들은 현재도 벨기에 UCL 도서관에 '일본도서 컬렉션'으로서 소장되고 있다.

끝으로 반출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학부도서를 살펴보았다. 도쿄대학 오구라문고는 오구라 신페이의 장서 기증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그 안에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중앙관청이었던 학부(學部)의 장서인이 날인된 도서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기로는 12종이다. 대한제국 학부도서는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의해 취조국-참사관분실로 인계되어 현 '규장각 도서' 중에서 대체로 확인이 되나, 위의 12종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오구라 신페이 장서에 포함되어 현재 도쿄대학에서 소장되고 있다. 오구라 신페이는 1911년 5월에 총독부 학무국에서의 근무를 시작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며 국가 소유의 도서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기에 합법적 취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도서, 기록, 서목, 규장각, 제실도서, 참사관분실, 도서관, 장서각
학 번 : 2017-36835

목 차

서 론 ····· 1

제 1 장 통감부 시기 규장각의 기능 변화와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관리 ····· 13

제 1 절 통감부의 궁내부 규장각 직제 개편 ····· 17

1. 황실재정정리와 규장각 기능의 확대 ····· 17
2. 규장각 분과 규정과 도서 및 기록류 관련 규정 시행 ····· 28

제 2 절 규장각 각 분과에 의한 도서 및 기록류의 종류별 분리 ····· 35

1. 전모과의 전모(典謨) 자료 분리 관리 ····· 35
2. 도서과의 '제실도서(帝室圖書)' 구상 ····· 40
3. 기록과의 기록류 분리 관리 ····· 49
4. 문사과의 문사(文事) 업무와 활자 보관 ····· 53

제 2 장 조선총독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조사와 이용 ····· 58

제 1 절 조선 도서 및 기록류 조사 기구의 설치와 강제접수 ····· 58

1. 취조국(取調局)·참사관분실(參事官分室)의 설치 ····· 58
2. 취조국의 순종대 규장각 자료의 강제접수 ····· 64

제 2 절 구관제도조사(舊慣制度調査)를 위한 도서 정리 사업의 전개 ····· 69

1. 서고·서가별 도서의 재배치 ····· 70
2. 사부분류(四部分類)의 적용 ····· 81

3. 지방사고 소장 도서 및 기록류의 이송 ····· 86
4. 자료의 수집과 불출(拂出) ····· 89
5. 해제·발췌 사업의 전개와 자료 이용 ····· 94
제 3 절 도서 정리 사업 이후 보관전환 ····· 102
1. 학무국으로의 이관과 조선사편수사업(朝鮮史編修事業)에의 이용 ····· 102
2.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보관전환 ····· 105
3.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의 보관전환 ····· 110
제 3 장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분리와 해체 ····· 116
제 1 절 이왕직(李王職) '장서각(藏書閣) 도서'의 분리 ····· 120
1. 집옥재(集玉齋)·시강원(侍講院) 도서의 인계 거부 시도 ····· 120
2. 봉모당(奉謨堂) 및 적상산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한 도서 및 기록류 관리 ····· 125
제 2 절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해외 반출 사례 ····· 135
1. 일본으로의 '업무용' 반출 ····· 135
2.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政務總監)에 의한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로의 반출 ····· 150
3. 벨기에 뢰번(Leuven)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으로의 기증 ····· 154
4. 대한제국 학부도서의 오구라문고(小倉文庫)로의 반출 ····· 162
결 론 ····· 168
참고문헌 ····· 178
부 록 ····· 192
Abstract ····· 204

표 목 차

제 1 장 통감부 시기 규장각의 기능 변화와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관리

<표 1> 1907년 궁내부비 예산 명세서 ····· 21

<표 2> 1907년도 궁내부 규장각 예산 명세서 ····· 22

<표 3> 「규장각 분과 규정」에 따른 각 분과의 사무 ····· 29

<표 4> 규장각 도서과의 제실도서 부류 구분 ····· 42

<표 5> 규장각 기록과 소관 궁내부기록의 종류 ····· 50

제 2 장 조선총독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조사와 이용

<표 1> 시기별 『조선총독부도서목록』 범례 중 조선고서 관련 조항 ····· 68

<표 2> 취조국 시기의 서고 명칭과 소관 자료 ····· 75

<표 3> 시기별 서고 명칭과 소관 자료 ····· 78

<표 4> 취조국·참사관분실의 도서 부류 구분 ····· 82

<표 5> 참사관분실 실록 발췌 취조사항 (1914년 5월 1일 기준) ····· 96

제 3 장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분리와 해체

<표 1> 이토 히로부미 지휘의 모리 다이지로 차람 도서 목록 ····· 138

<표 2> 오구라문고 내 학부도서 ····· 164

그 림 목 차

제 1 장 통감부 시기 규장각의 기능 변화와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관리

<그림 1>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구조와 변화 ····· 16

<그림 2> 1904년 이래 일제의 각종 조치 ····· 20

<그림 3> 인수궁, 기호학교, 호위본영의 경계 ····· 43
<그림 4> 『경성부시가도』(1911)에 표기된 규장각 도서과 ····· 43
<그림 5> 통감부 시기 도서 및 기록류 소장 상황의 변화 ····· 56

제 2 장 조선총독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조사와 이용

<그림 1> 통감부·조선총독부 시기 구관제도조사의 흐름 ····· 60
<그림 2> 학부에서 보관된 『五經百篇』 ····· 72
<그림 3> 구 종친부 부지 내 신축서고 ····· 73
<그림 4-1> 1915년 조선총독부 지형도 ····· 74
<그림 4-2> 『경성시가도』(1925) ····· 74
<그림 4-3> 구 종친부 부지 내 서고의 배치 ····· 74
<그림 5> 참사관분실 서고 배치 ····· 76
<그림 6-1> 제1고(옥첩당) 전경 ····· 79
<그림 6-2> 제1고(옥첩당) 서가 ····· 79
<그림 7-1> 제2고(경근당) 남측면 ····· 79
<그림 7-2> 제2고(경근당) 서가 ····· 79
<그림 8> 제3고(이승당)과 제2고(경근당) ····· 79
<그림 9> 구 종친부 서고의 정문 ····· 79
<그림 10> 제1고(옥첩당) 서가 확대 ····· 80
<그림 11> 1930년대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 ····· 80
<그림 12> 『조선총독부도서목록』(1916) 목차 ····· 84
<그림 13> 태백산사고 전경 ····· 88
<그림 14> 태백산사고 사각 내부 ····· 88
<그림 15> 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된 『동의보감』 중 제3책 ····· 109
<그림 16> 「正宗 創建의 奎章閣, 京城帝大로 넘어가」 ····· 114
<그림 17> 「醫專病院에 너머간 奎章閣建物」 ····· 115

제 3 장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분리와 해체

<그림 1>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 재편의 흐름…… 117
<그림 2> 적상산사고 도서에 날인된 장서인…… 131
<그림 3>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 소장『中庸』…… 153
<그림 4>『中庸』의 첨지…… 153
<그림 5>『中庸』의 표지…… 153
<그림 6> 벨기에로의「朝鮮總督府寄贈書」…… 158
<그림 7> 오구라문고『捷解新語』의 장서인…… 164
<그림 8> 오구라 신페이 필사본『簡易辟瘟方』…… 167

부 록 목 차

<부록 1-1> 창덕궁 내 신축 궁내부 청사 제2층 평면도…… 192
<부록 2-1> 1914-1915년 참사관분실 각 서고별 소장 현황…… 193
<부록 2-2>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의 사례…… 194
<부록 3-1> 장서각 소장 '제실도서지장' 날인 도서와『재산목록』대조… 196
<부록 3-2>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로 반출된 '규장각 도서' 목록… 200
<부록 연표> …… 202

서 론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는 조선의 정치문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성립되었다. 보편적으로 한 국가의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는 그 국가의 정치문화, 이념, 구조와 관련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1] 조선의 행정은 무엇보다도 전례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각 관청에서는 등록이나 관청일기와 같은 기록물을 작성하여 보관했다. 조선에서는 행정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류 외에도 국가 운영의 원리와 관련된 서적을 간직하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 교화의 근본이 서적에 갖추어져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2] 조선후기에는 역대 국왕의 어제·어필을 간행하여 보관하는 체계가 보다 체제를 갖추어 갔다.

조선후기 조선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기록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중요 기록물과 국가 운영의 원리가 담긴 서적을 갖추어둔 가운데 국정이 운영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글에서 잘 나타난다.

> "서적을 보관할 때도 경서에 대해서는 '장(藏)'이라 하지 '봉안(奉安)'이라고 하지 않고, 어제(御製)에 대해서는 '봉안(奉安)'이라 하지 '장(藏)'이라 하지 않으니 그 사체(事體)가 더 융숭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3]

> "우리나라 문헌 중에『승정원일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을 찾아내고 신빙하고 참고하며, 등록(謄錄)의 체(體)로서 사책(史策)의 용(用)을 겸하니,

---

1) 기록물 관리의 내용에는 생산, 획득, 분류와 색인작성(indexing), 접근 통제, 저장, 이용과 재이용, 이동, 변환, 처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바탕 체계를 관리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표준·지침·매뉴얼 국가표준,「문헌정보 기록관리 제1부: 개념과 원칙」(2020년 개정, 표준번호: KS X ISO 15489-1) 참조.

2)『奎章閣志』권1,「書籍第五」"敎化之本, 具於書, 治亂之原, 鑑於書. 故自古建藏書之府, 立編書之官. 進書曬書, 亦皆有儀."

3)『日省錄』순조 14년(1814) 4월 28일(己丑) "庤書之時經則曰藏而不曰奉安. 御製曰奉安而不曰藏. 其事體之加隆亦可知已."

그 긴요하고 중함이 이와 같습니다."[4]

이렇듯 조선에서는 국가의 고유한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서 및 기록류를 관리해왔다. 지식인층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는 국가의 지식·정보 역시 지식인 계층에 공개하는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대체로 지식·정보가 지배층 중에서도 핵심 지배층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다. 그 독점 양상은 근대화와 함께 변화하여 유통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유통의 대상은 일반 시민층에까지 확대되었다. 근대 민주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도서관과 박물관을 분리하고 기록관을 만들어갔다. 이전의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근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근대 도서를 수집하여 도서관에 보관하였고 이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5]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조선시대 규장각'[6]의 도서를 비롯한 구 대한제국 소유의 도서 및 기록들을 총독

---

4) 『承政院日記』 순조 16년(1816) 8월 24일(庚子) "我朝文獻, 莫如政院日記, 蓋其該括事實, 憑信掌考, 以謄錄之體, 兼史策之用, 其爲緊重, 有如是矣."

5)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근대적인 조직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우선 근대적인 조직은 도서관을 조직의 지식수준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 근대 박물관은 역사 박물, 미술품 컬렉션을 수집·보존하고 일관된 시점에 따라 표본을 전시하고 해설함으로써 관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록관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문서기록을 조직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시작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부터이며, 이것은 조직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소재를 제공한다. 이시카와 데쓰야 외(조혜린 외 옮김), 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한울, 17-18면.

6) 본고에서는 규장각 명칭과 관련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조선시대 규장각', '순종대 규장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고종대는 대한제국기가 포함되어 있고 갑오 이후 성격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기보다는 조선시대 규장각이 기능이 축소된 상태로 계승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였기에 편의상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포괄하고자 한다. 이하 따옴표는 생략한다. 한편 조선 도서 및 기록류로서 서울대로 이관되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것을 칭할 때 필요에 따라 통

부 취조국으로 강제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참사관분실, 학무국,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어졌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불법 강점을 부인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해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남긴 지식·정보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과연 일반적인 근대 민주 국가의 그것과 기본적인 성격이 같았는지, 달랐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왕조를 정복한 세력은 대개 왕조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파괴한다. 일본 역시 그러하였다. 일제는 1904년 한일의정서 강요 이래 시정개선을 명목으로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일본인을 배치하여 내정에 간섭했다. 일제는 고종의 경제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재정 관련 기구들을 설치하여 황실재정정리를 추진해나갔다.

1907년 11월 27일「궁내부 관제」개정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궁내부의 규모와 비용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 관제 개정으로 홍문원, 종부사, 돈녕사가 '규장각에 병합'되었다. 1908년 9월 23일 제정된「규장각 분과 규정」으로 규장각 아래에는 전모과, 기록과, 도서과, 문사과가 생겨났다. 순종대 규장각은 1907년「궁내부 관제」개정과 1908년「규장각 분과 규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규장각과는 그 성격이 뚜렷이 달라져 있었다. 조선시대 규장각은 왕실 자료를 봉안하고 경적을 소장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종대 이후로는 왕실 및 종친 자료(전모과), 주요 서적 수장처들에 보관되던 도서들(도서과), 의궤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청일기류, 등록류와 같은 기록류와 지방사고(기록과), 진강(進講)·대찬(代撰) 및 사책(史冊)의 기초(문사과)까지 담당하는 기구가 되었다.[7] 일본의 궁내성 도서료(圖書寮)를 보면, 그 소장사무로 황족첩적의 상장(尙藏)부터 도서 출납·보관, 공문서류 편찬과 보관, 실록 편수 등이 규정되어 있고, 어계보과, 도서과, 기록과, 서무과(이후 도서과, 기록과, 편수과, 서무과로 바뀜)라는 네 개의 과를 두는 '사과체제(四課體

칭에 준하여 '규장각 도서'(또는 '규장각 자료')라는 표기를 사용하고자 한다('장서각 도서'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7) 金泰雄, 1995「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奎章閣』18, 176면; 이상찬, 2013「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한국문화』61, 363면 등.

制)' 하에 운용되고 있었다. 그 편제와 사무분장에서 양자 간의 유사성을 감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로서 '규장각 자료' 관리자의 입장에 있었던 백린이 1962년 발표한 석사논문은 규장각 자료의 형성 과정과 관련한 선구적인 연구에 해당한다.[8] 백린은 이 연구에서 1905년 이래의 궁내부 관제 개정이 궁내성 관제를 모방한 것이며, 궁내부 규장각을 일본의 궁내성 도서료의 체제를 본떠 개편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통해 논증되지 않았고,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들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신용하 또한 '규장각 자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찍이 규장각 자료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9]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형성 과정에 관한 종합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순종대 궁내부 관제 개정과 규장각 분과규정을 거치며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을 비롯하여 각 관서의 일기, 등록, 존안 등이 규장각에 이관된 것과 오늘날 '규장각 자료'에 방대한 분량의 관찬 기록류가 들어온 것이 이 시점이었음을 일찍이 지적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10]

이렇듯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오늘날에 이른 경위의 큰 흐름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러나 황실재정정리 과정에서 일제의 주도로 궁내부 관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록류 원질서 파괴가 시작되었다는 점, 대한제국에서 스스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정확히 지적되지 못했다. 그 밖의 초기 연구로는 이행숙의 연구가 있는데, 형성 과정보다는 규장각 장서 그 자체의 문헌정보학적 정보에 주목한 것이다.[11]

이후 이상찬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황실재정정리 과정에서 대한제국 기

---

8) 白麟, 1962「奎章閣 藏書에 對한 硏究: 特히 그 沿革과 藏書內容의 變遷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9) 愼鏞廈, 1981「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奎章閣』5.

10) 위의 논문, 71면.

11) 이행숙, 1982「奎章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록류의 원질서 파괴가 시작되었음을 최초로 밝혔다.[12] 김태웅은 일제가 조선 도서와 기록류를 구관제도조사 및 식민통치 정책 수립에 이용하였다는 점을 규명했다.[13] 서영희는 통감부 시기 궁내부 관제 개정과 규장각 분과 규정이 도입되는 가운데 서적과 공문서류가 규장각으로 집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했다.[14]

이들 연구는 그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순종대 규장각의 변화가 일제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 성격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 취조국과 참사관분실에서 편철한 문서철 자료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규장각 자료'의 형성과정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이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15] 그러나 이후로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규장각이라는 관리기구는 폐지되고 도서와 기록들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들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도서'로 취급되었으며 그 분류에 있어서도 사부분류가 적용되었다. 또한 총독부 총무과에서 관리했던 일반 조선총독부 도서와는 별도로 특수한 취급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취조국과 참사관분실에서 추진한 도서 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장각 자료'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규명되었다.[16] 1916년까지의 도서 정리 사업 이후의 사실들에 관

---

12) 이상찬, 1991 「『引繼에 關한 目錄』과 『調査局來去文』의 검토」『서지학보』 6; 1992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奎章閣』 15; 1997 「규장각 소장 자료의 공문서 분류도장에 대하여」『書誌學報』 20; 2013 앞의 논문.

13) 金泰雄, 1994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奎章閣』 16; 1995 앞의 논문.

14) 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奎章閣』 17.

15) 이후로는 전체 흐름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로 개별 서목에서 기존에 조명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박현순, 2015 「『奎章閣書目』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한국문화』 70; 민회수, 2022 「대한제국 말기 學部의 규장각 도서 관리」『奎章閣』 61.

16) 愼鏞廈, 1981 앞의 논문;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이상찬, 2013 앞의 논문.

해서는 1922년 학무국 이관, 1930년 경성제국대학 이관 등의 사실관계만이 적시되고 배경이나 인과관계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1915년 중추원 관제 개정으로 구관제도조사 사무가 참사관분실에서 중추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중추원에 『조선반도사』 편찬 사무가 규정되었다. 중추원에서 사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참사관분실의 도서 및 기록류가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그리고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개칭)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이 『조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7] 1922년 도서 및 기록류가 학무국으로 이관된 배경에는 이처럼 일제의 관심사가 변화된 점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도서들이 1922년 학무국으로 이관된 것은 일제가 이로써 도서 정리를 어느 정도 완결했다고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는 1925년에 가서야 최초의 공공관립도서관으로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하였는데,[18] 이 개관을 앞두고 학무국 학무과분실에서 보관되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중에서는 2천 책이 되지 않는 극히 일부를 보관전환(保管轉換)[19] 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의 강제접수가 있었을 당시, 도서류만 하더라도 10만 책 가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공에 개방되는 도서관으로는 거의 이관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학무과분실에 보관되던 것은 도서류 외에도 왕실의 모훈 자료와 계보자료, 국가 운영 전반의 공문서철과 정부기록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었다.

---

17) 일제의 『조선반도사』 및 『조선사』 편찬 사업에 관해서는 정상우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정상우, 2011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 그러나 이 역시도 도서관의 사명이나 운영된 방식, 기관지에 싣고 있던 금지서적 목록 등을 고려하면 조선총독부의 문화 방면에서의 통치를 위한 창구였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 보관전환(保管轉換)이란 관리상 및 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관해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일본에서 물품 관리와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다. 대한제국에서는 1905년 이후 제정된 일부 규정에서 산발적으로 보인다.

이 도서 및 기록류는 1928년에서 1930년에 걸쳐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자료군 일체를 대학 도서관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렇듯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위치시키고 분류하고 이용한 방식, 그리고 경성제대로 이관한 경위에는 깊이 살펴볼 만한 지점들이 있다. 그 중요성에 비해 도서 정리 이후의 경위들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를 근대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 도서·기록류를 분리·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시대 도서 및 기록류 중 일부는 장서각 도서로 분리되어 이왕직에서 관리하였다. 이왕직은 왕실 자료와 일반 자료를 분리하여 관리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조선총독부의 '전근대의 해체'마저도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왕직에서 관리하던 도서 및 장서각과 관련해서는 천혜봉의 연구가 선구적이다.[20] 현재의 '장서각 도서'를 이루는 각 도서 및 기록류의 전래 또는 수집 경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순종대 규장각과 관련해서는 당대의 정치사적 맥락을 감안할 때 불분명한 설명도 있다.[21] 이러한 점은 이후로 '규장각 도서' 형성 과정의 연구와 '장서각 도서' 형성 과정의 연구에서 순종대 규장각 도서과 소관 제실도서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차이 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순종대 이래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

20) 千惠鳳, 1972「藏書閣의 珍籍」『國學資料』創刊號; 1996「藏書閣의 歷史」『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후 '장서각 도서' 형성 과정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왔다. 金基洙, 1975「藏書閣」『민족문화』창간호; 尹炳泰, 1991「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정신문화연구』14(3); 이재준·송일기, 2009「藏書閣 所藏 內賜本의 書誌的 硏究」『서지학보』33; 이혜정, 2012「「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서지학연구』52; 이재준, 2020「장서각 소장 적상산사고본 연구」『藏書閣』44; 2021「장서각 도서의 성립 과정과 전래 경위」『藏書閣』46; 이왕무, 2014「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藏書閣』31; 김문식 외, 2019『왕실 서고 봉모당의 건립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1) 이와 관련해서는 본론 제1장 제2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위에서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도서 관리가 갖는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라는 특수관권에 의해 여러 차례 도서·기록류가 반출되었다. 일제에 의해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원질서를 잃고 한곳으로 합쳐졌던 것에 이어 또다시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해체되어갔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정무총감 통첩을 통해 조선에 관한 제국의 문고를 완전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았으며 각 시기마다 당시의 필요에 따라 반출을 주도하거나 인허했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도서 및 기록류 반출로는 우선 '업무용'을 이유로 일본으로 반출된 사례들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감부 시기 이토 히로부미의 도서 반출, 오대산사고본 실록 반출, 의궤 반출 등을 들 수 있다.[22] 이러한 사례들은 대체로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 궁내성 도서료, 도쿄제국대학 등에서 보관되었다. 이들 도서 및 기록류는 1966년과 2006년, 2011년을 거치며 대체로 환수가 이루어졌다. 도쿄제국대학 반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경우 관동대지진 당시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어 잔존본만이 환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라는 특수관권에 의한 반출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반출 사실이 정확히 지적되거나 규명된 바 없는 반출 사례들이 존재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고다마 정무총감에게 '기증'하여 일본 야마구치 데라우치문고로 보내진 도서들,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으로 '기증'된 도서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또, 도쿄대학 오구라문고에는 대한제국의 '학부도서' 장서인이 날인된 도서가 현재까지 12종이 확인되었다. 오구라문고는 오구라 신페이의 수집 장서 기증을 통해 조성된

---

22) 이토 반출 도서: 白麟, 1968「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書誌學』創刊號; 이상찬, 2002「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韓國史論』48.
오대산사고본 실록: 이상찬, 2013「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자료적 가치」『한국학연구』31; 2021「오대산사고본 조선시대 실록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왕조실록·의궤박물관, 17-28면.
의궤: 강문식, 2012「일본 宮內廳 소장 儀軌의 현황과 특징」『奎章閣』39.

것으로, 그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국가 소유의 도서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이 도서들은 무단 반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존재 자체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반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화재 문제가 얼마만큼 깊이 다루어져 오지 못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통감부 시기와 총독부 시기에 걸쳐 반출된 도서들은 일부는 환수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반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서 반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양국 실무자 간에는 이것을 '반환'이라 할 것이냐 '기증'이라 할 것이냐로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그 아래에는 통감부 및 식민지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 문화재 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약탈행위는 없었다, 합법적인 반출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일제 반출 도서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일본 내 조선본 유통 경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연구가 되어온 경향이 있다.[23] 일본인 연구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한결같이 '약탈'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식민통치를 합법으로 인식하고 조선총독부에서 한 '기증' 행위 또한 유효적법했다고 파악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총독부의 '기증' 행위를 통해 반출된 사례들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며, 당시 반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즉 이 문제는 현대사까지도 미묘하게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각 세부 문제별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시야에서 종합하고 조망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확인되거나 기존에 알려진 자료 중 기존에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확인되었다. 특히 일본 측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자료들을 포괄하고 사안의 성격과 본질을 규

23) 永島広紀, 2013「旧宮内省図書寮の朝鮮本蒐集と日韓の文化財問題」『年報朝鮮學』 16; 渡辺滋, 2021「近代における朝鮮本の流通: 日本との関わりを中心に」『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14.

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적 접근이 아닌 역사학적 접근을 토대로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를 어떻게 재편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역사학적 접근을 주로 적용하되 부분적으로 논증에 필요한 한도에서 문헌정보학적 접근을 활용할 것이다.

일제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와 관련한 자료 현황은 크게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 일본 자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 편찬의 『圖書關係書類綴』과 각종 도서대장류가 있다. 규장각 도서과 괘지에 작성된 것부터 하여 시기별로 작성된 도서대장들을 분석하면, 일제의 도서 정리의 실제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서각에는 이왕직의 도서 관리와 관계된 각종 도서대장류가 소장되어 있다. 또 한국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취조국으로 도서가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이 도서들과 관련해 궁내부 규장각 각 분과에서 편철한 문서철 몇 건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장서각 소장의 문서철들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원자료 또는 원자료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편철해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희박한 순종대 규장각의 사무 내용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 측 자료로는 국립공문서관과 외무성외교사료관에 소장된 공문서들이 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문건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지만 국내 자료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또 『職員錄』과 같이 공간된 자료, 또 전기나 회고록과 같은 개인 자료들은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친 기간 동안 '도서 정리' 사업에 관여한 인물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시기별로 편찬된 『朝鮮總督府圖書目錄』과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版)』(1913),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을 함께 살피는 것은 조선총독부 전체적인 도서 관리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자료들은 국내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에 일부

소장되어 있다.

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를 통해서는 도서 정리의 실상에 관해 보다 상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사관실에서 직접 수행한 구관제도조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조선사편수회에 있던 중추원 조사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풍부하여 참고가 된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성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감부시기 '조선시대 규장각'의 기능 변화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일제는 내정간섭과 황실재정정리를 전개해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도 궁내부 관제를 개편함으로써 기구를 통폐합했고 이에 따라 그 산하의 도서 및 기록의 질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제가 관여하기 전의 도서 및 기록류 보관 양상이 1907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08년 규장각 분과규정이 제정되고 각 분과에서 도서, 기록, 전모 자료 등을 나누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종류별 분리가 일어난 양상을 짚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정리하고 이용한 경위를 살필 것이다. 먼저 전담 부서였던 취조국과 참사관분실이라고 하는 기구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 기구들에서는 도서를 정리·수집하여 총독부 각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취조국과 참사관분실 스스로도 발췌조사를 수행하였다. 1915년 중추원 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에 구관제도조사의 사무와 조선반도사 편수 사무가 규정된 이래로는 중추원의 이들 사무에도 이 도서와 기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구관제도조사에서 조선사 편수로 자료 활용 목적의 비중이 옮아가는 가운데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1922년 학무국 학무과분실 소관이 되었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이 도서를 맡게 된 이래 일부 도서가 총독부도서관 개관시 기초장서로 보관전환되었다. 1928년 이후 1930년까지 도서 및 기록류 전체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분리와 해체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왕직 관리 도서의 분리, 그리고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라는 특수관권에 의한 도서 및 기록류 반출을 검토할 것이다. 이왕직 소관이 되는 자료들의 형성 과정과 이 자료들의 분리의 경위, 관리의 형태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도서 반출과 관련해서는 먼저 '업무용'을 이유로 반출된 사안들을 살펴보고, 기존에 규명되지 않았던 반출 사례들을 사안별로 항목을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1 장 통감부 시기 규장각의 기능 변화와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관리

통감부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의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국가에 의해 관리된 도서 및 기록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목이나 사고(史庫)별 형지안(形止案)이 있으며, 개별 도서에 날인되어 있는 장서인(藏書印)도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했던 도서 및 기록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참고와 활용을 위한 것, 왕실 상징과 관계된 것,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 영구 보존을 위한 것 등이 있었으며 여러 측면을 동시에 가진 것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국가 주도로 문헌을 간행하면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 범위를 살펴보면 사고(史庫)를 대상으로 하는 것[1]에서 지방사고와 궐내 주요 문한기구에 걸친 것[2], 지방사고와 궐내외 각사, 종묘사직, 성균관, 전국 각도에 이르는 것[3] 등, 문헌의 성격이나 당시 상황, 왕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각 관청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등록류나 관청일기류를 참고와 활용을 위해 보관하였다. 국가에서 간행하는 것 외에도 각종 서적을 수집과 수입 등의 방식으로 마련해 두었다. 서목이나 사고 형지안 자료에 어제·어필, 보첩류, 어정제서, 윤음, 일반 서적 등 복합적인 성격의 도서 및 기록류들이 함께 보관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서들 중에서도 특히 문한(文翰)과 관련된 곳에 장서량이 많았다. 규장

---

1)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1771) 3월 14일(乙卯) “敎曰 裕昆錄命芸閣印出, 藏置五處史庫”

2) 『승정원일기』 순조 14년(1814) 6월 24일(癸未) “備忘記, 正宗大王御製, 列聖御製合附本, 奉謨堂·文獻閣·五處史庫·外奎章閣·內閣·玉堂·春坊·西庫, 各一件奉藏”

3)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3월 13일(己亥) “上命寫傳敎曰, 今印補編進上件三件, 進獻件一件印進, 承政院·弘文館·藝文館, 侍講院·五處史庫·宗廟·永禧殿·社稷·五上司·六曹·京兆·柏府·薇垣·成均館·校書館·尙方·廚院·內侍府·內需司·三都·八道刊頒”

각에서는 '어제(御製)·어필(御筆)', '선첩(璿牒)·선보(璿譜)', '어정제서(御定諸書)'와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일반 서적류를 서로 구분하되 함께 보관했다.[4] 규장각의 특수서고라 할 수 있는 봉모당에는 어제·어필을 비롯한 모훈(謨訓) 자료가 봉안되었다. 홍문관과 시강원 또한 문한과 관련한 관서였기 때문에 상당량의 장서를 갖추고 있었다. 시강원에서는 열성조의 어제·어필류와 동궁일기, 그리고 경서(經書), 사기(史記), 유가(儒家), 병가(兵家), 의가(醫家), 문집(文集) 등 각종 서적을 소장했다.[5] 홍문관에서도 어제어필류와 어정제서 및 일반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었다.[6]

한편, 조선에서는 도서 및 기록류의 보존을 위해 중앙에는 내사고,[7] 지방에는 외사고를 두었다. 지방사고에는 실록·의궤류·선원보첩류와 각종의 일반 서적들이 함께 보관되었다. 1890년대 이후로는 북한산행궁도 '양주사고'라고 하여 사고에 준하여 관리되는 모습이 보이며,[8] 보인류·의궤류·보첩류와 어정서, 일반 서적 등이 함께 보관되었다. 왕실자료와 일반 서적 간에 안치하는 의절이 달랐지만 소장된 자료들은 대개 왕실과 국가에 있어 활용, 또는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들에 해당했다.

---

4) '어제·어필', '선보·선첩', '어정제서' 및 경·사·자·집의 일반서적이라고 하는 대분류는 정조대의 것을 필사한 『서서서목초본』에서부터 고종대 초중기 『서고서목』, 『이문원서목』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서목의 목차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이유원이 쓴 『林下筆記』의 「春明逸史」 '摛文書目'에서도 수장 규모를 이와 같이 나누어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5) 『춘방장서총목』(1905)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6) 현재로서는 홍문관의 서목은 1907년에 홍문관이 폐지되고 규장각에 통합된 후의 것만 보이는데, 『홍문관책목록』(1908)과 『규장각서목』([1908]) 「전홍문관건」을 통해 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내사고는 곧 춘추관사고인데, 1811년(순조 11) 화재로 실록이 대거 소실된 이래 내사고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그 이후로도 춘추관에서는 실록이 보관되고 있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춘추관이 폐지된 이후로는 비서원(비서감)에서 담당하였다. 내사고 실록은 1904년 경운궁 화재로 소실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41년(1904) 3월 3일(壬午, 양력 4월 18일)].

8) 『고종실록』 고종 34년(1897) 7월 15일(양력) "又以參政南廷哲提議, 江華府、楊州、江陵、奉化、茂朱郡史庫, 自今議政府句管守護事, 經議上奏. (...) 竝制曰可."

그리고 경복궁 내 고종의 서재였던 집옥재에는 4만여 책에 가까운 방대한 장서들이 수장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高麗史』, 『過化存神』, 『离院條例』와 같이 어정제서로 간주되었던 책들도 몇 건이 보이지만 중국본 서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9] 특히 1880년대 간행된 한역서학서들이 다수 포함된, 고종의 관심사를 반영한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기타 관서들의 경우 관청일기류, 등록류 외에도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서적을 갖추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갑오개혁 이후로는 새로운 공문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공문서철들도 생산·보관되게 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에 보이는 특성으로 1) 목적에 맞는 개별 보관과 이용, 2) 각지 사고로의 분산 보존, 3) 그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료의 병치(竝置) 경향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대한제국기에도 이어졌다.

대한제국의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는 통감부 시기 일제의 관여 이래로 변화를 겪었다. 1907년 순종 즉위 이후로는 궁내부 산하의 도서 및 기록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일제는 순종대 궁내부 속사들을 통폐합하고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를 규장각 산하 각 과로 집결시켰다. 내각 및 각 부서에 소재한 것들은 각 부서의 참고 자료로서 분산 보관되고 있다가 강제병합 이후 취조국·참사관분실 또는 학무과분실로 보관 전환되어 합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구조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관여하면서 그 관리체계가 재편되어 나간 초기 단계로서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으로 집결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통감부 시기 궁내부 관제 개편 및 규장각 기능 강화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순종대 규장각 각 분과 아래에서 도서 및 기록류들이 분리 관리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9) 『집옥재서적목록』(규장각 소장, 奎11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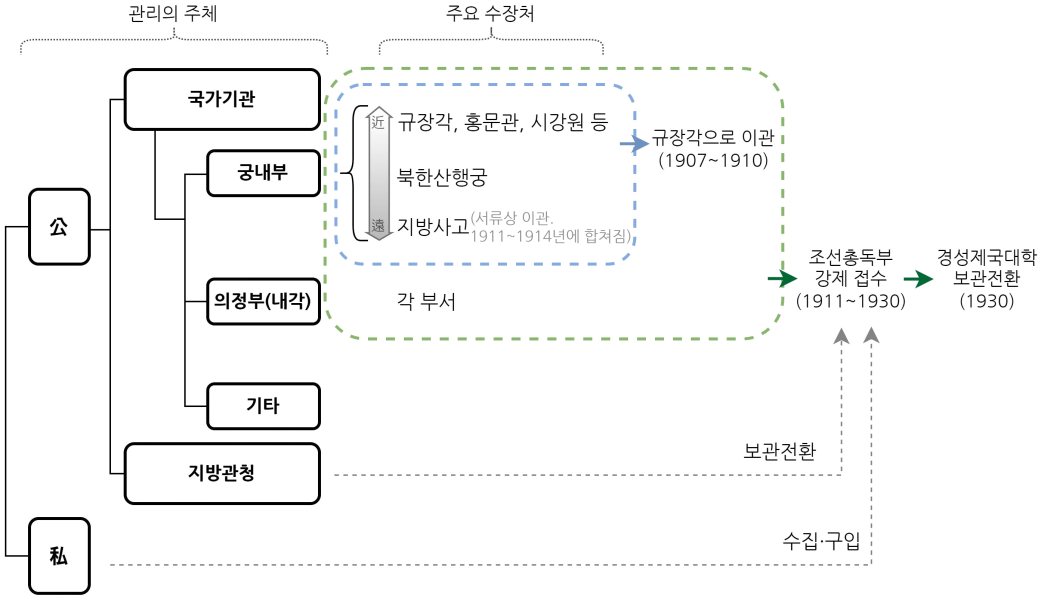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구조와 변화

제 1 절 통감부의 궁내부 규장각 직제 개편

1. 황실재정정리와 규장각 기능의 확대

규장각(奎章閣)은 정조 즉위년인 1776년, 어제(御製)·어필(御筆)을 관장하는 관서로서 창설되었으며,[10] 1781년(정조 5) 2월 이후로는 타관 겸직제도가 대폭적으로 도입되면서 정치적 선도기구로서 면모를 일신했다.[11] 정조대 규장각에는 열성 어제의 봉안, 서적의 편찬 및 관리, 초계문신 교습 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12] 『일성록』 편찬의 사무도 규장각에서 관장하였다.[13] 순조대 이후로는 규장각의 실질적인 기능이 위축되었지만, 선왕의 정치 이념을 계승한다는 면에서 명예와 지위가 높은 관서로 유지되었다.[14]

고종 즉위 초 흥선대원군에 의해 규장각의 어진·보첩 봉안 관련 기능을 종친부에 할애하는 조치가 있었으나,[15] 규장각의 각반 제도는 고종 친정 후 복구되었다.[16] 규장각 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갑오-을미개혁 때 이루어졌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김홍집 내각은 왕실사무를 국정과 분리하기 위해 궁내부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규장각은 왕실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 소속 관청이 되었다.[17] 1895년 4월에는 규장원(奎章院)으로의 개칭과 함께 그 사무가 "王室典籍及記錄을 保管ᄒᆞ고 列聖御製·御筆·當宁御

10)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1776) 9월 25일(癸巳).

11) 제학을 비롯한 직임의 대부분을 홍문관의 직으로 겸하게 하여 각신으로 근시직을 일원화하다시피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승정원, 지제교 사관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李泰鎭, 1990 『奎章閣小史』, 서울大學校圖書館, 21면.

12) 奎章閣 편, 1784 『奎章閣志』「奉安」·「書籍」·「敎習」 등.

13) 『정조실록』 권10, 정조 9년(1785) 7월 30일(丁丑).

14) 延甲洙, 1994 「高宗 初中期(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 『奎章閣』 17, 57면.

15) 위의 논문, 59-63면.

16) 『고종실록』 권11, 고종 11년(1874) 10월 1일(庚午).

17)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1894) 6월 28일(癸酉); 권32, 고종 31년(1894) 7월 18일(壬辰). 종전의 규장각에 교서관(校書館), 사자청(寫字廳), 도화서(圖畫署)가 합쳐졌다.

眞 奉藏ᄒᆞᄂᆞᆫ 事務를 掌理”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18] 1897년 1월 4일에 규장원에서 규장각으로 명칭이 복구되었지만 규장각의 직제와 기능도 갑오 이전으로 복구된 것은 아니었다.[19] 규장각의 문한기구·근시기구로서의 성격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20]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역할은 국왕 관련의 물품을 봉안하고 능·원·묘를 봉심하며, 소장 서적을 관리하고 『일성록』을 작성하는 정도의 범위가 되었다.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된 후 1905년 3월 4일 궁내부 관제 전체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데,[21] 여기에서는 규장각 제도의 큰 변화는 없었다.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관제 개정에 이르러 궁내부 산하의 여러 속사가 통폐합되면서 25개 속사가 대신관방을 포함한 12개 속사로 감축되었다.[22] 이 개정에서 홍문관, 종부사, 돈녕사가 규장각에 병합되었다.[23] 규장각의 기능은 “帝室의 典籍과 文翰記錄을 保管ᄒᆞ며 列聖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 及 **進講代撰 幷 宗室에 關ᄒᆞᆫ 事務를 掌ᄒᆞ고 議謚祭典에 參列**”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4] 여기서 앞부분은 정조 이후 이어져 온 규장각의 기본적인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추가된 내용은 “進講代撰 幷 宗室에 關ᄒᆞᆫ 事務를 掌ᄒᆞ고 議謚祭典에 參列”이었다. ‘進講代撰’은 홍문관의 기능이었

---

18) 규장원 아래에는 왕통보(王統諸)·왕족보(王族譜)를 봉장(奉藏)하고 주자(鑄字)를 보관하는 교서사(校書司)와 보존문서 기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록사(記錄司)를 두었다. 같은 해 11월에 기록과(記錄課)·봉각과(奉閣課)로 개편되었다가 1897년 4월에 합쳐졌다(白麟, 1962「奎章閣 藏書에 對한 硏究: 特히 그 沿革과 藏書內容의 變遷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74면).

19) 『고종실록』 권35, 고종 34년(1897) 양력 1월 4일.

20) 김선영, 2023「고종대 奎章閣의 궁궐 내 書籍 收藏에 관한 검토」『서울과 역사』 114, 217-218면.

21) 『官報』 1905. 3. 8. 布達 제126호(1905. 3. 4)「궁내부 관제 개정」; 統監府 편, 1908『韓國施政年報 明治39, 40年』, 69면.

22) 『官報』 1907. 11. 29. 布達 제161호(1907. 11. 27)「궁내부 관제 개정」(1907. 12. 1. 시행); 統監府 편, 1908 앞의 책, 70-71면.

23) 統監府 편, 위의 책, 70-71면.

24) 布達 제161호(1907. 11. 27)「궁내부 관제 개정」; 『순종실록』 순종 즉위년(1907) 11월 27일.

으며, ‘宗室에 關ᄒᆞᆫ 事務’는 종부사(宗簿司)의 기능이었다.

1907년의 궁내부 관제 개정의 배경에는 일제가 대한제국 내 황실재정정리를 추진해오던 맥락이 있었다. 일제는 1904년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시정개선을 명목으로 각종의 내정간섭을 해나갔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조약’[25]이 강요되었고 그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1904년 10월,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했으며,[26] 궁내부의 제도를 장차의 정리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을 설치했다.[27] 제실제도정리국은 1906년 궁내부 제도국으로 개편되었고, 궁내부 및 소속 관청의 관제, 궁내부 관련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기구를 통해 1905년 3월과 190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궁내부 관제를 전면 개편하였다.[28] 직접적인 재정정리와 관련해서는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을 설치하였고(1905. 3), 재정회의를 조직하였으며(1905. 12), 각궁사무정리소(各宮事務整理所, 1907. 2)와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1907. 7),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1907. 11) 등을 차례로 설치하였다.[29]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궁내부 관제 개편으로 규장각의 기능이 강화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의 산하로 모아졌다. 구관제도조사를 시작하고 추진한 것도 같은 시기였다. 이러한 양상을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1907년 궁내부 관제 개정에 따른 규장각의 기능 강화와 황실재정정리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궁내부 예산과 관련하여 1906년 2월 20일과 1906년 12월 28일 두 차례, 궁내부 대신 명의의 훈령이 내려졌다. 첫 번째 훈령은 소속 관청들에게 해당 연도의 1월부터 매월의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내장사(內藏司)와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

---

25) 이 조약은 한일협약, 신협약 등의 명칭이 있지만, 조약 원본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않고 빈칸이다. 여기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6) 이상찬, 1992「일제침략과「황실재정정리」(1)」『奎章閣』15, 127면.

27) 위의 논문, 129면.

28) 위의 논문, 129면.

29) 위의 논문. 135-14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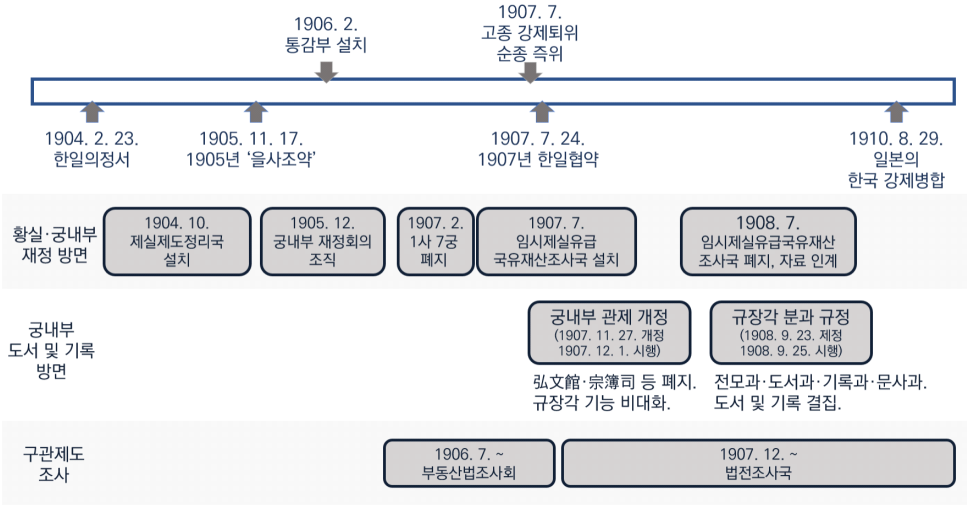

<그림 2> 1904년 이래 일제의 각종 조치

局)으로 송부하라는 것이었다.[30] 그리고 두 번째 훈령은 이듬해의 예산 편성을 위해 각 관청의 봉급, 잡급 및 청비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31]

이 당시 두 번째 훈령의 결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문서철이 1907년도 『궁내부비예산명세서』인 것으로 생각된다.[32] 큰 항목별 예산 규모만 확인 가능한 종전의 세입세출명세서와 달리 세부항목의 예산 명세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1907년 궁내부 및 속사의 예산을 봉급 및 잡급과 청비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經理院 支應課 편, 『宮內府訓令編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20055), 1906년 2월 20일 훈령.
31) 『宮內府訓令編案』, 1906년 12월 28일 훈령.
32) 『宮內府費豫算明細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42).

<표 1> 1907년 궁내부비 예산 명세서

속사	항	연액	속사	항	연액
大臣官房	1. 俸給 및 雜給	19,878,000	營繕司	1. 俸給 및 雜給	7,382,000
	2. 廳費	3,563,000		2. 廳費	264,000
	합계	23,441,000		합계	7,646,000
制度局	1. 俸給 및 雜給	6,554,000	太僕司	1. 俸給 및 雜給	5,962,000
	2. 廳費	497,000		2. 廳費	255,000
	합계	7,051,000		합계	6,217,000
侍從院	1. 俸給 및 雜給	40,209,000	帝室會計審査局	1. 俸給 및 雜給	5,634,000
	2. 廳費	4,504,300		2. 廳費	407,000
	합계	44,713,300		합계	6,041,000
秘書監	1. 俸給 및 雜給	9,404,000	皇太子宮侍講院	1. 俸給 및 雜給	8,346,000
	2. 廳費	1,107,600		2. 廳費	648,000
	합계	10,511,600		합계	8,994,000
奎章閣	1. 俸給 및 雜給	2,070,000	義親王府	1. 俸給 및 雜給	1,864,000
	2. 廳費	586,800		2. 廳費	88,800
	합계	2,656,800		합계	1,952,800
弘文館	1. 俸給 및 雜給	1,584,000	英親王府	1. 俸給 및 雜給	3,000,000
	2. 廳費	826,800		2. 廳費	898,800
	합계	2,410,800		합계	3,898,800
掌禮院	1. 俸給 및 雜給	44,508,000	修學院	1. 俸給 및 雜給	5,256,000
	2. 廳費	787,940		2. 廳費	1,605,400
	합계	45,295,940		합계	6,861,400
宗簿司	1. 俸給 및 雜給	1,500,000	圜丘壇祠祭署	1. 俸給 및 雜給	1,596,000
	2. 廳費	114,000		2. 廳費	84,000
	합계	1,614,000		합계	1,680,000
敦寧司	1. 俸給 및 雜給	1,098,000	宗廟署	1. 俸給 및 雜給	3,794,000
	2. 廳費	71,000		2. 廳費	84,000
	합계	1,169,000		합계	3,878,000
太醫院	1. 俸給 및 雜給	6,704,000	景孝殿	1. 俸給 및 雜給	7,768,000
	2. 廳費	2,196,000		2. 廳費	1,638,400
	합계	8,900,000		합계	9,406,400
內藏司	1. 俸給 및 雜給	6,472,000	懿孝殿	1. 俸給 및 雜給	6,742,000
	2. 廳費	1,305,000		2. 廳費	1,518,400
	합계	7,777,000		합계	8,260,400

속사	항	연액	속사	항	연액
經理院	1. 俸給 및 雜給	12,906,000	社稷署	1. 俸給 및 雜給	1,564,000
	2. 廳費	414,000		2. 廳費	84,000
	합계	13,320,000		합계	1,648,000
奉常司	1. 俸給 및 雜給	7,518,000	璿源殿	1. 俸給 및 雜給	930,000
	2. 廳費	186,600		2. 廳費	75,000
	합계	7,704,600		합계	1,005,000
典膳司	1. 俸給 및 雜給	19,021,200	永禧殿	1. 俸給 및 雜給	1,638,000
	2. 廳費	1,379,000		2. 廳費	93,000
	합계	20,400,200		합계	1,731,000
尙方司	1. 俸給 및 雜給	2,452,000	洪陵	1. 俸給 및 雜給	3,528,000
	2. 廳費	120,000		2. 廳費	234,000
	합계	2,572,000		합계	3,762,000
主殿院	1. 俸給 및 雜給	102,429,200	裕康園	1. 俸給 및 雜給	5,574,000
	2. 廳費	49,037,190		2. 廳費	1,521,600
	합계	151,466,390		합계	7,095,600
32개 속사 총계					431,081,030

*전거: 『宮內府費豫算明細書』(장서각 소장, K2-4842)

이 표를 보면 궁내부 소속 관청은 모두 다 봉급 및 잡급의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속사를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된다.

다시 1907년도 규장각 예산 명세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07년도 궁내부 규장각 예산 명세서

항	목	절	인원	액	비고
1. 俸給 및 雜給				2,070,000	
	2. 奏任俸給			600,000	
		直閣	1	300,000	
		待制	1	300,000	
	3. 判任俸給			360,000	
		主事	2	360,000	
	6. 雜給			1,110,000	
		掌務員	6	444,000	

		使令	5	150,000	
		水工	3	72,000	
		奉謨堂 守直官	2	108,000	
		同 經板閣直	1	42,000	
		同 水工	1	24,000	
		北漢行宮 守直官	2	108,000	
		同 庫直	3	90,000	
		同 軍事	3	72,000	
2. 廳費				586,800	
	2. 圖書印刷費			4,800	
	3. 紙筆墨 文具費			294,000	
		紙筆墨費		24,000	
		登錄費**		48,000	
		日省錄費		180,000	
		御眞面紙次		42,000	年二次
	4. 消耗費			228,000	
		本廳		120,000	五房
		奉謨堂		72,000	四房
		北漢行宮		36,000	二房
	7. 雜費			60,000	
		冊子內入內出費		30,000	
		冊子曝書費		30,000	
합 계			30	2,656,800	

* 전거:『宮內府費豫算明細書』(장서각 소장, K2-4842)「奎章閣」
** 원문표기상 謄錄費가 아닌 登錄費임.

이를 보면 규장각의 업무는 본청과 봉모당, 북한산행궁을 포함하는 범위였음을 알 수 있다.『일성록』작성이나 어진(御眞) 관련 비용, 책자내입내출비(冊子內入內出費), 책자폭서비(冊子曝書費) 등 소장 서적을 출납하거나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홍문관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도서인쇄비, 책자내입내출비와 책자폭서비, 찬집비(纂輯費) 등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돈녕사(敦寧司) 예산으로 보책폭서비(譜冊曝書費)가 책정되어 있었다.[33]

궁내부 신관제가 반포된 1907년 11월 27일은 순종이 태묘(太廟)에 즉위를 알리는 서고식(誓告式)을 거행한 11월 18일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1907년 한일협약[34]으로 정부 각부와 궁내부에 통감이 임명한

33)『宮內府費豫算明細書』「弘文館」·「敦寧司」.

일본인 차관들이 부임하여 내정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각 부처에 일본인 관리를 임용하게 되면서 통감부는 관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35] 통감부는 당시 궁내부 관제에 관해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다수의 속사가 혼잡하게 병립되어 있으며 특별히 관장할 사무 없이 고용된 쓸데없는 인원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36] 1907년 궁내부 관제 개정은 속사를 통폐합하고 실직이 없는 관원을 감축함으로써 '장래 다액의 경비'를 감액하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37] 규장각과 홍문관, 종부사, 돈녕사의 통폐합도 그 내용 중 하나였다.

궁내부 각 속사의 예산을 제출하게 한 후 속사들을 통폐합하였듯, 궁내부 산하 각 수장처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규장각 산하로 모으는 작업이 전개되어 나갔다. 이후 1908년 규장각 분과 규정의 시행으로 각기 전담 분과가 주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궁내부 속사 통폐합의 과정에서 홍문관의 소장 서적들이 규장각으로 합쳐졌다.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관제 개정으로 홍문관이라는 관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08년 작성으로 추정되는 『奎章閣書目』의 제3책에 '전홍문관건'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38]

1908년 2월 2일에는 궁내부 대신 명의로 당시 폐정쇄신을 위해 서물(書物)들을 조사·정리하라는 내용의 제64호 훈령이 내려졌다.[39] 이 훈령에는

---

34) 일본 연구자들은 2차 한일협약, 3차 한일협약, 신한일협약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약 원본에 「韓日協約」, 「日韓協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3차, 신~ 등의 표현이 들어갈 수는 없다. 조약원본에 충실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07년 한일협약'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35) 統監府 편, 1908 앞의 책, 69면.

36) 위의 책, 69-73면.

37) 위의 책, 73면. 궁내부 관제를 장차 개정하고 관원을 감축한다는 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皇城新聞』 1907년 8월 20일, 「宮內官制改正說」).

38) 『奎章閣書目』(장서각 소장, K2-4636) 「전홍문관건」.

39) 이는 1908년 2월 2일 훈령(宮發 第64號)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궁내부 훈령을 엮은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1908년 규장각도서정리지시]』(한국

아래와 같은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 一. 우선 봉모당부터 기타의 각 서고 및 1907년 12월 궁내부 관제 개정시 폐지된 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도서·문서·제물건 등을 조사할 것
>
> 一. 도서·문서·제물건 등을 조사할 때 제목 및 각 물건을 분류하여 목록서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 일본인 주사 및 촉탁과 공동으로 입회하여 실행할 것
>
> 一. 전항과 같이 조사 중인 칙령이나 급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고에서 각 서물 및 제물건의 출입을 일체 엄금하고 조사상 지장이 없게 할 것
>
> 一. 전항 등의 조사는 그 개시를 앞두고 조사 처소 및 그 일수를 정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그 제목 및 제물건의 수량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 실황을 보고할 것[40]

위 훈령은 봉모당을 위시한 기타 각 서고, 그리고 1907년 11월 27일 제정되고 12월 1일 시행된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폐지된 관청으로부터 이관된 도서·문서·제물건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지시를 담고 있다. 1908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奎章閣書目』[41], 『集玉齋書籍調査記』[42], 1909

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RD00181)에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업무 참고를 위해 필사해둔 자료로 보이며, 첫 장 가운데 부분의 파손으로 식별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40) 『[1908년 규장각도서정리지시]』, 宮發 第64號 1908년 2월 2일 訓令.

41) 『奎章閣書目』이라는 제목을 가진 여러 서목들 중, 누상고·누하고(규장각 소장, 奎11706) 전홍문관건(장서각 소장, K2-4636)으로 이루어져 총 세 책 한 질을 이루는 것이 이 시기에 작성된 서목으로 추정된다. 신용하는 이 청구기호를 가진 규장각 소장 두 책(누상고·누상고)을 대원군집권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일성록』 부분에 '太皇帝'라는 표기가 있어 1907년 순종 즉위 이후의 것임이 명확하다(박현순, 2015 「『奎章閣書目』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한국문화』 70, 50-52면 참조).

42) 『集玉齋書籍調査記』(규장각 소장, 奎11705)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옥재 관련 서목과는 달리 서책이 아닌 첩, 축 등도 엄밀하게 구분하고, 서책 수에도 차이를 보인다. 일본인들이 개입한 흔적이 보여 1908~1909년의

년 작성으로 되어 있는 『北漢冊目錄』[43] 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규장각, 집옥재, 북한산행궁 등을 조사하고 만든 목록으로 추정된다. 또 이 당시만 해도 각 소장처로부터 도서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황실 관련 문서임에도 이 시기 황실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탁지부로 이관된 자료도 있다. 일제는 황실재정정리의 일환으로 1907년 2월, 제사의 업무를 맡고 있던 1사 7궁[44]을 폐지하고 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각궁사무정리소를 설치했다. 그해 11월 30일까지 존속한 각궁사무소는 1사 7궁 소유 장토의 처리를 담당하였는데, 1907년 6월 1사 7궁 소속의 도장(導掌)을 폐지하고 각 궁사에서 발급한 도서문적과 부속문권, 양안, 추수기, 감관사음명부(監官舍音名簿) 등을 수집 조사하였다.[45]

당시 1사 7궁 조사 업무의 상세는 이 업무에 참여한 인물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의 글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그는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의 추천으로 1907년 재무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휘하의 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가,[46] 곧 궁내부 방면으로 자리를 옮겼다.[47] 아오야기는 1907년 궁내부 신관제 시행일과 동일한 12월 1일자로

'제실도서' 정리 단계의 것으로 추정된다(李泰鎭, 1996「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民族文化論叢』16, 181-182면 참조).

43) 『北漢冊目錄』(규장각 소장, 奎26740).

44) 1사 7궁(一司七宮)은 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을 말한다.

45) 이상찬, 1992 앞의 논문, 136면.

46) 靑柳南冥, 1922「例言」『李朝史大全』, 朝鮮硏究會, 1면. 아오야기 쓰나타로는 특유의 조선관이 반영된 저술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래는 일본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부산에 파견되면서 도한(渡韓)하였다. 아오야기 쓰나타로에 대해서는 최혜주, 2020『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정탐과 출판활동』, 한양대학교출판부 참조.

47) 靑柳南冥, 1922 앞의 책, 1면. 공식 임명 기록에 따르면 1907년 12월 1일에는 제실재산정리국 주사에 서임되었고[『승정원일기』 순종 1년(1907) 10월 26일(甲申, 양력 12월 1일)], 이후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 기수(技手), 전선사(典

제실재산정리국 주사로 임명되었으며,[48] 1사 7궁의 조사와 정리 사무에 종사하였다.[49] 각 궁의 조사가 완료될 무렵 당시 통감부 총무장관 겸 궁내부 차관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및 이노우에와 협의하여 기록과 서적을 각궁에서 창덕궁의 별관(別館)으로 옮겨 정리했다고 한다.[50]

아오야기는 이들 기록과 서적에 대해 "당시 궁중 사무는 혼란스러웠고, 기록과 서적들이 혼잡하게 퇴적되어 있었으며, 왕조의 사고(史庫)가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오랫동안 왕가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응당 이를 학계에 문의"하려 하였다고 쓰고 있다.[51] 이 글만 보면 각 궁사 관련 기록들이 혼잡하게 퇴적되어 있거나 사고가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학계에 제공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각 궁방 사무 정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고를 언급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황실재정정리는 제실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소속을 판명·분리하고 황실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국유로 이속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52]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은 1907년 7월 4일 설치되어 경리원의 문서철을 조사하고 각 지방의 역둔토와 궁장토 등 황실의 재산을 국유로 편입시키기 위한 각종 조사를 벌이고 1908년 7월 20일 폐지되었다. 또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경리원이 폐지되었는데, 경리원 폐지는 장원과 광업, 삼정의 업무가 그동안의 황실재정정리를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는 대부분 국유로 되어 수조권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광산과 삼정에서 나오던 수입도 탁지부로 빼앗기게 되었다.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활동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자료가 『調査局來去案』[53]으로, 여기에는 조사

膳司) 주사(主事)직을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官報』 1908년 9월 2일; 1909년 1월 5일).

48) 『승정원일기』 순종 1년(1907) 10월 26일(甲申, 양력 12월 1일).

49) 靑柳南冥, 1922 앞의 책, 1면.

50) 위의 책, 1-2면.

51) 위의 책, 1면.

52) 이상찬, 1992 앞의 논문, 126면.

국이 가지고 있던 문서와 서책, 경리원과 각궁사무정리소로부터 인계받은 문서철 등을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 인계한 내용을 정리한「引繼目錄」이 들어있다. 이렇듯 '국유'로 분류된 재산 관련 자료들은 탁지부로 인계되었던 것이다. 이들 문서와 서책은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서 승계하여 보관해오다가 보관전환의 형태로 정리 도서로 합쳐졌으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황실재정정리 과정에서 수집·정리된 기록의 상당수에는 일본인들이 정리하며 찍은 분류도장이 남아있다.[54] 보존기간, 기만년월(期滿年月), 전책(全冊), 파속번호(把束番號), 보관처 등을 양식화하여 스탬프로 찍은 후 빈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 넣은 것이다. 이 분류도장을 통해서는 기존의 보관 상황과 다르게 재편철된 사실이 확인된다.[55] 예컨대 궁방별로 가지고 있던 문서가 개별 궁방전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재편철되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기록의 기존의 질서가 파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2. 규장각 분과 규정과 도서 및 기록류 관련 규정 시행

1907년 11월 27일의「궁내부 관제」개정으로 궁내부 속사들의 통폐합과 규장각 기능이 확대되었고, 이어 1908년 9월 23일에는「규장각 분과 규정」이 제정되었다.[56] 규장각 아래에 전모과(典謨課), 도서과(圖書課), 기록과(記錄課), 문사과(文事課)라는 네 개의 과가 설치되었다. 각 과의 업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53)『調査局來去案』(규장각 소장, 奎17827).

54) 이상찬, 1997「규장각 소장 자료의 공문서 분류도장에 대하여」『書誌學報』20.

55) 위의 논문, 59-60면.

56) 궁내부 대신관방 조사과 편, 1910『宮內府規例』, 48-50면,「奎章閣分課規程」(1908. 9. 23. 제정. 1908. 9. 25. 시행).

<표 3>「규장각 분과 규정」에 따른 각 분과의 사무

분과	업무	분과	업무
典謨課	璿源譜牒과 敦寧譜牒의 編纂 修正 及 保管에 關ᄒᆞᆫ 事項	記錄課	公文書類의 編纂 及 保管에 關ᄒᆞᆫ 事項
			公文書類의 整理 及 分類에 關ᄒᆞᆫ 事項
	列聖御製御筆御章 及 御眞의 圖寫 及 尙藏에 關ᄒᆞᆫ 事項		綸綍·日省錄·上奏文·儀軌·冊文 及 簇子 尙藏에 關ᄒᆞᆫ 事項
	奉審及祭典參列에 關ᄒᆞᆫ 事項		史庫에 關ᄒᆞᆫ 事項
圖書課	圖書保管 及 出納에 關ᄒᆞᆫ 事項	文事課	進講及代撰에 關ᄒᆞᆫ 事項
			尊號及諡號에 關ᄒᆞᆫ 事項
	圖書整理 及 分類에 關ᄒᆞᆫ 事項		綸綍及日省錄 編纂에 關ᄒᆞᆫ 事項
	圖書購買繕寫에 關ᄒᆞᆫ 事項		史冊의 起草 及 修正에 關ᄒᆞᆫ 事項
	圖書原版 保管에 關ᄒᆞᆫ 事項		他課主管에 不屬ᄒᆞᆫ 事項

*전거:『宮內府規例』「奎章閣分課規程」(1908. 9. 23. 제정. 1908. 9. 25. 시행).

1907년 11월의 궁내부 관제에서 규정한 "帝室의 典籍과 文翰記錄을 保管ᄒᆞ며 列聖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 及 進講代撰 幷 宗室에 關ᄒᆞᆫ 事務를 掌ᄒᆞ고 議諡祭典에 參列"이라는 규장각의 기능을 네 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업무 영역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도서와 기록의 업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담당과를 두었다는 점, 윤발·일성록·상주문·의궤·책문 및 족자 등의 자료가 기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07년의 궁내부 관제 개정은 일제가 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여 궁내부 속사(屬司)들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규장각이라는 기구에서 포괄하는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일제는「규장각 분과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 궁내성(宮內省) 도서료(圖書寮)의 외피(外皮)를 이식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57]

57) 白麟은 1904년 고문정치가 실시됨에 따라 궁내부 고문으로 일본인 가토 마스오가 왔고, 1905년 3월 4일 포달 제126호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일본 궁내성 도서료의 직제를 모방해 규장각 직제를 제정했다고 한 바 있다(白麟, 1962 앞의 논문, 74면). 그러나 도서료의 분과 체제는 1905년 당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여기서 일본 내 궁내성 도서료가 설치되고 제도가 정비된 과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내성 도서료는 궁내성 제릉료(諸陵寮)와 함께 현 일본 궁내청 서릉부의 전신을 이룬다. 일본에서 도서료라는 명칭은 근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 고대 율령제에도 도서료가 있었다.[58]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는 1884년 8월에 궁내성 하위 관서로 도서료를 설치하면서 "御系譜 및 帝室 일체의 記錄을 편집하고, 내외의 書籍, 古器物, 書畫의 保存 및 美術에 관한 일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59] 같은 해 10월에는 도서료 내에 '御系譜掛', '記錄掛', '書籍掛', '古器物保存及美術掛', '庶務(會計)掛'가 설치되었다. 이중 고기물(古器物) 및 미술과 관련한 부서는 궁내성 산하의 제실박물관으로 분리되어 나갔으며, 1889년 10월 제정된 분과 규정에서는 도서료에 '御系譜課', '圖書課', '記錄課', '庶務課'의 4개 과가 설치되었다.[60] 어계보과는 황통보(皇統譜), 황족첩적(皇族牒籍)에 관한 사무, 도서과는 제실의 도서 보관 사무, 기록과는 제실기록 사무, 서무과는 서무회계 사무를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1] 이러한 체제는 1907년까지 유지되었다. 1907년 10월 31일 궁내성 관제 개정으로 도서료의 사무 범위는 황통보·황실전범·조서·칙서·황실령의 정본을 상장(尙藏)하고, 천황 및 황족실록을 편수하고, 도서를 보관·출납하며, 공문서류를 편찬·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2] 1908년 4월 29일의 도서료 분과 규정에서는 어계보과(御系譜課)가 편수과(編修課)로 바뀌었으며 각 분과의 사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63]

---

58) 고대의 도서료(圖書寮)는 궁내성이 아닌 중무성(中務省)에 속했고 유교·불교의 전적이나 불상의 보관, 국사 편수, 전적의 서사, 지필묵 등을 관장하는 곳이었다(1994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한편 1875~1876년에 내무성(内務省)에 고금의 도서기록을 보존하고 출판을 관장하는 부서가 잠시 도서료(圖書寮)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일도 있었다(1969 『明治官制辞典』, 東京堂出版).

59) (日本)大蔵省 印刷局 編, 『官報』 1884. 8. 27. 太政官達 第72號.

60) 宮間純一, 2012 「宮内省·宮内府·宮内庁の組織に関する基礎的研究一: 図書寮·書陵部における官制·事務分掌の歴史的変遷」 『書陵部紀要』 64, 39-41면.

61) 위의 논문, 40면.

62) 위의 논문, 41면.

1908년 9월 「규장각 분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궁내부 규장각은 황실자료 봉장(奉藏)과, 도서와 기록류의 분리 관리, 역사기록 편수와 관리기능 등이 모두 포괄된 4과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면모는 일본 궁내성 도서료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규장각 도서과에서 '제실도서'를 관장했듯이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도 '제실도서'가 있었으며, '帝室圖書之章'을 날인한 것 또한 동일했다.[64]

궁내부 규장각과 궁내성 도서료의 직제를 비교할 때 양자가 완전히 1대1로 대응되는 동일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일제가 규장각을 도서료와 같은 기구로 만들고자 의도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문헌상으로는 일본인들이 규장각에 관해 '우리의 도서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통감부는 시정연보를 발간하면서 "규장각은 우리(일본)의 도서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65] 또 1910년 2월 도쿄에서 출판된 책에 '奎章閣'의 세주로 "우리(일본의) 도서료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던 것도 확인된다.[66]

일제가 규장각이라는 관서를 토대로 일본 본국의 도서료와 같은 기구로 만들고자 한 까닭은 그 본연의 국왕문서 봉안 기능과 장서 기능에서 출발하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서가 통합되어 기능이 확장

---

63) 위의 논문, 41면.

64) 「제실도서보관규정」에는 '帝室圖書之章'의 양식과 1촌 7푼이라는 규격, 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궁내성 도서료에서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서를 '제실도서'로 불렀으며 '제실도서지장'이라는 장서인을 사용한 바 있다. 크기와 세부 필획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帝室圖書之章'이라는 인문(印文), '소전(小篆)'이라는 자체(字體)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크기는 규장각의 것이 4.9㎝×4.9㎝가량, 도서료의 것이 5.9㎝×5.9㎝가량으로 일본 것이 조금 더 크다.

좌측: 궁내부 규장각 '帝室圖書之章'
우측: 궁내성 도서료 '帝室圖書之章'

65) 통감부 편, 1908 앞의 책, 71면 "奎章閣ハ我圖書寮ニ當ル"

66) 野口保興, 1910 『韓國南滿洲: 續帝國大地誌』, 東京:成美堂, 43면 "我圖書寮ニ當ル"

된 규장각에 일본제도의 외피가 이식되었고 기존의 각종 사무들이 그 틀 안에 새로 배치되었다. 전모과 사무에는 조선시대 종친부나 대한제국기 종부사·돈녕사의 사무, 조선시대 규장각의 사무가 반영되어 있다. 도서과에서 서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조선시대 홍문관과 규장각의 사무와 관련된다. 문사과와 기록과의 사책(史冊)을 기초하고 사고를 관리하는 사무는 조선시대 춘추관의 기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문사과의 진강(進講)·대찬(代撰), 존호·시호 관련 사무는 조선시대 홍문관에서, 일성록·윤발을 작성하는 사무는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순종대 규장각 각 분과에서 관리한 도서 및 기록류는 규장각을 넘어 궁내부 소관의 것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었던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 분과 규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1909년 제정된 각종 보관과 대출 관련 규정, 도서 목록과 기록 목록을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 도서과에서는 기존 규장각 도서(홍문관 도서 포함)와 더불어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행궁의 도서를 관장하였다.[67] 이는 사실상 궁내부 산하 주요 서적 수장처를 망라하는 것이었으며, '제실도서'로 명명했다. 「제실도서대출규정」(1909. 11. 9.)과 「제실도서보관규정」(1909. 11. 25.)이 제정되었다. 「제실도서대출규정」에 의하면 궁내부 직원은 규장각 도서과장의 승인을 받고, 부외(府外) 신분일 경우 궁내부 차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대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규장각 기록과는 기본적으로 문서행정과 관련된 분과로, 이 역시 그 범위가 궁내부 전체에 미쳤다. 「궁내부기록대출규정」(1909. 4. 26.)과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1909. 6. 11.)이 제정되었다.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 제1조에는 기밀·통상 일체의 기록을 규장각 기록과에서 편찬·보존한다고 규정하였다.[68] 즉 궁내부기록을 규장각 기록과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궁내부의 각 청과(廳課)에서는 전년분 기록을 익년 4월 말일까지 규장각 기록과로 송부하도록 했다.[69] 또한 조선시대에 편찬되어 궁내부 각

67)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 편, 1909 「例言」 『帝室圖書目錄』.
68) 『궁내부규례』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1909. 6. 11.) 제1조.
69) 『궁내부규례』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1909. 6. 11.) 제2조.

속사에 보관되고 있던 의궤류, 등록류, 관청일기류 등이 또한 모두 궁내부 기록으로서 규장각 기록과 소관으로 규정되었다. 『궁내부기록총목록』(1909. 11.)의 「例言」에서 '기록 대출상의 필요가 있어 급히 인쇄에 부쳤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궁내부기록을 속히 모으고 보존과 대출 규정을 운용한 동기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것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7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서 및 기록류의 존재 양태가 달라졌다. 조선시대 도서 및 기록류는 궁궐 내외 각 수장처에 보관되고 있었고, 종류별로 보관처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전모 자료와 서적, 기록류 등이 구분을 이루며 함께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순종대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는 궁내부 산하의 규장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안에서는 또한 종류별로 각 분과로 분리되어 보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규장각 분과 규정」을 살펴보면 도서과 사무와 기록과 사무에는 각기 '도서의 정리 및 분류', '공문서류의 정리 및 분류'가 규정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과와 규장각 기록과에서는 궁내부 산하의 방대한 도서와 기록류를 단순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역사기록물들을 그 성격에 따라서 도서, 기록, 박물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근대적인 자료 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71]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 도서과, 기록과, 그리고 설치되었다가 박물관으로 독립해 나간 '고기물 보존 및 미술괘[古器物保存及美術掛]'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제가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도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시기에 대한제국의 도서 및 기록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중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근대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일제는 그와 반대로 폐쇄적인 방향

---

70) 궁내부 규장각 기록과 편, 1909 「例言」『宮內府記錄總目錄』"本書目은 **記錄貸出上 必要가 有ᄒᆞ야 急遽히 印刷에 附ᄒᆞᆷ**으로써 極히 誤謬됨을 免키 難ᄒᆞ나 他日를 待ᄒᆞ야 此를 修正ᄒᆞᆷ이 可ᄒᆞᆷ(강조는 필자)"

7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에 관해서는 이시카와 데쓰야 외(조혜린 외 옮김), 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한울을 참고할 수 있다.

으로 나아갔다.

종류별 분리가 이루어졌던 점에서는 통감부가 통치의 편의를 위해 본국의 외피를 이식한 측면, 그것이 근대적이라고 여겼던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각기 필요에 따라 각 수장처에 나뉘어 존재하던 궁내부 산하 각 도서 및 기록류를 궁내부 규장각이라는 한 기관 아래로 모으고 조사·정리를 추진한 점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규장각 도서과와 기록과의 업무기록 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순종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들이 실제 빈번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1911년 취조국에서 남긴 사무 기록에는, '구 도서과'에서 도서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은 건들과 관련하여 반납을 독촉한 것이 확인된다.[72] 또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森泰二郎)를 통해 1909년 7월 13일자로 차람증(借覽證)을 남기고 규장각 도서과로부터 563책을 '대출'해갔다.[73] 「제실도서대출규정」이 제정된 것은 1909년 11월 9일로 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대출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대출을 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일제가 대한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법전조사국에서는 그 조사를 현지 출장조사와 문헌조사의 두 방식으로 수행하였다.[74] 법전조사국에서는 일정한 참고문헌을 갖추고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규장각의 자료를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

72) 『圖書關係書類綴』(규장각 소장, 奎26764) 1911년 6월 2일 起案(圖書掛事務官), 「書籍返納ノ件」.

73) 이토 반출 도서 중 소위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으로 불린 도서들이다. 해당 도서들은 이토 사후에 궁내성 도서료로 이관, 반납 요청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1년에 환수되었다. 제3장 제2절 참조.

74) 법전조사국에서 1908년 5월부터 1910년 9월까지 한국의 민·상사관습을 조사한 내용을 조선총독부에서 『慣習調査報告書』로 간행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으로는 『四禮便覽』, 『禮記大全』, 『朱子家禮』,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六典條例』, 『唐律疏議』, 『大明律』, 『大明律附例』, 『大淸律』, 『增修無寃錄』과 같은 서적들과 각국의 법령 등이 있었다고 한다(정긍식, 1992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483-491면).

다만 분명한 것은 순종대 구관제도조사 기구로서 존재했던 법전조사국은 내각 산하의 기구였으며, 제실도서와 궁내부기록을 소장한 규장각은 궁내부 산하 기구로 서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법전조사국은 경복궁에, 규장각 도서과는 경복궁 동편 구 종친부 부지의 서고에, 규장각 기록과는 창덕궁 내 기록고에 각각 나뉘어 존재했다. 이러한 이용상의 불리함이 강점 이후 변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는 한국 강제병합 이후 궁내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 일체를 법전조사국의 후신인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일체 인계하도록 하여 정리를 추진하고 구관제도조사사무를 위해 폐쇄적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택했다. 순종대 규장각에 적용했던 종류별 분리 방침은 폐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근대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규장각 각 분과에 의한 도서 및 기록류의 종류별 분리

1. 전모과의 전모(典謨) 자료 분리 관리

전모과의 사무는 선원보첩과 돈녕보첩의 편찬·수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열성어제·어필·어장 및 어진의 도사 및 상장(尙藏)에 관한 사항, 봉심 및 제전 참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75] 우선 이 규정을 통해 순종대 규장각에서 말하는 전모 자료란 어제·어필과 같은 모훈 자료로부터 선원보첩·돈녕보첩과 같은 계보 자료, 기타 황실의 권위와 종통을 상징하는 자료에 미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같이 조선후기 어제·어필, 선첩·선보는 왕실의 상징으로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었다. 순종대 들어 궁내부 각 수장처의 수

75) 『宮內府規例』「奎章閣分課規程」(1908. 9. 23. 제정. 1908. 9. 25. 시행).

장품들은 그 성격에 따라 규장각 각 분과로 분리되고 이관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어제·어필, 선첩·선보 등은 규장각 전모과의 소관이 되었다. 1909년 북한산행궁에서 수장품들을 가져올 당시 각 분과 사이에서 수·발신된 통첩 세 건이 남아있어 이러한 분리 이관의 과정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76] 전모과와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通牒

북한행궁에서 移來한 본과 소관 御製·御筆·冊寶 및 제반 서적 물품을 일일이 영수하였고, 冊錄은 貴課 소관의 후일의 참고를 위해 이에 繕交하오니 살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隆熙 3년(1909) 5월 17일 규장각 전모과장 金裕成(印)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座下

<北漢行宮 移來 典謨課 保管 目錄>

大君主金寶	一 太皇帝御押(象牙) 一
大朝鮮國金寶	一
(...)	
弘齋全書	一百卷 壯紙本 (...)
璿源系譜	一卷
同	八卷
八高祖圖	二卷
列聖王妃世譜	五卷

76) 『[通牒]』(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017.91 G999t). 다음의 세 건의 통첩과 각기 붙임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1909년 5월 17일 通牒, 규장각 전모과장 金裕成 →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附: 北漢行宮 移來 典謨課 保管 目錄)

㉡ 1909년 6월 8일 通牒, 문사과장 尹喜求 →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附: 圖書課 所管件 德壽宮內入書籍目錄)

㉢ 1909년 7월 10일 通牒, 기록과장 金大洙 →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附: 記錄目錄)

모두 '조선총독부 취조국' 괘지에 작성되어 있고 수발신에 따른 인장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취조국에서 구 도서과로부터 인계 받은 원 문서를 토대로 참고를 위해 등사하여 둔 자료인 것으로 생각된다.

國朝寶鑑	五十二卷
列聖御製	六十八卷
四部手圈	十四卷
同	十二卷　圖書課保管
(...)	
景慕宮加上尊號竹冊文	二帖
追上尊號玉冊印本	一帖
健元陵碑文簇子前面	二
陰記	二 (이하 생략)[77]

북한산행궁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작업은 일차로 도서과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78] 위 통첩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전모과 소관에 해당하는 제반 서적 물품을 가려 전모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 분과 규정」에는 책문(冊文)과 족자(簇子) 상장이 기록과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북한산행궁에 소장되어 있던 책문과 족자를 전모과로 보냈던 것도 알 수 있다. 어제, 계보 관련 자료들과 더불어 대군주금보(大君主金寶)를 비롯해 북한산행궁에 보관되고 있던 책보가 전모과로 보내졌다. 『사부수권』과 같은 어정제서, 『홍재전서』와 같은 것은 도서의 성격도 일부 함께 띠고 있기 때문에 전모과로 보내진 건도 있고 도서과에서 보관한 건도 있다.[79]

위 자료를 보면 당시 북한산행궁에 다양한 전모자료가 봉안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907년도 규장각 예산서에서는 고직(庫直)을 위한 예산을 본청(本廳), 봉모당, 그리고 북한산행궁 세 군데로 나누어 편

77) 『[通牒]』 1909년 5월 17일 通牒, 규장각 전모과장 金裕成 →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78) 『大韓每日申報』, 1909. 4. 1. 「書類移渡」 "昨日 圖書舘에셔 北漢山城에 積置ᄒᆞᆫ 諸般書類를 沒數히 히舘으로 移來ᄒᆞ얏다더라"

79) 예를 들어 위 통첩에 따르면 전모과로 보낸 목록 중에 『四部手圈』과 『弘齋全書』이 있지만, 현 규장각 소장 『四部手圈』(奎4212) 및 『弘齋全書』(奎572 및 奎2023)에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도서과에서 관리한 제실도서 중에도 이 책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하고 있어 북한산행궁이 당시 규장각에서 관할한 주요 수장고 중의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9년 작성된 『북한책목록』상에는 보인류·책문류와 보첩류 외에도 각종 의궤류, 어정서류, 그리고 일본 제도 관련 자료, 서양서적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고종 재위기 후반부터 전모 자료의 봉안과 관련해 북한산행궁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866년에 외규장각이 병인양요 당시의 방화로 소실되면서 그 대신의 역할을 북한산행궁에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종대 『육전조례』에 따르면 『돈녕보첩』을 보각(譜閣)에 원본과 수정본 각각 1건씩을 보관하고 북한산성에는 원본을 1건씩 보관하도록 했다.[80] 1888년 10월 당시 규장각에서 봉모당과 북한산행궁에 봉안된 『선원보략』을 수정하겠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선원보략』의 봉안처의 하나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81]

한편 1885년 이래로 책보(冊寶)들을 북한산행궁으로 옮겨 봉안했다. 1885년 3월에는 주합루(宙合樓)에 봉안한 각 전궁(殿宮)의 책보를,[82] 얼마 후에는 관문각(觀文閣)에 봉안한 각 전궁의 책보를 이봉(移奉)했다.[83] 모두 왕명에 따라 규장각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산행궁이 책보봉안소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1888년 3월에는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의 옥책과 옥보를 봉안한 기록이 보인다.[84] 행궁을 중수할 때는 행궁에 봉안된 각 전궁의 책보를 북한산 관성소(管城所)에 임시 봉안하였고,[85] 중수를 마친 후에는 관성소에 임시로 두었던 각 전궁의 책보를 다시 행궁에 봉안하였다.[86] 1896년 1월 7일에 대행왕후의 교명과 책

---

80) 『六典條例』 卷1, 「吏典」 敦寧府 譜牒 "譜冊, 每式年正月初一日. 啓目啓下後, 修整. 正案·中案各一件, 奉安譜閣, 正案一件, 奉安北漢行宮. 每於春秋季朔, 郎廳進去曝曬."

81)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10월 9일(丁亥).

82)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3월 2일(辛丑).

83)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7월 34일(己未).

84)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3월 14일(乙丑).

85) 『승정원일기』 고종 30년(1893) 2월 23일(丙子).

보를 빈전에 봉안하기 위해 규장원에서 북한산행궁으로 가서 받들고 오게 하였다.[87] 또 1897년 5월 19일 역시 대행왕후의 병인년 이후 교명과 책보를 빈전에 진열하기 위해 규장각신으로 하여금 북한산행궁에 가서 받들어오게 하였다.[88] 전모과에서 작성한 『奉謨堂冊寶印信目錄』의 책보들의 '봉안처소'란에는 "隆熙三年自北漢移奉靜觀軒 同四年二月移奉奉謨堂"이라는 기재가 보인다.[89] 북한산행궁에 봉안되어 있던 책보들은 1909년 덕수궁 정관헌(靜觀軒)을 거쳐 1910년 2월에 봉모당으로 옮겨졌다.

창덕궁 보각(譜閣)에 봉장(奉藏)된 목록을 기록한 『譜閣奉藏品目錄』에는 전 돈녕원에 소장되어 있던 『돈녕보첩』 189책 5궤 분량과 북한산성 이래건(移來件) 189책 5궤 분량이 기재되어 있다.[90] 두 군데에 분산하여 보관하던 『돈녕보첩』이 창덕궁의 보각에서 보관되게 되었다.

기존에는 규장각 도서과의 『제실도서목록』에 제시되어있는 범위로 인해 북한산행궁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이 제실도서로 합해졌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산행궁에는 이렇듯 왕실 또는 황실의 상징과 관련된 물품들이 다수 소장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창덕궁 봉모당 및 보각으로 옮겨져 현재의 장서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봉모당은 본래 주합루 서남쪽 언덕 위에 위치했으며, 열성조의 어제·어필·어화(御畫)·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 및 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를 봉안하는 곳이었다.[91] 그런데 철종대 봉모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대유재 자리로 옮겨 짓고 수장품을 옮겨오게 되면서,[92] 이후

---

86) 『승정원일기』 고종 30년(1893) 5월 25일(丙午); 6월 1일(辛亥).

87) 『승정원일기』 고종 32년(1895) 11월 23일(己未, 양력 1896년 1월 7일).

88)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4월 18일(丁丑, 양력 5월 19일).

89) 『奉謨堂奉安冊寶印信目錄』(장서각 소장, K2-4646).

90) 『譜閣奉藏品目錄』(장서각 소장, K2-4645); 이혜정의 연구(2023 「북한산성 행궁과 「돈녕보첩」의 봉안」 『書誌學硏究』 93)는 북한산행궁의 서고 기능과 관련한 역사적 변천과 『돈녕보첩』 제작과 봉장에 관해 참고가 된다.

91) 『奎章閣志』 「建置」 '奉謨堂'.

92) 『承政院日記』 철종 7년(1856) 12월 25일(戊申) "傳曰奉謨堂處所甚狹窄 從便移建之意 分付該曹"; 철종 8년(1857) 4월 22일(癸卯) "奎章閣啓曰 奉謨堂以大酉齋移定事命下矣."

로 봉모당은 창덕궁 인정전 서편 궐내각사 내 옛 대유재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93] 창덕궁 봉모당과 보각은 이후 일제가 1911년에 절충식으로 다시 지었다.[94]

순종대 규장각 전모과는 강점 직전까지 봉모당 자료를 조사·정리했으며, 그 목록으로 『奉謨堂奉藏書目』 2책, 『奉謨堂後庫奉藏書目』 1책과 앞서 언급된 『奉謨堂冊寶印信目錄』 1책 등이 있다.[95] 이 서목들 곳곳에는 융희(隆熙) 2~4년을 가리키는 기록들이 보여 이 조사가 1908년에서 1910년 7월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모 자료가 남김없이 봉모당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었다. 각 지방 사고에는 상당한 분량의 전모 자료가 포함되고 있었는데 순종대 규장각 시기에는 지방사고에 관해서는 해체와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1909년 5월에 옮겨온 정족산사고의 도서 및 기록류 역시 경복궁 경성전에 적치되고 있어 종류별로 분리 정리하지 않았다. 이후 조선총독부 도서 정리 과정에서 전모 자료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렇듯 정족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전모 자료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도서과의 '제실도서(帝室圖書)' 구상

「규장각 분과 규정」에 의하면 도서과의 사무는 도서 보관 및 출납, 도서 정리 및 분류, 도서 구매·선사(繕寫)에 관한 사항, 도서 원판(原版) 보관 등이다.

규장각 도서과에서 1909년 11월 간행한 도서 목록인 『帝室圖書目錄』에는 도서과 소관의 제실도서의 범위를 규장각 도서, 집옥재 도서, 시강원 도서, 북한산행궁 도서 약 10만 책으로 설명하였다. 홍문관 도서의 언급이

93) 봉모당의 위치나 서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옥영정, 2019 「봉모당의 서적 관리와 서목」 『왕실 서고 봉모당의 건립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0-180면을 참고할 수 있다.

94) 정정남, 2019 「봉모당의 창덕궁 내 위치와 건축적 변화」 『왕실 서고 봉모당의 건립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1-143면.

95) 옥영정, 2019 앞의 글, 160면.

없는 이유는 1907년 시점에 이미 규장각에 합쳐졌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실도서목록』에 위와 같이 범위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1905~1909년 사이에 작성된 규장각,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행궁의 서목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모두 그대로 제실도서로 합쳐진 듯이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도서과 소관의 도서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현재 '규장각도서'로 칭해지는 자료군 안에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이 혼재하는 것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총독부 시기의 '도서 정리'에서는 도서가 아닌 것도 모두 도서로 취급하여 일괄로 정리했는데, 규장각 각 분과에서 자료 관리를 하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규장각 분과 규정」에서는 도서과 소관의 도서와 기록과 소관의 공문서류, 윤발, 일성록, 상주문, 의궤, 책문, 족자 등을 구별하였다. 또한 기록과 편찬의 『궁내부기록총목록』을 보면 조선시대 등록류와 관청일기류 또한 궁내부기록에 포함되어, 도서와는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과의 사무 중에는 도서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도서과에서는 도서들을 조판(朝板)과 당판(唐板)으로 나누고 각기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를 하였다. 도서과 시기에 정리하여 간행한 도서목록으로는 1909년 11월의 『제실도서목록』이 있고,[96] 도서과에서 수기로 정리한 도서대장 중 대표적인 것으로 『조판도서목록』 4책과 『당판도서목록』 4책이 있다.[97]

제실도서에 적용한 사부분류의 구체적인 부류 구분은 <표 4>와 같다.

96) 『帝室圖書目錄』상에는 빠진 책들이 많고 이 책의 「例言」상의 설명과는 달리 10만 책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인쇄에 부치기 위해 급하게 편집했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97) 『[朝板圖書目錄]』(규장각 소장, 奎26725) 및 『[唐板圖書目錄]』(규장각 소장, 奎26771). 각기 부별로 1책씩 분책되어 있으며, 도서과 괘지에 작성되었다.

<표 4> 규장각 도서과의 제실도서 부류 구분

經部	1 易類	6 孝經類	子部	1 儒家類	8 藝術類
	2 書類	7 五經總義類		2 兵家類	9 譜錄類
	3 詩類	8 四書類		3 法家類	10 雜家類
	4 禮類	9 樂類		4 農家類	11 類書類
	5 春秋類	10 小學類		5 醫家類	12 小說家類
史部	1 正史類	9 載記類		6 天文算數類	13 釋家類
	2 編年類	10 時令類		7 術數類	14 道家類
	3 紀史本末類	11 地理類	集部	1 楚詞類	
	4 別史類	12 職官類		2 別集類	
	5 雜史類	13 政書類		3 總集類	
	6 詔令奏議類	14 目錄類		4 詩文評類	
	7 傳記類	15 史評類		5 詞典類	
	8 史鈔類				

*전거: 『궁내부규례』「제실도서보관규정」 부록 도서 분류법; 『제실도서목록』

*비고1: 실제 『제실도서목록』을 보면 적용하지 않은 분류가 존재함. 조판지부에는 사부 '史鈔類', '載記類', '時令類', '目錄類'가. 당판지부에는 집부 '楚詞類'가 없음.

*비고2: '史鈔類'는 『제실도서목록』 당판지부에는 '鈔史類'로 되어 있음.

조선시대의 그것과 비교할 때, 도서과의 도서 관리에서는 어정제서(御定諸書)와 일반 서적의 구분이 사라졌다. 정조대 이후 고종대까지의 규장각 서목을 보면 어제·어필과 선첩·선보, 어정제서, 일반 서적 등이 같은 소장처 내에서도 구분을 이루며 보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80년대 전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서목을 살펴보면, 이문원, 서고, 문헌각의 각 서목의 어정제서 항목 아래 『용비어천가』, 『경국대전』, 『악학궤범』, 『동국여지승람』에서 『오경백편』, 『육주약선』, 『사기영선』 등 150여 종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98] 주로 왕명으로 편찬된 것들을 이와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책들은 대개 영구보존을 위해 지방사고에도 1건씩 보관되었다. 도서과에서는 어정제서도 일반 서적과 같이 도서과 소관의 도서로서 개별 주제에 따라 조판(朝板)의 사부 아래에 분류하였다.

도서과 소관의 제실도서들이 보관된 곳은 구 종친부 터였다. 종친부(종

98) 장서각 소장의 『이문원서목』, 『서고서목』 그리고 『열고관서목』 안에 실린 「문헌각서목」에 이러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어 그 서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부사)는 1907년의 관제 개정으로 그 기능이 규장각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당시 인수궁(仁修宮)으로도 불리던, 경복궁 건춘문 바깥 동편의 구 종친부 터에는 기존에 이승당, 경근당, 옥첩당 등의 전각이 있어 그곳에 서가를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그림 3 참조).[99] 이곳에 서고가 조성될 무렵의 사실이 신문자료로 남아 있다.[100] 이곳은 추후 도서관으로 개관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101] 서고 설비 그 자체를 도서관으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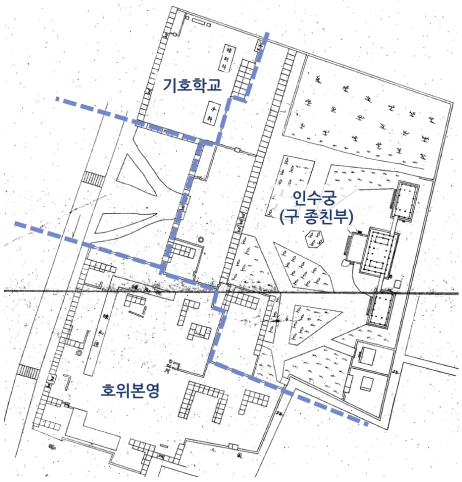

<그림 3> 인수궁, 기호학교, 호위본영의 경계
「仁修宮及畿湖學校外扈衛本營平面圖」

<그림 4> 『경성부시가도』(1911)에 표기된 규장각 도서과

99) <그림 3>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仁修宮及畿湖學校外扈衛本營平面圖」이며, 가시성을 위해 색을 조정하여 실은 것이다. 1908년에 서가를 배치할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시설의 경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279면의 표시를 인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그림 4>는 같은 책, 281면에서 재인용하였다.

100) 『皇城新聞』 1908. 12. 9. 「宗府圖書舘」 "宗府圖書舘 宮內府에셔宗正府에圖書館을設寘ᄒᆞ기로決定ᄒᆞ고該府를現今修理中이라더라"

101) 『統監府文書』 6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09년 6월 5일 憲機 제1177호 "궁내대신 민병석 시종원경 윤덕영 등의 주창으로 궁내부에서는 북부 鍊洞 종친부 내에 제실도서관을 설립하고자 근일 준비중이라고 함";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2월 4일, 李王職 長官 子爵 閔丙奭 → 政務總監 山縣伊三郎 "(...) 隆熙 원년 구 궁내부 관제 개정 이후 이 정리에 착수하여 새로이

칭한 용례도 확인된다. 종친부 부지에 서고를 조성할 당시 제작된 도면도 남아있다.[102)]

그리고 양옥의 신축서고 한 동을 추가로 지었는데 1910년 강제병합 전에 착공하여 1911년 완공되었다. <그림 3>의 도면과 같이 인수궁(당시 종친부 부지를 지칭)은 당시 기호학교 및 호위본영 영역과 인접해 있었다. 기호학교는 국가의 부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서과장이 서고 확장을 위해 학교의 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 당시 기사로 전하고 있다.[103)] <그림 4>의 『경성부시가도』는 1910년의 실측 결과를 토대로 1911년에 제작한 지도이며, 기호학교에서 쓰던 부지까지 영역이 확장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 8월 당시에는 호위본영까지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104)]

그리고 창덕궁 내에 1909년 신축된 궁내부 청사의 도면을 보면 규장각의 다른 분과와는 달리 도서과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부록 1-1 참조). <그림 4>의 『경성부시가도』를 보면 건춘문 밖 종친부 부지가 '도서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서고가 조성되고 도서과의 근무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을 설치하고 제반의 설비가 거의 정돈되었으므로 본년 1월부터 공중의 열람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번역은 필자)"

102)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수록 「仁修宮內敬近堂書棚配置圖」·「仁修宮內玉牒堂書棚配置圖」·「仁修宮門左右書棚配置圖」이며, <그림 3>의 원 자료인 평면도와 하나의 자료를 이룬다. 이들 도면상에는 장서량에 따라 서가 배치를 계획한 메모들이 보인다. 한자들 사이로 가나 표기가 확인되며, 이로 보아 이러한 실무를 주도한 이는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03) 『황성신문』 1909. 6. 10. 「畿湖其無校乎」"畿湖學校에셔 敎室로 借用ᄒᆞᄂᆞᆫ 前陸軍衛生院을 帝室圖書舘으로 使用ᄒᆞ게 된 事實은 前報에 已記ᄒᆞ얏거니와 近聞ᄒᆞᆫ 즉 圖書課長 黑崎美智雄氏가 該校에 公函ᄒᆞ기를 去五月末日ᄭᆞ지 限ᄒᆞ야 他處로 移接ᄒᆞ라 ᄒᆞᆷ으로 (...)"

104) 『황성신문』 1910. 8. 10. 「圖書館擴張」"宮內府圖書館은 漸次擴張ᄒᆞᆯ 計策으로 該館內에 二十餘間家屋을 新建築ᄒᆞᄂᆞᆫ 中이오 將次前扈衛隊營門도 使用ᄒᆞᆫ다더라"

한편, 제실도서로의 통합과 제실도서관 설립을 주도한 측이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고종이 주도한 것이라는 시각과 일제가 주도한 것이라는 시각이 갈려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고종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설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은 1972년 천혜봉의 연구인 것으로 생각된다.[105] 그 이후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거가 보이는 것은 1996년 천혜봉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1908년 9월 23일의 「규장각 분과 규정」을 설명한 후에, "이러한 분과 제도로 규장각의 기능이 형식상 강화되었는데, 고종은 이 무렵 일본에서 내한한 전적 전문가 杉山의 자문을 받고 대제실도서관을 설립하고자 당시 궁내부 대신 민병석에게 규장각·홍문관·집옥재·춘방·북한산행궁 등에 소장된 전적을 함께 모아 정리 보존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였다.[106] 수장처를 북부 관광방 사간동의 인수궁으로 정한 것 역시 '杉山'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107]

그러나 대제실도서관 설립을 고종이 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문이다. 설명에 따르면 그 시기가 분과 규정 이후인데, 「규장각 분과 규정」은 1908년 9월의 일이며 고종은 1907년 7월에 일제에 의해 강제퇴위되었다. 강제퇴위를 당하여 덕수궁으로 물러나있던 고종이 규장각, 홍문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 수장처들의 도서를 모으고 도서관을 설립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해당 글의 각주에 의하면 나리타 세키나이(成田碩內) 편저의 『藏書閣沿

---

105) 千惠鳳, 1972 「藏書閣의 珍籍」『國學資料』 創刊號, 3면 "隆熙 2년(1908) 이후 奎章閣, 弘文館, 集玉齋, 春坊, 北漢山行宮, 史庫 등에 간직되어 온 典籍을 합쳐 하나의 큰 皇室圖書館을 설치하려고 추진해 오던 중 韓日合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典籍이 1911년에 소위 總督府로 옮겨졌는데 (후략)"
이후 연구들에서 유사한 설명이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金基洙, 1975 「藏書閣」『민족문화』 창간호, 68-69면; 尹炳泰, 1991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정신문화연구』 14(3), 89-90면; 崔鍾敏, 1988 「「朝鮮書籍 解題」考」,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2-3면.

106) 千惠鳳, 1996 「藏書閣의 歷史」『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18면.

107) 위의 글, 18면.

革』의 “稿本(日文國譯)”을 참고하였다고 되어있다. 나리타 세키나이는 이왕직 도서실에서 근무했던 촉탁(囑託)으로, 이왕직 도서실의 도서일지 중 1918년 『圖書日誌』를 보면 그가 4월 2일에 『藏書閣沿革史』의 기초(起草)에 착수하여 8일 탈고했다고 되어 있다.[108]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藏書閣沿革』의 원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109]

통감부의 보고 문서를 보면 당시 종친부에 위치한 서고 내지 도서관을 수리·확장하여 ‘제실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통감부에서는 궁내대신 민병석과 시종원경 윤덕영 등의 주창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110] 그러나 일본 측의 보고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규장각에서는 한국 강제병합 이후인 1910년 11월 2일 시점에도 여전히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에는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이후에 구 궁내부에서 엮은 업무 관련 문서철인 『圖書關係文書』가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 그간 안녕하심을 경하드립니다. 지난 날은 우중에 밤늦게 멀리서 방문해주셔서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 상담한 도서관 개관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귀하께서 느끼신 여러 가지는 만들어지는 대로 송부해주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寫字 기타의 수고를 들이는 여러 비용은 사양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귀하의 뜻을 여쭙는 바입니다.
>
> 明治 43년(1910) 11월 2일 원 규장각 사무촉탁 杉山孝敏 (발신)
>
> 淺見悅次郎 殿 (수신)[111]

108) 李王職 庶務課 편, 1918 『圖書日誌』(장서각 소장, K2-3611), 4월 2일 “成田囑託藏書閣沿革史起草ニ着手ス”; 4월 8일 “藏書閣沿革史脫稿ス”

109) 한국과 일본에서 해당 제목으로 조사하여도 검색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자료가 전하는지 불분명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280면에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며 개인소장 자료인 듯하다고 하였다.

110) 『統監府文書』 6권, 1909년 6월 5일 憲機 제1177호.

발신인은 '원 규장각 사무촉탁 스기야마 다카토시(杉山孝敏)'라고 되어있으며, 수신인 아사미 에쓰지로(淺見悅次郎)의 직함은 없지만 문건 앞 간지에 기재된 「도서관 개관 준비서류의 건. 제국도서관 조회」로 미루어 일본의 제국도서관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112] 실제 아사미 에쓰지로는 일본 제국도서관의 사서였다.[113]

공교롭게도 앞서 고종에게 도서관 자문을 했다고 하는 일본에서 내한한 전적 전문가 역시 성이 스기야마로, 도서관 개관 준비 문건의 작성자와 동일 인물임이 유력하다. 스기야마 다카토시는 대한제국 말기의 궁내부 차관이자 일제 강점 직후 이왕직 차관이 되는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의 장인이며, 실제 궁내부 촉탁으로서 내한했던 인물이다.[114] 스기야마가 제국도서관 사서 아사미 에쓰지로에게 보낸 조회의 내용과 그 문건이 궁내

---

111) 『圖書關係文書』 1910년 11월 2일, 元奎章閣事務囑託 杉山孝敏 → 淺見悅次郎 "其后御精穆奉賀候. 過日者雨中且夜に入リ遠方御來臨被下拜謝の至リに存上候. 其節御相談仕候圖書館開館準備ニ付, 要用の書類竝に貴下御氣付きのかず々々相成る可く者, 御出來次第御送付被下度希上候. 此儀ニ付, 寫字其他御手數を掛等諸入費御遠慮なく御申遣し被下度, 此段得貴意候也 / 明治四十三年十一月二日 / 元奎章閣事務囑託杉山孝敏/淺見悅次郎殿"(번각 및 구두점은 필자)

112) 일본의 제국도서관(帝國圖書館)은 1872년에 설립되어 패전 이후 1947년에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으로 개칭되기까지 존속했으며, 우에노(上野)에 위치하여 우에노도서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 내 유일한 국립공공도서관이었다. 제국도서관의 전신은 1872년 일본 문부성 설립의 서적관(書籍館)이며, 이렇듯 제국도서관은 일본 내각 중 문부성의 소관이었다.

113) 淺見悅二郎는 悅次郎로도 썼다. 日本図書館文化史研究会 編, 2017 『図書館人物事典』, 東京:日外アソシエーツ, 9면.

114)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總督政治史論』에 따르면, "스기야마 선생은 옛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 출신으로 궁내부 촉탁이 되어 경성에 와계셨다. 불초와는 사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선생은 지나문학 연구의 은사였다. 데라우치 총독도 당시 선생에게 매일 밤 논어와 좌전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되어있다(최혜주, 2016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동북아역사논총』 54, 297-298면의 각주17).

부에서 편철한 문서철에 수록됨을 미루어 볼 때, 궁내부 규장각 관련 도서관 개관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이가 스기야마임은 분명해 보인다. 스기야마는 일본 문부성 산하 제국도서관과 협의하여 대한제국 내 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촉탁받은 사무의 내용이었을 것이다.[115]

위의 모든 정황을 살폈을 때 서고를 인수궁에 조성하고 이를 확장 개관하고자 계획한 것은 그 주체가 궁내부 소속 일인 관료, 나아가 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16]

제실도서관의 구상은, 전모 자료나 정무 관계의 기록류를 제외하고 일반 서적류로 구성된 이 도서들을 토대로 대한제국에 근대 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 도서들을 포함한 구 궁내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강제접수되었다.

도서관 개관 추진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만큼 도서관 개관 시도가 무산된 경위를 자료로 찾기는 어려우며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혹자는 식민지 조선에 근대 도서관이 곧바로 설립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무단통치기의 우민화 교육정책, 그리고 강점 직전 통감 및 초대 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도서관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

115) 한편 순종대에 구 종친부 터에 운영되고 있었던 도서과 서고 자체를 '도서관'으로 표현하는 자료도 있다. 이 경우 구 종친부 터의 규장각 도서과에 서가들이 배치되어 도서가 보관된 설비 그 자체를 '도서관'으로 칭한 것으로, 이것이 현재의 도서관과 같은 의미로서 '개관'이 되지는 않았다. 당시 신문자료상으로는 "규장각도서관", "제실도서관", "궁내부소관도서관", "궁내부도서관"이 혼용되어 보이고 있어 공식적인 명칭 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이 확인된다.

116) 千惠鳳(1996 앞의 글) 또한 그 바로 다음 단락에서 "帝室圖書館 設立을 위한 書籍의 一大蒐集도 실은 우리나라 통치를 위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목적으로 권장하여 이루어진 1단계의 작업이었으며, 奎章閣의 各課가 관장한 자료를 샅샅이 조사 파악하는 일이 2단계의 작업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千惠鳳 글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고종 지시의 제실도서관'으로 설명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개인적인 자질을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117]

제실도서를 가지고 일본 제국도서관과 같은 관립공공도서관으로 개관을 했다면 이 도서들을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에 다소간의 지장이 불가피하다. 일제는 구관제도조사를 위해 이 도서들을 필요로 했고, 때문에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고 10만여 책의 도서들을 여타 기록류, 지방사고 도서 등와 함께 조선총독부 취조국 소관으로 만들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3. 기록과의 기록류 분리 관리

기록과의 사무는 공문서류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정리 및 분류에 관한 사항, 윤발·일성록·상주문·의궤·책문 및 족자 등의 상장(尙藏), 사고에 관한 사항 으로 규정되었다.[118] 실제 기록과에서 맡은 업무 범위는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과 『궁내부기록총목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내각일력』 등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고 있는 각종 의궤류, 등록류, 관청일기류 등은 순종대에도 규장각 도서과 소관의 제실도서에 포함되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당시 궁내부 규장각에서는 이것을 기록과 소관의 기록류로 분류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제실도서목록』이 아닌 『궁내부기록총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궁내부 규장각 기록과에서 1909년 11월 간행한 『궁내부기록총목록』을 보면, 의궤류, 등록류, 일기류, 공문류, 잡서류 등이 편제되어 있다. 목록 중 주요 자료들을 간추리면 <표 5>와 같다.

---

117) 加藤一夫 외(최석두 옮김), 2009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 194-197면.

118) 『宮內府規例』「奎章閣分課規程」(1908. 9. 23. 제정. 1908. 9. 25. 시행).

<표 5> 규장각 기록과 소관 궁내부기록의 종류

분류	주요 기록명	분류	주요 기록명
의궤류	穆陵改修儀軌 先后追崇都監儀軌 仁穆王后尊崇儀軌 迎接都監軍色儀軌 延勅儀軌 迎接都監盤膳色儀軌 (...)	일기류	承政院日記 典客司日記 日省錄 綸綍 內閣日曆 (...)
등록류	訓局謄錄 結束色謄錄 侍從院謄錄 陪衛結束色謄錄 幸行謄錄 各陵改修謄錄 通信使謄錄 (...)	공문류	照會照復及訓令存案 請由書 履歷書 公文存案 報告照會及通牒 (...)
		잡서류	丙子錄 三綱錄 槐山三綱錄 (...)

규정과 달리 책문이나 족자는 『궁내부기록총목록』에 올라가있지 않다. 앞의 전모과 항목에서 살폈듯 이 자료들은 실무에서 전모과 소관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내부기록'이 그 명칭인 것에서 볼 수 있듯,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생산된 모든 등록류, 관청일기류, 공문서류를 규장각 기록과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라 궁내부 산하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등록류를 예로 들면, 『궁내부기록총목록』의 등록류 부분에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전하는 조선시대 모든 등록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궁내부 산하에 있던 등록들이 등재되었다.

당시 내각 각 부의 업무자료로 보관되고 있던 것들은 궁내부기록이 아니었으므로 규장각 기록과 소관으로 합쳐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화는 갑오-을미개혁으로 궁내부와 의정부(내각)가 분리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왕실 사무와 관련한 것은 궁내부에서, 국정과 관련한 것은 의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정과 관련해 참고할 필요가 있었던 자료는 의정부(내각) 각 부에서 보관했다. 예를 들어, 1897년 2월 당시 『司憲府謄

錄』이 농상공부(農商工部)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사헌부의 등록은 사법 분야와 관계되므로 법부(法部)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농상공부에서 이에 응한 기록이 남아있다.[119] 이렇듯 궁내부에 있지 않았던 기록류들은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 각 부서로 인계되었다가 총독부 방침에 따라 취조국으로 보관전환되거나 늦게는 1923년 시점에까지 가서 합쳐진 것들이 있다.[120] 규장각 기록과 소관이 된 기록류의 범위는 궁내부 각 속사에서 보관되고 있던 것들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기록과 사무실은 1909년 창덕궁에 완공된 궁내부 청사 2층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도면(부록 1-1)상으로 확인된다.[121] 한편 기록은 기록고에

---

119) 『司法照牒』(규장각 소장, 奎17280) 제8책, 1897년 2월 13일 照覆 제1호,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李允用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圭卨.

120) 『圖書出納簿』(규장각 소장, 奎26798). 등록류의 경우 참사관분실 도서 정리 이전까지 이관이 완료된 것은 대체로 13000번대 전후의 도서번호로 정리된 것에 비해, 1923년에 추가된 것은 17000번대에서 18000번대를 사이의 번호를 부여 받았다. 1923년 3월 8일자로 15229~15363번 및 17641~18432번에 자료들을 추가로 일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徐榮姬는 『圖書引繼目錄』(규장각 소장, 奎26715)을 1912년의 것이라 보았고 그 조선본 부분(제3책, 제4책)에 관서문안류가 현재의 규장각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상태로 실려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독부가 대한제국 관서문안류를 19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리하면서 도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때 규장각 자료로 편입된 것이라 보았다(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奎章閣』 17, 113면). 그러나 해당 목록은 1930년 경성제대 도서관으로의 자료 이관 당시의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圖書出納簿』상의 자료 등록 일자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제국 정부 관서문안이 '규장각 도서'로 편입되는 일은 1911년에 이루어진다기보다 1911년에서 1923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121) 한편 1사 7궁의 문서들을 창덕궁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도서들도 함께 옮겨졌는데, 이후 도서과 소관 제실도서로 합쳐지지 않고 창덕궁 기록과 사무실에 보관되다가 이왕직 소관이 되었다. 그 목록이 『記錄課書冊未整理目錄』(규장각 소장, 奎26743)에 수록되어 있다. 『朝版財産目錄』(장서각 소장, K2-4664)에 보이는 "明治四十四年八月七日元記錄課保管ノモノ文書室ヨリ引繼ノ分"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순종대 규장각 기록과는 이왕직 설치 이후에는 이왕직 문서실로 승계되었다.

장치(藏置), 보관하도록 했으며 기록고 내에는 서가를 두었다.[122] 기록고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11년 취조국 강제접수 당시 기록과 보관 기록류를 창덕궁에서 가져왔다고 했으므로 창덕궁 내에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인계 기록에는 '기록과 보관 기록류'의 책수가 11,730책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북한산행궁에서 가져온 도서 및 기록류 중에서 전모과 소관 자료가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듯, 기록과 소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인계하는 과정도 문건으로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자료 세 건의 통첩 중 기록과장 명의의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通牒
앞서 貴課에서 보관하시던 본과 소속의 기록을 별지 목록과 같이 영수하였고, 그중 大日本國全圖 1첩은 본과 소관이 아니므로 돌려보내오니 살피기 바랍니다.
隆熙 3년(1909) 7월 10일
규장각 기록과장 金大洙
도서과장 黑崎美智雄 座下

<記錄目錄>
成宗大王胎室儀軌 壹卷 道光三年 癸未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壹卷 嘉慶六年
翼宗大王胎室加封儀軌 壹卷 道光十六年 丙申
(...)
尙方定例 二卷 不秩
度支定例 五卷
(...)
國朝文科榜目 八卷
壬午增廣文科榜目 壹卷
(...)
日得錄 五卷 甲辰二 癸卯一 丁未一 丙午一
外奎章閣形止案 二十三卷 (이하 생략)[123]

122)『宮內府規例』「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제19조.

그 상세 목록을 보면 각종 의궤류[124]를 비롯하여 왕실사무와 관계되어 생산된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상으로는 북한산행궁에 소장되어 있던 『탁지정례』 등 정례(定例)류가 도서과에서 기록과로 인계된 것이 확인되지만, 『탁지정례』, 『선혜청정례』 등은 도서과의 『제실도서목록』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것은 도서과와 기록과 모두에 관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문사과의 문사(文事) 업무와 활자 보관

문사과의 사무는 진강(進講)·대찬(代撰)에 관한 사항, 존호 및 시호에 관한 사항, 윤발(綸綍) 및 『일성록』 편찬에 관한 사항, 사책(史冊)의 기초(起草)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전통적인 홍문관의 기능과 규장각이나 춘추관의 역사 기록, 편수의 기능을 모아놓은 분과로 생각된다.

현재 규장각 전모과, 도서과, 기록과에서 작성한 근무일지 형태의 기록물로서는 전하는 것이 없으나 『문사과일지』는 1910년 1월~1911년 1월에 해당하는 1책이 남아있어 문사과에서 수행한 업무를 한층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125] 주로 규장각 고위 관료의 동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호를 정한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다.

---

123) 『[通牒]』 1909년 7월 10일 通牒, 奎章閣記錄課長 金大洙 → 圖書課長 黑崎美智雄.

124) 의궤와 관련해서는 규장각 소장의 어람용 의궤가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규장각이 소실된 이후 유사한 의미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 외규장각에는 어람용 의궤가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 또 『북한책목록』상의 의궤의 표제를 현 규장각 소장 의궤 중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복본이 여러 부 있는 것들이기는 하나 대부분 어람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중 어람용을 제외한 본들에는 분상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북한산에 어람용 의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25) 『文事課日誌』(장서각 소장, K2-4889).

규장각 문사과에서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활자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직후 구 궁내부 직원들의 잔무취급(殘務取扱)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규장각 문사과에서 도서과로 활자를 인계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明治 43년(1910) 9월 5일 立案
通牒 도서과장 잔무취급 金裕成 鑄字 引繼 제138호
본과에 보관하였던 주자를 아래에 기재[左開]하여 귀과로 인계하오니 분명히 살펴 수령한 후 증서를 송부해주기 바랍니다.
문사과장 사무취급 尹喜求

左開
生々字 30만자 零
實錄字, 韓構字 幷 15만자 零
衛夫人字 20만 3,921자 具 목록 1책[126]

전통시대 인쇄를 위한 물품으로 책판과 활자를 들 수 있는데, 분과 규정에 따르면 도서 원판은 도서과 소관이었다. 즉 책판들은 순종대 규장각에서는 도서과 관할로 되어 있었다. 반면 활자의 경우 문사과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위의 통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인쇄 업무가 있을 경우 대개 신식 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127] 사용을 위한 보관이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사(文事)와 관련한 분과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활자를 문사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활자들은 취조국 및 참사관분실에서 관리되다가 1916년에 조선총독부 총무과로 보관전환되었다.[128]

---

126) 宮內府 편, 『圖書關係文書』(장서각 소장, K2-4887), 通牒(1910. 9. 5. 立案), 文事課長事務取扱 尹喜求 → 圖書課長殘務取扱 金裕成.

127) 1909년에 궁내부 규장각에서 간행한 『제실도서목록』과 『궁내부기록총목록』 모두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이다.

128) 참사관분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문사과 통첩에 실린 활자들 외에 정리자(整理字)도 포함되어 있었다[『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중앙도

조선시대 규장각이나 홍문관, 시강원 등에서 어제와 어필, 어정제서, 경·사·자·집의 층위의 구별을 유지하면서 함께 봉안했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그만큼 선왕의 가르침을 각별하고 소중히 받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영구보존을 위해 궐 밖의 각 사고에도 봉안을 하였고, 각기 장서가 형성되었다. 또 일반 각 부서에서는 업무 참고를 위해 필요한 도서나 기록류를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있었다.

일제의 관여 이후로 궁내부 각 수장처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으로 모였으며 또한 도서, 기록, 전모 자료로의 분리가 동시에 전개되었다.[129] 이러한 양상을 도해하면 <그림 5>와 같다. 시각화와 구조화를 위해 자료 유형과 소장처를 단순화하였음을 밝혀둔다.

내각(의정부에서 1907년 개칭) 각 부서 소장 자료나 지방 사고 자료를 제외하고,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는 그 성질에 따라, 도서는 구 종친부 터에 위치한 도서과 서고로, 기록은 기록과의 기록고로, 어제·어필 및 보첩류는 봉모당으로 이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그 관리기구인 규장각이 폐지되고 자료만이 남게 되었다.

서관 소장)]. 활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은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29) 조선시대의 원질서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또한 왕실자료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던 것에서 수장처들이 사라지고 단방향으로 집적되면서 왕실의 상징이 약화되고 침식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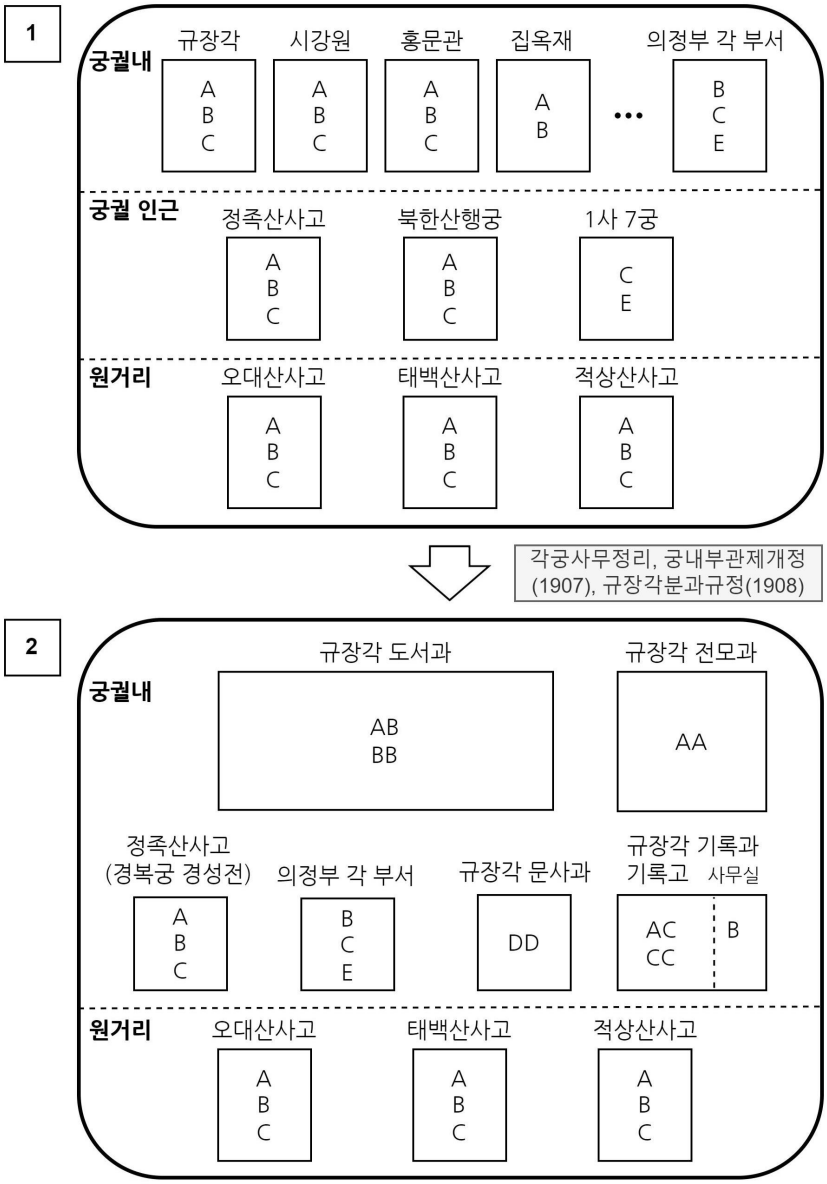

<그림 5> 통감부 시기 도서 및 기록류 소장 상황의 변화

<도해의 상세>

1 각 관청명은 1905년 3월 4일 궁내부 관제 개정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907년의 궁내부 관제 개정과 1908년의 규장각 분과 규정 시행, 1사 7궁의 정리 등으로 질서가 변화하기 이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 자리로 부여한 각 알파벳은 조선시대~대한제국기 고종대 서목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기록물들을 아래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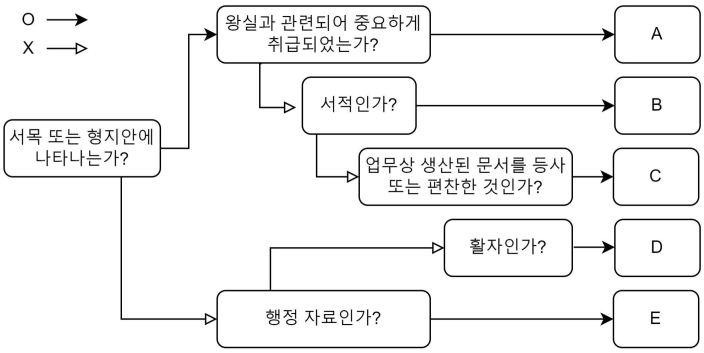

2 순종대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도서 및 기록류의 질서가 변화한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자리로 알파벳을 부여한 것은 순종대 규장각 각 분과의 소관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뒷자리는 차례로 A:전모과, B:도서과, C:기록과, D:전모과의 각 분과를 나타낸다.

제 2 장 조선총독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조사와 이용

제 1 절 조선 도서 및 기록류 조사 기구의 설치와 강제접수

1. 취조국(取調局)·참사관분실(參事官分室)의 설치

일제는 한국 강제병합 이후 구 한국정부 소유의 도서와 기록들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1912년에는 취조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는 참사관실의 분실에서 이어받아 추진하였다.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관리한 기구가 학무 관계 기관이 아닌 취조국과 참사관실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취조국은 한국 강제병합 이전 대한제국 시기의 법전조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은 조선총독부 하부기관이다.[1] 또한 이 법전조사국의 전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민법학자인 우메 겐지로(梅謙次郎)에게 위탁하여 1906년 7월에 조직한 부동산법조사회였다. 법전조사국은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관습 조사를 추진했으며, 이 조사내용은 1912년「朝鮮民事令」과「朝鮮刑事令」의 골격을 이루었다.[2] 이렇듯 조선총독부가 구관·유제 조사를 중시한 것은 조선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 없으며, 구관·유제 조사 자료를 시정(施政)의 자료로 삼을 경우 성과가 한층 유효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3]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6호로 조선총독부에 취조국을 설치

---

1) 이하 취조국 설치 경위와 관련한 서술은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1938『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을 참고한 것이다.

2) 金泰雄, 1994「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奎章閣』16, 101면.

3) 朝鮮總督府, 1912『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四十三年)』, 58면.

하고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의 사무를 계승하게 했다. 취조국의 업무는 조선에 있어서 각반(各般)의 제도 및 일체의 구관(舊慣)을 조사할 것, 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심의를 할 것,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말할 것 등이었다. 취조국에는 장관(칙임), 서기관(주임) 2인, 사무관(주임) 4인, 속·통역생(판임) 12인을 두도록 했다.[4] 1910년 10월 1일,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취조국 장관을 비롯한 이하 직원이 임명되었다.

구관제도조사의 범위는 토지제도, 친족제도, 면·동 제도, 종교 및 사원제도, 서방·향교 제도, 양반제도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점차 확장되었다. 조사의 방법은 조선 고서 조사와 각지 관례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전조사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또한 필요가 있을 경우 국원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실지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한제국에 법전조사국이 설치되어 구관제도조사가 수행되던 시기는 순종대 궁내부 규장각 아래로 여러 기능들과 도서·기록이 집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법전조사국이 문헌조사의 과정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 및 기록류를 참고했다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지만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5] 앞서 지적했듯 법전조사국은 내각 아래에 편제되어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은 반면 규장각은 궁내부 산하 기구였고, 규장각 산하의 자료는 도서고와 기록고 등이 분리되어 있었다. 일제가 한국 강제병합 이후 조선 도서 및 기록 일체를 취조국 내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은, 법전조사국의 경험에서 자료를 구관제도조사 기구 내에 두면서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1912년 4월에는 취조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총독관방 참사관실

---

4) 위의 책, 59면.

5) 1909년에는 법전조사국 고원(雇員)인 일본인이 규장각 소장 어필 등을 훔쳐 나가다가 순사에게 붙잡혀 일본 이사청으로 압부된 일이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6일「奎章閣의 日賊」“法典調査局雇員赤川令修가 三昨日下午五時量에 奎章閣에 儲置ᄒᆞᆫ 御筆과 其他重要ᄒᆞᆫ 書類ᄅᆞᆯ 窃取出來ᄒᆞ다가 光化門把守巡査洪吉求氏의게 被捉ᄒᆞ야 日本리事廳으로 押付ᄒᆞ얏다더라”). 돌출적인 사례라 할 것이지만 법전조사국에서 규장각을 드나들며 자료 참고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參事官室)로 인계하도록 하였다.[6] 중앙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을 폐합·정리한 1912년 4월 행정 정리의 결과였다.[7] 종래 총독부 소속관서였던 취조국·전매국 및 인쇄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각기 총독부의 여러 부국으로 이속시키는 조치가 있었다.[8] 일제는 기존 관방의 비서과(祕書課), 무관실(武官室)과 별개로 관방 직속에 참사관실을 부설하고, 기존 관방 관원들 중 참사관을 중심으로 관원을 배치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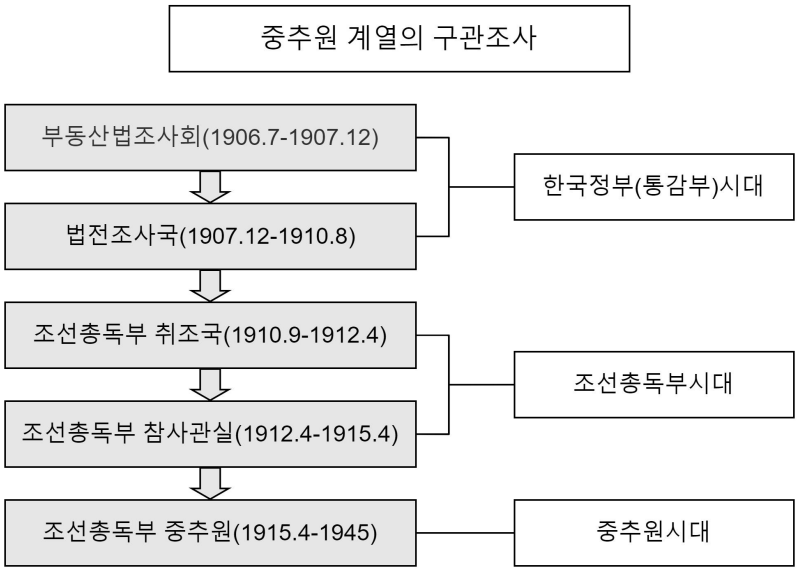

<그림 1> 통감부·조선총독부 시기 구관제도조사의 흐름

*전거: 허영란, 2007「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시장조사'를 중심으로」『史學硏究』86, 222면; 鮮總督府中樞院 編, 1938『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6) 朝鮮總督府, 1914『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四十五年·大正元年)』, 26면.

7) 조선총독부는 한국 강제병합 당시 조선총독부 설치와 함께 종래 통감부 및 구 한국정부의 두 계통에 분립되어 있었던 중복기관을 통합긴축한 것을 제1차, 1912년 4월의 정리를 제2차 행정 정리로 설명하였다. 朝鮮總督府, 1914『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四十五年·大正元年)』, 10면.

8) 朝鮮總督府, 1914『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四十五年·大正元年)』, 11-12면.

9) 金泰雄, 1994 앞의 논문, 109면.

참사관의 사무는 법령의 심의·입안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적용과 중요한 처분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밖에 조선의 제도와 구관, 그밖의 특명에 의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하였다.[10] 취조국 관원은 그대로 참사관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참사관실 내에 설치된 참사관분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11]

<그림 1>에서 통감부·조선총독부 시기의 구관제도조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관제도조사, 또는 관습조사는 비슷한 시기 대만과 만주 등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는 각 식민지에 있어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현지에 대한 관습조사를 실시했다.

대만의 경우 제3대 대만총독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가 발탁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1898년 3월 민정국장(후에 민정장관)으로 부임했다. 고토가 대만에서 중시했던 정책은 토지조사와 구관조사였다.[12] 고토 신페이의 브레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법학자 오카마쓰 산타로(岡松參太郎)의 주도로 대만 내 구관조사가 추진되었다.[13] 1901년 10월 25일, 「임시대만구관조사회규칙」이 공포되어 법제와 산업 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1919년 5월 조사 종료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밖에 1915년 대만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그 기능 중 하나로 남양(南洋)·남지(南支) 방면에 관한 참고조사(reference) 도서관으로서의 특수 사무를 규정하였다.[14]

다음으로는 만철 조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만철 조사부의 창립기로 평가되는 시기(1907~1916)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일강화조약과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을 토대로 1906년 6월 칙령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를 설립했다.[15] 고다마 겐타

---

10) 『朝鮮總督府官報』 제475호, 1912. 3. 30. 朝鮮總督府訓令 제27호.

11) 金泰雄, 1994 앞의 논문, 109-110면.

12) 허영란, 2007 「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시장조사'를 중심으로」 『史學硏究』 86, 217-218면.

13) 鈴木慎太郎, 2013 「後藤新平と岡松參太郎による台湾旧慣調査をめぐる評価: 福島正夫論文の検討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法政論集』 250, 424면.

14) 加藤一夫 외(최석두 옮김), 2009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 85-87면.

로는 만주군 총참모장으로서 만주 경영에 있어 또다시 고토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고토 신페이가 만철의 초대 총재가 되었다. 고토는 만주를 경영하는 정신으로 '문장적 무비(文裝的武備)'를 제시했다. 문사(文事)를 위해 무비(武備)가 필요하듯 무비를 위해 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6] 고토는 당시 정치상의 중대 문제인 국방의 충실과 사회정책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장적 무비'를 정신으로 삼아야 하며 '무장적 문약(武裝的文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7] 요컨대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무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문사적 시설'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사적 시설'의 핵심이 바로 과학적인 조사활동이라고 보았다.[18]

만철은 1907년 4월 업무를 개시했다. 조사부의 업무는 일반 경제의 조사에 관한 사항, 구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도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이었다.[19] 1907년 10월 다롄 본사 건물 3층에 도서실이 개설되었고, 14명의 조사부원 중 3~4명이 도서 업무를 수행했다.[20] 1907년 11월에 도서취급규정이 제정되고 만철의 사업으로서 도서 업무 방침이 명문화되었다. 만철 조사부 초창기의 진용은 대만의 구관제도조사와 비교하면 통계 작성, 도서 정리에 편벽해 있었던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21] 1918년 만철의 기구 개혁으로 도서계가 조사과(1908년 조사부에서 조사과로 개칭)로부터 독립하여

---

15) (日本)大蔵省 印刷局 편, 『官報』 1906. 6. 8. 勅令 142호(1906. 6. 7) 제1조, 제2조.

16) 三戶十三 編, 1919 『後藤男修養』, 東京:日本書院, 141-142면.

17) 위의 책, 141면.

18) 고바야시 히데오(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47-49면.

19) 小林英夫, 2006 『満鉄調査部の軌跡: 1907-1945』, 東京:藤原書店, 38-39면.

20) 加藤一夫 외(최석두 옮김), 2009 앞의 책, 125면.

21) 小林英夫, 2006 앞의 책, 40면. 한편, 고토 신페이가 1908년 7월에 만철 총재직에서 퇴임하고 그의 브레인이자 만철 이사직에 있었던 오카마쓰 산타로도 1914년 1월 퇴임하자 조사부를 필두로 한 만철의 조사기관은 일제히 일시적 위축을 겪었다(小林英夫, 2006 앞의 책, 51면). 이후 만철 조사부는 러시아혁명(1917) 이후로 조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다롄도서관이 되었다. 다롄도서관은 시민에게 공개되는 도서관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社業)에 이바지하는 참고조사(reference) 도서관으로 규정되었다.[22] 수서에 있어서도 중국, 만몽, 러시아, 시베리아 등의 지역, 교통과 철도, 식민과 이민, 산업 등 만철에서 주안을 두고 있는 분야의 수집에 중점을 두었다.[23]

이와 같이 190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친 시기, 일제는 각 식민지에서 구관·제도·관습 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臨時臺湾舊慣調査會報告書: 清國行政法』(1905), 『臨時臺湾舊慣調査會報告書: 臺湾私法』(1910), 만철의 『滿洲舊慣調査報告書』(1913~1915) 조선의 『慣習調査報告書』(1912)와 같은 자료는 그 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24]

한편 조선의 경우, 특수성도 확인된다. 대만에서는 1915년 총독부도서관을 개관하여 그 기능 중 하나로 조사 기능을 부여하였고, 만주에서 역시 1918년 만철의 다롄도서관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조선은 1910년대에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고 폐쇄적인 관리를 하다가 1925년이 되어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개관했으며, 당시 학무과분실에서 보관되고 있던 도서의 일부를 보관전환하는 것에 그쳤다.[25] 1930년에 이르러 경성제국대학으로 일체를 보관전환함으로써 일부에게만 지식·정보가 독점되는 양상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조선의 자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총독부의 구관제도조사 기구로 강제접수된 도서 및 기록류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자료, 실록 의궤, 등록, 관청일기류, 각종 공문서철과 서적들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 자료에 담긴 지식·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조선총독부 내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10월 27일 조선총독이 참사관분실을 순열할 당시의 준비 자료

---

22) 加藤一夫 외(최석두 옮김), 2009 앞의 책, 135면.

23) 위의 책, 135-136면.

24) 모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디지털컬렉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https://dl.ndl.go.jp)

25)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도서 일부가 보관전환된 경위는 본장 제2절 2항을 참조.

를 살펴보면 당시 조선총독부가 이 사업에 쏟고 있었던 관심의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26] 당시 참사관분실에서는 이 순열을 앞두고 「임시 응급 시행안」을 만들어 대청소와 수선을 하고 각처에 설명 표식을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조선도서대장』, 조선도서 부문별 목록, 조선도서 카드대장, 조선도서 특별본 목록, 조선도서 50음별 목록, 서가견출장 및 부도, 사무현황 보고서, 분실사무 진행순서 등 제반 자료를 참고를 위한 준비서류로서 갖추었다. 총독 순열 순서에서 가장 선행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각 주임, 촉탁을 인견하는 일이었다.[27] 당시 참사관분실 사무 중에서 도서의 해제를 만들고 발췌를 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주로 조선인 촉탁이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우대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2. 취조국의 순종대 규장각 자료의 강제접수

앞에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 및 참사관분실의 성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강점과 함께 도서 및 기록이 강제접수되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계된 자료들이 전체 조선총독부도서 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되었다. 대한제국 궁내부의 도서와 기록, 모훈·계보자료가 집적되어 있던 규장각이 폐지되고 그 자료만 남았다.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로 격하되어 유지되게 되었으며, 구 궁내부의 사무는 당분간 잔무취급직에 의해 처리되었다.[28] 이를 규정한 황실령 제20호(1910. 8. 29)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 한국 궁내부 직원으로서 조선총독이 잔무취급(殘務取扱)을 명한 자는 당분간 종전의 관직 구별에 따라 왕족 및 공족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전 궁내부 각 관청 장관에게는 「공문서 취급안」이 전달되었다. 종래 궁내부 대신 명의로 발송 또는 처리하던 공문의 서명(署名)은

26)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제1책, 「總督府巡閱案內順序(1914년 10월 27일)」.

27) 위의 자료.

28) 『朝鮮總督府官報』 1910. 9. 2. 皇室令 제20호(1910. 8. 29. 公布).

‘전 한국 궁내부 대신 잔무취급 씨명’을 사용하고 이하 각관(各官)도 이에 준해야 한다는 것, 관인(官印)을 날인하지 않고 사인(私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양궁(兩宮), 즉 고종과 순종의 동정에 관해 공문에 사용하는 자구는 왕전하(王殿下)에 상당하는 경어로 고쳐야 한다는 것, 메이지(明治)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9]

구 궁내부의 사무가 잔무취급직에 의해 사무가 처리되는 동안 구 규장각의 타 분과에 있던 자료들이 도서과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순종대 규장각의 분과 중 문사과에서 활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때 도서과로 보내졌다.[30] 어제 책판과 보첩 책판도 당시까지 전모과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때 도서과로 송부되었다.[31] 이 시기 규장각 각 분과의 과장들은 앞서 살핀 「공문서 취급안」에 준해 그 직함을 ‘○○課長殘務取扱’이라고 쓴 것이 확인된다.

1911년 2월에 왕족 및 공족의 가무(家務)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왕직이 창설되었다.[32] 조선총독부는 이보다 앞서 1911년 1월 통첩으로 구 궁내부 대신으로 하여금 구 규장각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 활자 등 일체를 취조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33] 구 궁내부 대신이자 이왕직 장관은 집

---

29) 『순종실록』 부록 권1, 1910년 9월 2일(양력).

30) 『圖書關係文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87), 通牒(1910. 9. 5. 立案), 文事課長事務取扱 尹喜求 → 圖書課長殘務取扱 金裕成.

31) 『圖書關係文書』 1910년 10월 4일, 圖書課長殘務取扱 金裕成 → 典謨課長殘務取扱 黑崎美智雄. 당시 통첩에는 ‘잠시 보관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1911년 6월까지 봉모당으로 보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1년 6월 취조국으로의 인계 목록에는 어제 및 어필판, 보첩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봉모당으로 보내져 소장되었다면 이왕가의 관할이 되었을 것이다.

32)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를 발포하면서 1911년 2월 시행을 예고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11. 1. 9. 皇室令 第34號 「李王職官制」(1910. 12. 30. 公布)].

33) 1911년 1월 통첩 문건은 서류철에 엮여있지 않으며 2월 4일자 회신을 통해 통첩의 일자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2월 4일, 李王職長官子爵 閔丙奭 → 政務總監 山縣伊三郎).

옥재 도서, 시강원 도서 등의 인계 거부 의사를 회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4] 이후 이왕직에서 취조국으로 인계할 도서 중 도서과에 장치한 분량이 6월 1일자로, 창덕궁 기록과에 장치한 분량이 6월 6일자로 인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35] 당시 집계된 도서과 보관 도서 수는 5,353부 100,187책, 기록과 보관 기록류로서 창덕궁에서 가져온 것은 11,730책이었으며, 그밖에 활자와 책판, 부속품 12종, 어제 및 어필 책판, 현판 등이 포함되었다. 취조국에서는 정무총감과 이왕직에 요청하여 구 종친부 부지의 서고를 자신들의 청사의 일부로서 사용했다.[36]

당시에 즉시 실물로 옮겨오지는 않았으나 순종대 규장각 산하의 자료로 있었던 지방사고 소장 자료들도 취조국의 관할이 되었다. 순종대 규장각 분과규정에 의하면 지방사고는 기록과 소장 사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 취조국에서는 지방사고의 자료들은 당분간 해당 지역 군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37] 사고당 4천에서 5천 책가량의 거질을 경성까지 옮기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화의 정족산사고 소장 도서 및 기록은 이미 경복궁으로 옮겨져 있었다. 이송이 연기된 사고는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적상산사고였다. 적상산사고는 이후 이왕가의 소관으로 정해져 그 도서 및 기록들은 창덕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강화의 정족산사고 소장 자료의 경우 이미 1909년에 이송이 진행되었다. 북한산행궁의 소장품들이 옮겨지던 시기에 함께 옮겨져서 경복궁 경성전에 적치되었다. 강제병합 이전에 경복궁에 적치되었던 정족산사고 소장 자료 중 '도서'에 속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도서과에 의해 제실도서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며, 타과 소관의 자료와 혼재된 채로 경복궁에서 계속 보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족산사고에 분상되어 있던 도서들에는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弘文館志』, 『御定兵學通』, 『宮園儀』, 『五經百篇』 등은 도서과에 의해 도서로 분류되었고 『제실도서

34) 위의 자료 참조.

35)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15일(6월 7일 기안) 調發 제220호.

36)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26일 朝乙發 제5656호, 「舊宮內府書庫使用方ノ件」, 臨時總務部長官事務取扱小松綠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37) 『圖書關係書類綴』,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목록』에 실려 있던 책들이다.[38] 이렇게 실려 있는 것들은 목록의 예언에서 밝혔듯 규장각이나 시강원, 북한산행궁 등에서 옮겨져온 것들이다. 만일 1909년 시점에 경복궁으로 옮겨진 강화사고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과에서 선별하여 제실도서에 합치는 작업을 했다면, 1909년 이미 간행된 목록의 부수가 추가되는 수정은 하기 어렵더라도 개별 책들에는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위 책의 이본들 중 표지 안쪽에 "鼎足山城"이라는 묵서가 있는 『弘文館志』(奎941), 『(御定)兵學通』(奎1533), 『宮園儀』(奎2039), 『五經百篇』(奎3740) 중 어느 것에도 '帝室圖書之章'의 날인이 되어있지 않다. 강화에서 옮겨온 사고 도서들은 나중에 취조국에서 접수할 때까지 경복궁 경성전에 적치되어 있었다.

한편 이왕직 장관의 집옥재, 시강원 장서 인계 거부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되, 구 궁내부 규장각 소관 자료 중 일부, 적상산사고 소장본, 그리고 일부 도서과 신규 구입 도서들이 이왕가 소관의 자료가 되었다.[39]

조선총독부 취조국 소관이 된 도서와 기록류들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일괄적으로 도서로 취급되었다. 순종대 도서과 소관의 제실도서, 기록과 소관의 궁내부기록, 전모과 소관의 모훈·계보자료가 분리 관리되고 있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었다. 창덕궁 봉모당이나 보각에서 관리되던 모훈·계보자료는 이왕가의 관할로 넘겨졌지만, 봉모당으로 미처 옮겨지지 않고 도서과 서고에 섞여 있었거나 지방사고에 있었던 것들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접수되어 '도서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 도서들은 조선총독부에서 소장하던 '조선총독부도서'의 일부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도 별도로 취급되었다. 조선총독부도서 중에는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에서 특별히 관리되던 것 외에도 조선총독부 자체

38) 『弘文館志』는 '史部 政書類'로 분류되었고 49부가 실려있었다(『제실도서목록』, 61면). 『御定兵學通』은 '子部 兵家類'로 분류되어 있다(同 82면). 『宮園儀』는 '史部 政書類'이며 2책씩 6부가 실려 있다(同 62면). 『五經百篇』은 '經部 五經總義類'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同 12면).

39) 이왕가에서 집옥재 도서, 시강원 도서 등을 인계하지 않고 남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장 제1절 참조.

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가 있었다. 이러한 도서들은 총무과 기록계에서 담당했으며,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국분실과 총무과 사이에서 자료들이 보관전환을 통해 반입·반출된 사례들이 확인된다.[40] 조선총독부도서로 관리된 도서들의 목록은 시기별 『朝鮮總督府圖書目錄』이 남아있어 기본적으로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관리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와 관련해서는 취급이 달랐다. 목록 서두에 실린 범례 중 조선고서와 관련하여 적시하고 있는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조선총독부도서목록』 범례 중 조선고서 관련 조항

간행시기	범례 중 관련 내용
大正二年一月 (1913)	一. 조선서 중 총목차 제6항 본지 제347쪽 이하 수록의 분은 참사관실 전용으로 일반의 대출을 하지 않는다.
大正五年四月 (1916)	一. 본편은 大正 5년 3월 말일 현재 본부 소장의 도서를 분류 재록했다. 단 조선고서 등으로서 참사관실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했다.
大正九年三月 (1920)	一. 본편은 大正 9년 3월 말일 현재 본부 소장의 도서를 분류 재록했다. 단 조선고서 등으로서 참사관실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했다.
大正十三年六月 (1924)	一. 본편은 大正 13년 3월 말일 현재 본부 비부의 도서를 분류 재록했다. 단 조선고서 등으로서 학무과의 전용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했다.
昭和二年六月 (1927)	一. 본편은 昭和 2년 3월 말일 현재 본부 비부의 도서를 분류 재록했다. 단 조선고서 등으로서 학무과의 전용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했다.

*전거: 『朝鮮總督府圖書目錄』 大正二年, 大正五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大正九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大正十三年, 昭和二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0)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에 따르면 참사관분실에서는 도서 정리를 하면서 조선도서, 지나도서라고 하는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도서를 총무과로 인계한다고 되어 있다. 1914년 5월 1일 사무 경과에 따르면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시점까지 '총무과로 인계할 일본도서 151부 583책이 있다'고 집계하였다.

1913년 목록에서는 조선서의 목록도 싣되 참사관실 전용이므로 일반의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41] 1916년도 목록부터는 조선고서 등으로 참사관실(1922년 이후로는 학무과) 전용인 것은 싣지 않는다고 밝히고 목록을 제외하고 있다. 대신 이 도서들과 관련해서는 '조선판'에 대한 목록으로서 1913년 4월에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으로 간행된 바 있고, '조선본'과 '지나본' 전체에 대한 목록으로서 1921년 10월에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이 간행되었다.[42] 다른 조선총독부도서들에 관해서는 당시 일본이 서양의 도서 분류법을 토대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하고 있던 도서 분류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보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는 사부분류를 적용했다.

요컨대 조선총독부는 강점 이후 순종대 규장각 소관 도서 및 기록류를 구관제도조사 수행기구로 인계하도록 했으며, 이것을 일괄하여 '도서'로서 정리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라고 칭하면서도 다른 조선총독부도서들과는 구분을 두고 다른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도서를 정리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구관제도조사(舊慣制度調査)를 위한 도서 정리 사업의 전개

조선총독부의 도서 정리 사업의 경위와 과정에 관해서는 '규장각 도서' 관리 또는 근대사 연구의 차원에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43] 이에

41) 1916년 이후로 '朝鮮古書'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13년 당시에는 '朝鮮書'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아마도 참사관분실의 도서 정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서가 아닌 양서, 신서 등은 총무과로 보관전환하는 방식으로 불출(拂出)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자료의 불출에 관해서는 제2절의 4항을 참조.

42)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版)』(1913)과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 도서 정리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는 상당 수준 규명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고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고·서가별 도서의 재배치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는 순종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를 강제 접수하였다. 그리고 내각(의정부) 각 부서에서 보관하던 조선 도서 및 기록류들은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각기 부국으로 승계되었는데 이것들도 취조국으로 보내 함께 도서 정리를 하도록 했다. 취조국에서 정리·보관하는 도서는 '元 통감부, 元 한국 내각 각부 및 궁내부로부터 인계 받은 조선 도서'로 규정되었다.[44]

취조국에서는 도서 정리를 위해 구 궁내부 규장각으로부터 도서를 대출해간 타 부서나 개인에게 취조국으로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정리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대출되어 있던 도서들을 취조국 관할 도서로서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요청했던 것이다.[45] 그 대상은 부서도 있었으나 개인들도 있었다. 앞에서 도서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살펴본 스기야마 다카토시(杉山孝敏) 또한『東坡全集』40책 등의 도서를 대출하였던 것이 확인된다.[46]

---

43)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白麟, 1962「奎章閣 藏書에 對한 硏究: 特히 그 沿革과 藏書內容의 變遷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愼鏞廈, 1981「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奎章閣』5; 金泰雄, 1995「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奎章閣』18; 이상찬, 2013「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한국문화』61.

44)『圖書關係書類綴』,「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45) 1909년에 제정되어 적용된「제실도서대출규정」에서는 도서대출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으며, 당시 취조국 직원들이 대출 현황이 파악이 가능했다는 것은 도서대출부나 차람증과 같은 문건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성격의 업무자료는 이토 히로부미 반출의 경우처럼 따로 필사해둔 자료를 제외하고는 잔존하는 것이 없다.

46)『圖書關係書類綴』1911년 6월 2일 起案(圖書掛事務官),「書籍返納ノ件」. 그

학부로 대여한 서적과 관련해서는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월 18일에 취조국 장관 이시즈카 에이조는 구 궁내부 규장각에서 학부로 대여해둔 서적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른 서적과 함께 정리할 것이므로 취조국으로 반려하도록 해달라고 정무총감에게 품신(稟申)했다.[47]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보관하던 도서 등은 일제 강점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승계하였는데, 이것을 반납 받고자 한다는 의미였다. 만일 이후에 학무국에서 해당 서적 열람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정리한 후에 다시 대여하겠다는 것이었다.[48]

그런데 『규장각서목』상 광곽에 학부로 보냈다는 부기가 있고 그 서목상의 서명과 일치하면서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장서인이 찍혀있는 도서들이 있다.[49] 해당 『규장각서목』은 여러 종류의 규장각 서목 중에서도 창덕궁 내 열고관, 서고, 이문원에 관해 1900년대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 목록 위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학부로 보냈다고 하는 "一冊學"과 같은 표기가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도서관계서류철』 수록 문서에서 가리키는 '구 궁내부 규장각에서 학부로 대여해둔 도서들'이란 바로 이 도서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서들에는 대체로 개별적인 내력에 따른 장서인 외에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그리고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어있고, 학부에서 보관하던 것이기 때문에 '帝室圖書之章'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서들의 번호를 토대로 『도서색인부』[50]와 대조하면 이

밖에 靑山淺治郎, 宇佐美勝夫, 小宮 次官, 李會九, 市岡義之助, 多田祖, 李漢龍, 曾木重高에게도 반납을 요청할 것으로 확인된다. 문안을 국문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금번 구 궁내부 도서과, 기록과의 장서, 기록은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인계함에 있어 우선 정리의 필요가 있는바, 구 도서과로부터 차출하신 좌기의 서적을 이번에 월 일까지 일단(구 도서과 터) 본국 도서고로 반납하도록 했으면 하여 이와 같이 조회합니다."

47)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5월 18일 調發 제180호, 「奎章閣圖書ニ關スル件」, 長官 → 政務總監.

48) 위의 자료.

49) 민회수, 2022 「대한제국 말기 學部의 규장각 도서 관리」 『奎章閣』 61.

50) 『朝鮮圖書索引簿』(奎26779)과 『支那圖書索引簿』(奎26724)는 1915년 2월에

도서들은 대체로 이 색인부의 작성 시기인 1915년 2월까지는 참사관분실(또는 취조국)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취조국에서는 이렇게 모인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구 종친부 부지 내 서고, 서가에 재배치하였다. 구 종친부 터가 서고 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순종대 규장각 도서과 시기로, 인근의 기호학교, 호위본영까지 영역을 넓혀 사용했다. 강제병합 직후 종친부 터의 서고는 원칙적으로 구 궁내부의 사무를 이어받은 이왕직의 소관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에서는 구 궁내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를 이왕직으로부터 접수하면서 기존 도서과에서 서고로 사용하던 구 종친부 터와 그 시설 또한 취조국 청사의 일부로 삼았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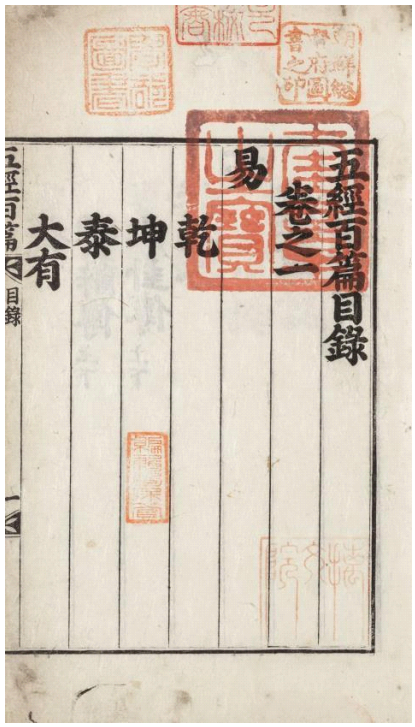

<그림 2> 학부에서 보관된 『五經百篇』
(규장각 소장, 奎2416)

도서과에서는 종친부의 기존 전각인 경근당, 옥첩당, 이승당, 그리고 종친부의 내삼문(內三門)인 사성문(四星

작성된 일본어음순 도서대장이다. 최초 기록된 부분이 있고 여백을 두어 추기해 나간 부분도 확인된다. 추기된 부분은 이후 어느 시점에 정리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최초 기록된 부분에 포함된 도서들은 1915년 2월 시점에 이미 도서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1)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5월 8일 調發 제170호, 「書庫使用ノ件」, 長官 → 政務總監; 1911년 5월 11일 朝乙發 제4255호, 「書庫使用ノ件」, 政務總監 山県伊三郎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1911년 5월 15일, 「書庫借用ノ件」, 長官 → 李王職長官; 1911년 5월 19일 李王職發 제128호, 「書庫借用承諾ノ件」, 李王職長官子爵 閔丙奭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1911년 6월 12일 調發 제211호, 「舊宮內府圖書課書庫使用ノ件」, 長官 → 總督; 1911년 6월 26일 朝乙發 제5656호, 「舊宮內府書庫使用方ノ件」, 臨時總務部長官事務取扱小松綠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門) 양쪽의 행랑 등을 서고로 이용하였다. 또 1910년 4월, 이승당 옆 위치에 서고 신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건물은 강제병합 이후인 1911년에 완공되었다. 신축서고는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2층의 양식 건물이었다.[52] 취조국에서는 신축서고를 본고(本庫)라 칭하고 위층에는 '조선판' 서적을, 아래층에는 실록, 계보, 일기류를 보관했다.[53]

<그림 3> 구 종친부 부지 내 신축서고
(건판 13605)

52) 이하 서고 관련 사진 자료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동 홈페이지상으로는 신축서고를 '창덕궁 규장각'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경복궁에서 건춘문 방향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종친부 부지의 이 건물이 보이며 경성제대 도서 및 기록류 이관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에도 이 건물 사진이 실려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4-3> 배치도의 E에 위치했다. 1910~1930년에 이곳 서고 구역이 속칭 '규장각'으로 불렸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에 '규장각'이라는 설명이 달렸던 것으로 인한 오인인 듯하다.

53)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20일(기안), 「書籍整理方針左ノ通ニテ可然哉 書籍整理ニ關スル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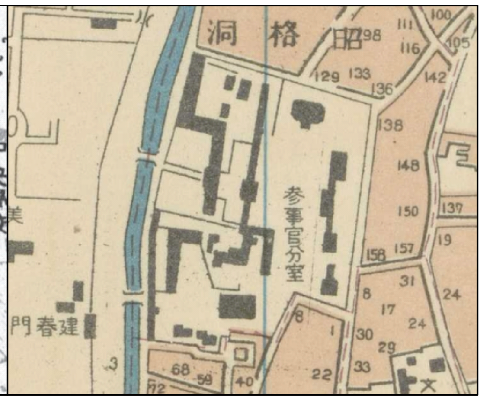

<그림 4-1> 1915년 조선총독부 지형도　<그림 4-2>『경성시가도』(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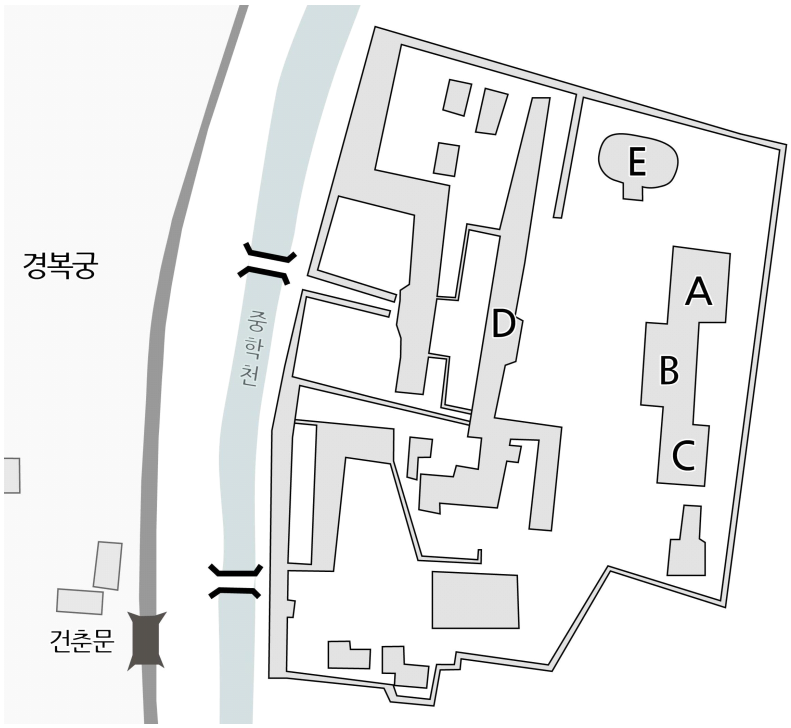

<그림 4-3> 구 종친부 부지 내 서고의 배치

앞서 순종대 규장각에서 구 종친부 부지를 서고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지의 범위를 기호학교까지 넓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부지가 구 호위본영 영역까지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참사관분실과 그 이후 시기의 것이기는 하나 <그림 4-1>. <그림 4-2>와 같은 지도를 통해 당시 서고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54]

<그림 4-3>에서 A, B, C의 건물이 각각 이승당, 옥첩당, 경근당에 해당하며, D에 위치한 사성문의 남북으로 긴 행랑도 서고로 이용되었다. 취조국에서는 A~D를 순서대로 북고, 동고, 남고, 서고로 칭했으며, 동고, 남고, 북고에는 '지나판' 서적을, 서고에는 의궤류를 보관하였다.[55] 자료에 따르면 취조국에서는 중복본이 많은 것의 남은 부수들이나 산질본을 보관하기 위한 별고도 두었지만 이 시기 별고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56] 또한 서고 내에서 도서들은 또다시 경·사·자·집별로 나뉘어 배치되었다.[57] 그리고 취조국 시기에는 도서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장서인도 날인하지 않았다.[58]

<표 2> 취조국 시기의 서고 명칭과 소관 자료

	서고명	원 전각명	소관 자료
A	북고	이승당	지나판 서적
B	동고	경근당	지나판 서적
C	남고	옥첩당	지나판 서적
D	서고	사성문 좌우행각	의궤류
E	본고	(신축 서고)	1층: 실록, 계보, 일기류 2층: 조선판 서적
*	별고	불명	산일, 결손된 것 수 부 또는 수십 부 있는 것

54) <그림 4-1>은 1915년 측량을 토대로 1917년 5월에 발행된 것이다. 안창모, 2009「종친부 터의 근대적 변화와 근대건축」『종친부 실측조사보고서』, 종로구청. 82면에서 재인용하였다. <그림 4-2>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소장「京城市街図」(1925, YG/7/GE141/So)이다. 1925년은 관할이 학무국으로 바뀐 시점이지만, 종종 이 지도와 같이 '참사관분실'로 표기하는 것이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55) 위의 자료.

56) 다만 별고에 장치되었던 서적과 관련해서는『別庫藏置書籍目錄』,『別庫藏置

1912년 4월 취조국이 폐지되고 참사관분실이 도서 정리를 담당하면서 서고의 배치가 크게 바뀌었다.[59] 취조국 시기와 달리 서고를 제1고부터 번호를 붙여 칭했는데, 대체로 제1~제6고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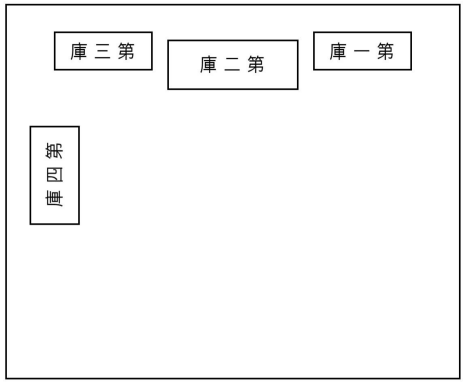

<그림 5> 참사관분실 서고 배치

1914년 6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실사무 진행 순서」의 <서가견출장 부속도 양식>을 보면 <그림 5>와 같은 서고 배치가 확인된다.[61] <그림 5>를 시계 방향으로 90° 회전시키면 <그림 4-3>상의 위치와 제1고-C, 제2고-B, 제3고-A, 제4고-E로 대응된다. 즉 제4고가 2층 규모의 신축 서고에 해당한다.

참사관분실에서는 취조국 사무 인수 이후에 신속하게 도서 정리를 했으나 일단의 정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1913년 7월 1일에 도서정리계원들이 임명되면서 재정리에 착수했다.[62] 이때 제1고 및 제2고

欠本目錄』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 어떤 서적들이 별고에 장치(藏置)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別庫藏置書籍目錄』(규장각 소장, 奎26790); 『別庫藏置欠本目錄』(규장각 소장, 奎26704).

57) 金泰雄, 1995「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奎章閣』18, 178면.

58) 『圖書關係書類綴』1911년 6월 20일(기안), 「書籍整理方針左ノ通ニテ可然哉 書籍整理ニ關スル件」.

59)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80면.

60) 시기에 따라 활자, 책판 등을 두는 용도의 서고까지 하여 제8고 이상까지 있었던 경우도 확인된다. 그러나 도서 정리 과정에서는 도서 및 기록류를 제외한 물품을 타 기관으로 보관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로는 온전히 도서 및 기록류 수장을 위한 서고만을 운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1)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제1책.

62)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제1책, 「分室事務擔任表」"監督 國分 囑託, 主任(專任) 園木 通譯生, 畠中 雇員, 南雲 臨時雇員, 金淳鼎 寫字生, 尾上 臨時雇員, 玄蘖 寫字生, 金胤福 寫

에는 조선본, 제3고에는 조선판 지나본, 제4고 2층에는 조선본 특별취급본, 제4고 1층에는 지나판 지나본, 제5고 및 제6고에는 의궤를 배열하기로 정했다.[63] 제4고 2층에 보관되는 조선본 특별취급본으로는 실록과 『일성록』, 『승정원일기』가 있었다.[64]

참사관분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참사관분실 건물 연혁 조사」에는 고종대 편찬된 『종친부조례』를 토대로 당시 사용하던 서고 건물과 연결시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65] 옥첩당은 제1고, 경근당은 제2고, 이승당은 제3고라고 되어있어 살펴본 바와 부합한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천한전은 제4고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66]

위의 <그림 5>는 서가 견출장에 부속된 양식으로 제4고까지만 나와있지만, 제5고와 제6고는 사성문 좌우행각(그림 4-3의 D)에 각각의 서고번호를 붙인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취조국 시기에도 당시 '서고(西庫)'로 불린 사성문 좌우행각에는 의궤가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사성문 좌우행각은 도서과 시기에 주요 서고 중 하나로 활용되었고,[67] 취조국 시기에 동서남북고 중의 하나로 역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역사적으로는 고종대부터 이미 장판각으로 불리며 목판 등이 보관되었던 곳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사관분실 시기에도 서고로 주요하게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제5·6고를 이곳으로 비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조국 시기에 비해 서고들의 도서 배치는 대거 재편된 것이었다. <표 3>을 통해 시기별로 서고와 소관 자료를 나타냈다.

참사관분실에서는 대출의 편의를 위해 서고 내에 도서를 도서번호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68] 서가마다는 그 서가에 배열된 도서의 도서번호의

字生, 兼 黑田 囑託, 千葉 囑託, 鄭萬朝 囑託"

63)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64)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제1책, 「總督府巡閱案內順序(1914년 10월 27일)」.

65)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제3책, 「參事官分室建物沿革調」.

66) 위의 자료.

67) 「인수궁문좌우서붕배치도」를 통해 당시 서가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68) 金泰雄, 1995 앞의 논문, 186면.

<표 3> 시기별 서고 명칭과 소관 자료

	원 전각명	취조국		참사관분실	
		서고명	소관 자료	서고명	소관 자료
A	이승당	북고	지나판 서적	제3고	조선판 지나본
B	경근당	동고	지나판 서적	제2고	조선본
C	옥첩당	남고	지나판 서적	제1고	조선본
D	사성문 좌우행각	서고	의궤류	제5·6고	의궤류
E	신축	본고	1층: 실록, 계보, 일기류	제4고	1층: 지나판 지나본
			2층: 조선판 서적		2층: 조선본 특별취급본

시작과 끝을 기입했다.[69]

참사관분실에서는 처음에는 도서번호와 카드번호를 별도로 붙였고, 가타카나와 숫자가 혼용된 카드번호 외에도 숫자로만 이어지는 카드통번호를 붙이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카드통번호를 가지고 기존의 도서번호를 대체했다. 최종적인 참사관분실의 도서번호는 1부터 시작되는 통번호로, 번호별로 된 서고 서가 내에서 도서를 찾게 하는 배치 순서 외에는 어떠한 부가적인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70]

<그림 3> 및 <그림 6~9>를 통해 참사관분실(혹은 학무과분실)에서 각 서고에 도서를 보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들은 구체적인 촬영 시기가 알려져있지는 않으나 참사관분실에서 새로운 도서번호를 붙인 이후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제1고의 서가의 모습을 촬영한 <그림 6-2>를 확대해보면 <그림 10>과 같이 도서의 서근제(書根題)와 서가에 붙은 번호표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 서가에는 '綱目'이라는 책들이 수납되어 있고 그 도서번호는 7502번에서 7505번까지에 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69)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제1책.

70) 『조선도서대장』(1916)을 예로 들면, 제1~3책: 제1고(도서번호 1~5290번), 제4~7책: 제2고(도서번호 5290~11579번), 제8책: 제4~6고(도서번호 12719~13772번)까지를 담고 있다. 즉 각기의 서고는 도서번호 범위와 대응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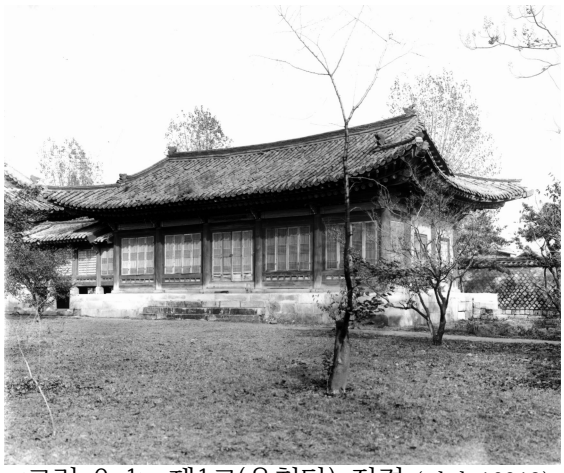

<그림 6-1> 제1고(옥첩당) 전경 (건판 16912)

<그림 6-2> 제1고(옥첩당) 서가 (건판 9732)

<그림 7-1> 제2고(경근당) 남측면 (건판 9727)

<그림 7-2> 제2고(경근당) 서가 (건판 9731)

<그림 8> 제3고(이승당)와 제2고(경근당) (건판 9726)

<그림 9> 구 종친부 서고의 정문 (건판 9720)

<그림 10> 제1고(옥첩당) 서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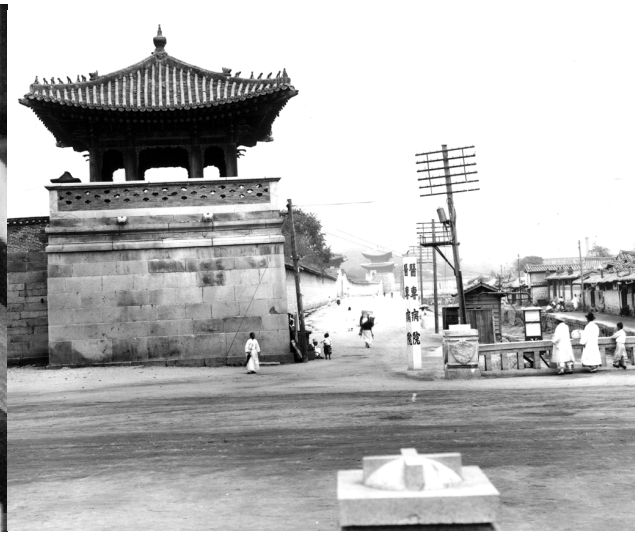

<그림 11> 1930년대 동십자각 일대 (건판 16712)

런데 새로운 도서번호 기준으로 7502번에서 7505번은 모두 각 76책 분량의 『자치통감강목』이며, 수납된 도서의 서근제로 미루어 일치한다.[71]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학무국 소관의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보관되었다. 한편 1928년, 구 종친부 부지 일곽에 경성의전 부속병원이 설립되었다. <그림 4-3>에서 보면 D의 사성문으로부터 중학천변으로 향한 쪽이다. 1928년부터 193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경성제국대학으로 보관전환되었다. 1930년을 기하여 이관이 완료되었고 구 종친부 부지와 서고로 사용되던 전각들은 경성의전 부속병원에서 사용하게 되었다.[72]

---

71) 해당 도서는 현 규장각 청구기호와도 일치한다. 위의 자료 『조선도서대장』의 구성과 달리 7502번에서 7505번대의 도서가 제2고가 아닌 제1고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에서 사진의 촬영 시기의 수장과 1916년 무렵 수장 상황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72) 경복궁 기준으로는 건춘문 동쪽 밖, 중학천(1965년 복개) 건너편이며 1930년대 중반 사진에 '의전병원' 표지가 보인다(그림 11). 이후 서울대 제2부속병원을 거쳐 국군서울지구병원 및 보안사령부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각들이 헐려나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 자리에는 국립현대미술관

2. 사부분류(四部分類)의 적용

취조국에서는 서적 목록 작성이나 서고 내 배치와 관련해 경·사·자·집으로 대별하기로 했고,[73] 1911년 10월 26일에 그 하부 분류를 품신했으며,[74] 이 내용으로 확정되어 분류가 이루어졌다.[75] 취조국 시기의 부류 구분은 이전의 제실도서 시기나 이후 참사관분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세분화가 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표 4). 도서과 시기의 제실도서는 순수 도서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부류 구분은 『규장총목』의 것을 참고한 것이었다(제1장 제2절의 <표 4> 참조). 그런데 이후 취조국의 도서 정리 범위는 계보 관련 자료, 기록류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고, 사부(史部) 아래에 '계보기록류'를 두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76] 이는 계보 관련 자료와 정부 공문서철을 비롯한 기록류도 모두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관리상 통감부 시기보다 퇴보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1912년 4월 조선총독부관제 개정 후 취조국의 기능은 중추원 참사관분실에서 이어 받았고, 같은 해 일단 전체 목록 작성을 마쳤다.[77] 1913년 6월에는 권책수, 저자, 저작연시, 판종의 대체적인 조사를 했다. 7월에는 남고와 북고에 소장된 약 40,000책의 도서를 정리했고,[78] 새로 등

서울관이 들어서 있다. 2010년 해당 미술관 건립 계획 당시 발굴조사 과정에서 옛 종친부 유구가 확인되었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앞서 1981년 기무사 영내 확장 과정에서 정독도서관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2013년에 원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 내에 있다.

73)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20일(기안), 「書籍整理方針左ノ通ニテ可然哉 書籍整理ニ關スル件」.

74)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10월 26일(기안).

75) 『圖書關係書類綴』, 「事務概要」.

76) 『書籍目錄臺帳』(규장각 소장, 奎26768) 「緖言」에도 사부 계보기록류라는 분류가 규장각 기록과 소관 약 1만 책, 강화 정족산사고 소장 도서의 합류와 관련 있음이 나타나 있다.

77)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본 자료에는 참사관분실에서의 사무 진척도 '제1장 조선총독부 취조국' 내에 서술되어 있다.

<표 4> 취조국·참사관분실의 도서 부류 구분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취조국	四書五經類	系譜記錄類	儒道佛類	別集類
	字彙類	歷史類	兵農醫類	總集類
		政治法律類	天文算數類	修辭類
		傳記雜記類	類書類	
		地理類	叢書類	
		年表目錄類	雜書類	
			藝術類	
참사관분실	易類	正史類	儒家類	別集類
	書類	編年類	道家類	總集類
	詩類	紀事類	釋家類	題評類
	禮類	別史類	兵家類	詞曲類
	春秋類	野乘類	農家類	功令類
	大學類	政法類	醫家類	
	中庸類	記錄類	天文類	
	論語類	地理類	方術類	
	孟子類	金石類	譯學類	
	別經類	傳記類	類書類	
	總經類	系譜類	隨錄類	
	字書類	年表類	藝術類	
		目錄類	小說類	

*전거: 취조국-『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10월 26일(기안); 참사관분실-『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
*비고: 참사관분실 정리 중 유별 구분에 변동이 있어 1921년 간행된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음

사하거나 새로 구입한 도서를 합쳐 경·사·자·집의 4부로 분류한 목록을 만들어 인쇄 간행했다.[79] 이것이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1913)으로, 참사관분실 시기에 간행된 것이지만 취조국의 도서 정리를 넘겨받아 마무리하여 간행한 목록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취조국 시기의 도서 부류 구분이 적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일단의 정리는 인쇄 및 등사한 곳을 표준으로 하여 '조선본'과 '지나본'을 구별하고 저작편찬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

78) 당시의 도서 정리는 1일 평균 1,000책가량이라고 설명되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79) 앞서 살펴본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1913)이다. 당시 '지나판'은 간행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황상 당시로서는 조선판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서'로서 '조선판'인 것과 조선에서 등사한 것이 모두 '조선본'에 포함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선인'이 편저에 관여한 도서나 '지나인'이 편저에 관여한 도서가 혼동되고, '조선판'·'지나판' 여부가 불명확한 점도 있었다.[80] 부문별 구분의 문제, 동종의 책이라도 책수 구성이 일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도 있었다. 도서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가를 정하여 배열하기만 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81] 실제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1913)을 보면 저작자, 저작연대, 판종란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도서번호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82]

1913년 7월, 새로운 방침을 세워 도서 정리에 착수했으며, 동일하게 사부분류를 적용하되 취조국 시기에 비해 유별 구분이 세분화되었다. 유별 구분은 참사관분실에서 도서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표 4>의 참사관분실의 도서 부류 구분은, 참사관분실 도서 정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1921년 간행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을 토대로 하여 정리했다. 사부분류 자체는 1922년 이후 학무국에서 관리하던 시기를 거쳐 1930년 경성제대로 이관된 후에도 큰 변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83]

조선총독부는 취조국 시기부터 전 시기에 걸쳐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사부분류를 적용했다. 사부분류는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여타 '조선총독부 도서'들에 적용하던 도서 분류와는 다른 기준이었다. 시기별 『朝鮮總督府圖書目錄』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이 서양의 도서 분류법을 토대로 일본의

---

80)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81)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82) 朝鮮總督府, 1913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版)』, 朝鮮總督府.

83)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3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은 규장각도서를 인계 받은 경성제대도서관에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 발간 이후에 추가된 자료에 관해 만든 보유(補遺) 목록이다. 추가된 항목이 있는 부류 구분만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21년 목록의 부류 구분에 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하고 있던 도서 분류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1916년에 발행된 것의 목차로, 당시 참사관분실에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제외한 조선총독부도서를 실은 것이다. 철학, 종교, 교육, 법률, 정치, 경제 및 재정 등 사부 분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관리 도서와 관련해서는 이 목록에는 범례에 언급만 하되 함께 싣지 않고 별도로 취급했으며, 나아가 도서 분류법 또한 다른 조선총독부도서와는 상이한 방식을 적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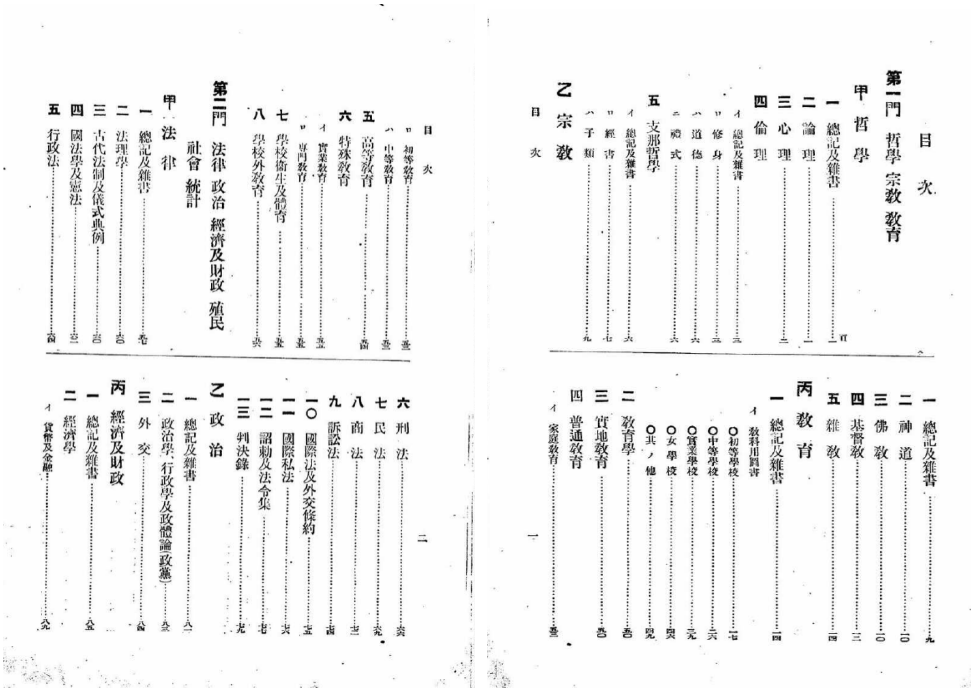

<그림 12>『조선총독부도서목록』(1916) 목차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사부분류를 적용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다.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1921)의 범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一. 본 책은 조선총독부에 간직한 고도서의 목록으로, 조선도서 및 지나도서를 포함한다.

二. 조선도서와 지나도서의 구별은 편저자가 조선인인 것과 지나인인 것에 의하며, 편저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것은 도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구별했다.

三. 목록의 편성은 부류를 나누고, 부류의 명칭은 조선 재래의 용례에 따랐으며, 도서명, 권수, 책수, 편저자명, 편저연시, 판종 및 도서번호를 기입했다.

四. 동일 종류에 속하는 도서 간에는 그 도서의 편제가 전부에 걸친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분적인 것은 나중으로 했다.

五. 권수 및 책수는 동일한 도서 중 가장 완전한 것에 따랐으며, 결본이 있는 것은 도서번호 아래 괄호를 부기하여 이를 나타냈다.

六. 본 책에 수록한 것은 1921년 3월 31일 현재 기준이다.

부류(部類)의 명칭은 조선 재래의 용례에 따랐다고 되어 있다. 정조대에서 고종대에 걸쳐 작성된 각종 서목들을 보면 일반 서적의 분류에는 대개 사부분류가 적용되어 있다. 순종대 규장각 도서과의 제실도서 분류도 마찬가지였다.

동시기 일본 내 제국도서관과 궁내성 도서료의 도서목록, 제국대학·사립대학의 도서관 도서목록을 확인해보면, 그것이 화한서(和漢書)[84]라 하더라도 사부분류를 적용한 예는 찾기 어렵다. 순종대 규장각을 두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었다고 한 바 있는 일본 궁내성 도서료의 『帝室和漢圖書目錄』(1916)을 보면, 총기(總記), 수필(隨筆), 종교(宗敎), 철학(哲學), 교육(敎育), 문학(文學), 어학(語學), 미술(美術), 제예(諸藝), 역사 및 전기[歷史及傳記], 지지 및 기행[地誌及紀行], 법률 및 정치[法律及政治], 경제 및 재정[經濟及財政], 사회(社會), 산업(産業), 교통(交通) 등의 세분화된 분류와 그 아래 더욱 세분화한 하위분류를 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85] 하

84) 화한서(和漢書)란 일서(日書)와 한적(漢籍)을 아울러 말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 근대 각급 도서관에서는 화한서와 양서(洋書)로 대별하여 도서 목록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85) 宮內省 圖書寮 編, 1916 『帝室和漢圖書目錄』(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

위분류마다 세 자리수의 기호가 부여되었으며 도서의 번호는 하위분류별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한 도서에 부여된 전체 도서번호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도서인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신식분류법에 따라 도서들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도서들의 내용을 상당 수준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방대한 도서를 대상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도서를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며, 신식분류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통감부시기에 작성된 서목이 사부분류로 작성되어 있어 업무상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기존 분류로 포괄되지 않는 기록물의 경우 부득이하게 유별 구분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 '규장각 도서'의 한국본 내 경·사·자·집의 비율이 중국본의 그것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각종 정부문서철, 행정자료 등이 사부(史部) 정법류(政法類)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부가 경부(經部), 자부(子部), 집부(集部)에 비해 매우 비대해졌다.

3. 지방사고 소장 도서 및 기록류의 이송

조선시대에는 영구보존기록을 지방사고에 분산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실록이나 의궤가 간행될 때마다 각 사고에 1건씩 봉안하였다. 일제는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에 관여한 것으로부터 약 1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지방의 자료를 경성으로 옮겨와 일괄하여 합치는 방침을 취했고 분산 보관의 원칙은 무시되게 되었다. 일제는 일찍부터 각 사고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1909년에 정족산사고와 북한산행궁의 자료를 옮겨와 정족산사고 자료는 경복궁 경성전에 적치하고 북한산행궁의 자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각 과로 옮겼다. 상대적으로 경성과 가까웠던 이 두 사고가 원거리의 사고들보다 일찍 폐지된 것이었다.

렉션).

1911년 취조국에서는 당분간은 지방사고 소장 건을 옮겨오지 않는 방침을 정하였다.[86] 이는 경비 부담과 관계된다. 당초 조선총독부에서는 오대산사고 소장 자료들을 1911년 3월 30일이라고 하는 이른 시기에 이동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는 오대산사고 소장 기록 및 도서 전부를 취조국으로 인계하도록 결정하여 평창군수에게 그곳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니 영수하라는 내용의 통첩을 취조국 장관에게 보냈다.[87] 그러나 취조국 장관은 오대산사고 소장 기록 및 도서를 옮기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그 대신에 도서 목록상 큰 차이가 없고 당시 경복궁 내에 보관되고 있던 정족산사고(강화사고) 소장본 일체를 우선 인계받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88]

이러한 경위로 오대산사고와 태백산사고의 경우 소장 상황을 점검하는 정도로 유지하고 바로 옮겨오지 않았으며, 경무총감부의 경비 협조를 구하여 지역의 군수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였던 것이다. 적상산사고의 경우 당초에는 동일하게 관리되다가 이왕직 소관으로 정해지면서 추후 창덕궁 내 서고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조선총독부에서 촬영한 태백산사고의 전경, 그리고 태백산사고 사각(史閣)의 내부 모습이다. 이를 비롯해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의 전경과 사각, 선원보각의 근경, 소장 자료의 모습 등이 유리건판 사진 자료로 남아있으며, 『조선고적도보』에도 실려 있다.[89] 구체적인 촬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사고 소장의 『태조실록』, 『선원계보기략』 등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소장 도서가 경성으로 이전되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

86) 『圖書關係書類綴』,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당분간 봉화사고, 평창사고, 무주사고 소장의 것은 종전과 같이 엄하게 군수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고, 단 경무총감부에서 조회하여 해당 사고의 경비에 주의하게 할 것. (번역은 필자)"

87)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3월 30일 朝乙發 제2861호, 「平昌郡史庫引繼ノ件」, 政務總監 山縣伊三郎 → 取調局 長官 石塚英藏.

88)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4월 4일 調發 제135호, 「江華史庫所藏圖書ニ關スル件」, 長官 → 政務總監; 1911년 4월 24일 調發 제158호, 「五臺山史庫所藏圖書竝江華史庫所藏圖書ニ關スル件」, 長官 → 政務總監.

89) 朝鮮總督府 編, 1931 『朝鮮古蹟圖譜』 11, 朝鮮總督府, 1593-159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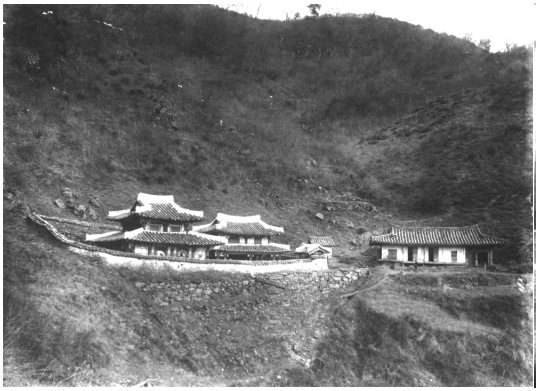

<그림 13> 태백산사고 전경
(건판 1834)

<그림 14> 태백산사고 사각 내부
(건판 1838)

오대산사고와 태백산사고 소장 자료는 1914년 11월에 참사관분실 관리 서고 안으로 옮겨져 도서 정리에 포함되었다.[90] 오대산사고의 사각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은 그보다 앞선 1913년 10월 시점에 일본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를 통해 오대산 및 태백산사고 소장 도서 및 기록류가 참사관분실 정리 도서에 편입되게 되었다.[91] 또 그보다 앞서 정족산사고 소장의 도서 및 기록류가 취조국 시기에 합쳐졌다.

앞서 살펴본 대로 취조국에서는 도서 목록을 기준으로 사고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파악했다.[92] 이것은 일제가 조선시대 사고 소장 도서들을 취

---

90)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한편, 조선총독부에서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와 관련해 작성한 것으로 본래의 사고 내 배치순으로 작성된 목록과, 일본어 발음순으로 작성된 목록이 각기 전한다. 규장각 소장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26736, 사고 내 배치순), 『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26735, 일본어발음순),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이 그것이다. 이중 '장서목록'은 일본어 발음순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1914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되기도 하나, 오대산사고의 실록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작성 시기는 1913년 10월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91) 이상찬, 2013 「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 『한국문화』 61, 364면.

급할 때 지속적으로 가진 인식이기도 하다. 지방사고의 경우 분산보관을 목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고별로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독자성도 지녔다. 태조~명종실록과 관련해서는 정족산사고본은 1592년 이전에 편찬 간행된 밀랍본 실록이었으며 태백산·적상산사고본은 1606년 재간행본, 오대산사고본은 1606년 실록 재간행 당시의 교정쇄를 그대로 보관한 것이다. 의궤 역시 사고 간에 약간씩 소장 상황이 달랐다.[93]

조선시대 아카이브의 일부로서 각기 고유한 특징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고 보관 체제가 해체, 파괴되었으며 분산 보관의 장점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94]

4. 자료의 수집과 불출(拂出)

참사관분실에서는 도서를 정리하는 외에도 추가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참사관분실의 자료 수집은 크게 고도서, 금석문, 지방관아 기록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도서와 관련해, 참사관분실에서는 도서 정리를 추진하는 외에 민간에 잔존한 고도서를 수집, 보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913년 1월부터 착수했다.[95] 이와 같은 경로로 일부 민간 소장이었던 도서가 유입되게 되었다.

금석문의 경우 1913년 2월, 정무총감 명의로 각도 장관에게 발송한 통

---

92)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4월 24일 調發 제158호, 「五臺山史庫所藏圖書竝江華史庫所藏圖書ニ關スル件」, 長官 → 政務總監.

93) 이상찬, 2013 앞의 논문, 364면.

94) 위의 논문.

95) 중추원 보고자료에서는 사무가 취조국에서 참사관으로 옮겨진 이래 도서 정리 추진의 한편으로 도서관 설립을 시도했고, 조선 도서를 완비해서 그 특색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5目 圖書ノ蒐集及部冊數.

첩의 내용을 살펴둘 필요가 있다.

「조선고서 및 금석문 탁본 수집에 관한 건」

"온고지신, 격물치지는 정교상 빠질 수 없는 것이므로 문명국 일반에 그 사회에 관계된 문서는 물론, 그 국토에 존재하는 금석류로 사료가 될 만한 것은 간단한 것이라도 존중하고 그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자세히 알 수 있는 편의를 위해 서고를 설치한 것이다. 총독부 참사관분실에 소장된 구 한국 정부 및 궁내부로부터 계승한 도서와 봉화 및 오대산 서고의 서적은 널리 고고의 재료로 삼을 만한 것이 적지 않으나,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고, 특히 고려조 및 삼국시대의 문헌에 이르러서는 현존 사상 거의 참고하기에 족한 것이 없다. 따라서 총독부는 이에 규장각 도서를 완비하여 조선에 관한 완전한 제국의 문고로 만들고, 위와 같은 결함을 보전하여 후일에 이를 공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96]

위 통첩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참사관분실 소장 자료를 한국 정부 및 궁내부로부터 계승한 도서와 태백산·오대산사고 소장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11~1912년 당시에 보이던 '강화(정족산)사고'나 '적상산사고'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방에서 아직 이관되지 않은 태백산·오대산사고를 제외하고 정족산사고 소장본은 이미 도서들 안에 포함되어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적상산사고 소장본이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이왕직의 소관으로 정해진 이후임을 의미한다. 둘째, 조선 고서에 관해 특정 시기 이후의 고본(古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는데, 이는 다른 일본인 연구자의 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평가에 해당한다.[97] 끝으로, 이러한 사료 수집에 관한 유감을 바탕으로 조선고서

96)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1938 앞의 책, 40-41면, 第2項 考事資料蒐集 '朝鮮古書竝金石文拓本蒐集ニ關スル件'

97) 예컨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는, "현재의 규장각본은 모두 건륭 연간에 규장각이 창설되었을 때 신규로 수집된 것으로, 십중팔구는 당시 新刊·新印된 것에 해당하며, 그것에 강희 이후의 官刻·官印의 책이 약간 더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숭정 이상의 古本은 아마 1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하였

및 금석문 탁본을 수집하고자 함을 밝히면서 그 종국적인 목표를 “규장각 도서를 완비하여 조선에 관한 완전한 제국의 문고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최소한 당시에는 조선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망라하고 추후 공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탁본들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이 참사관분실로 수집되었다.

지방관아에 남아 있는 행정자료의 경우 발견될 때마다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여 함께 정리·보관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다.[98] 민간 자료의 경우 구입, 기부, 기탁, 여의치 않을 경우 빌린 후 등사 등 여러 방식을 취했지만 관청 소장의 것은 사실상 총독부의 뜻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지방 자료들이 참사관분실로 이관되게 되었다.

참사관실 직원은 지방 출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사관실에서는 해당 관청으로 보관전환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서류상 처리가 이루어졌다. 그 실제 사례를 몇 건 들어보면, 1915년 2월 9일, 참사관실은 순천, 여수, 남해 각 군청으로부터 보관전환 받은 양안을 참사관분실로 보냈으며,[99] 1916년에도 대구, 남해, 상주, 산청 등지에서 가져온 호적대장이나 양안과 같은 고문서를 참사관분실 조선고도서로 편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 6월 12일자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에서 산청군청으로 보낸 「고문서 인수인계의 조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左記 목록의 고문서는 일찍이 본실 직원이 貴地로 출장했을 때 관습조사의 참고용으로서 차용했던 것인바, 귀청에서 필요가 없다면 본실 조선고도서 중으로 편입하여 보관하고자 하므로 인계했으면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조회하는 바입니다.
>
> 목록
> 萬曆 34년 山陰縣戶籍大帳 1冊
> 隆慶 4년 庚午式帳籍 1冊 이상 2책[100]

다(前間恭作, 1944「古鮮冊譜例言」『古鮮冊譜』1, 東洋文庫, 3면).

98)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5目 圖書ノ蒐集及部冊數.

99) 『圖書受拂ニ關スル綴』(규장각 소장, 奎22156).

구관제도조사의 실지조사차 참사관실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참고를 위해 차용했던 자료를 참사관실의 조선고도서 내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인계받은 '萬曆 34년 山陰縣戶籍大帳'은 현 규장각에 소장된 『宣祖三十九年丙午山陰帳籍』(1606)[101], '隆慶 4년 庚午式帳籍'은 『仁祖八年庚午山陰帳籍』(1630)[102]인 것으로 보인다. 융경(隆慶) 4년은 1570(선조 3, 경오년)으로 이 산음 경오장적은 원래 1570년(선조 3)으로 연대가 추정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1630년의 장적인 것이 판명된 자료이다.[103] 즉 1916년 당시 참사관분실에서 경오장적을 1570년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융경 4년으로 지칭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참사관분실은 본질적으로 기존 도서에 관한 정리 자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구관제도조사 사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각 지방으로부터 최대한 수집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도서 정리 과정에서는 조선도서, 지나도서라는 대상 범위만 두고 이를 제외한 기타 도서들이나 물품들은 타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보관전환, 즉 보관의 주체를 바꾸어 내보내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내진 것으로는 판목, 활자, 일본도서, 서양도서 등이 있었다.

참사관분실에서는 1913년 당시에는 책판을 조사·정리하여 제5고와 제8고에 수납했으며, 활자 또한 조사·정리하여 제7고에 수납했다. 그런데 참사관실에서는 1916년 3월 5일자로 활자 및 부속품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보관전환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였다.[104]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5년 12월 1일에 경복궁에 2층의 전시공간을 건립하여 개관하였다. 활자가 이관된 것은 그 직후의 시점인 것이다.[105] 목판을 보관전환한 기록은 함께 실

---

100) 『圖書受拂ニ關スル綴』, 「古文書引繼受ノ照會」.

101) 『宣祖三十九年丙午山陰帳籍』(규장각 소장, 奎14820).

102) 『仁祖八年庚午山陰帳籍』(규장각 소장, 奎14640).

103) 『仁祖八年庚午山陰帳籍』(규장각 소장, 奎14640) 규장각 해제 참조.

104) 『圖書受拂ニ關スル綴』 大正 5년 3월 5일, 「活字及其附屬品保管轉換ノ件」, 參事官分室 物品會計官吏 → 朝鮮總督府博物館 物品會計官吏.

려있지 않으나 아마도 유사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목판이 본래 제5고와 제8고, 즉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였지만, 이후 그것이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1930년 경성제대 도서관으로 함께 옮겨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 특정 시점에 이 도서들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경복궁 근정전 바로 곁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보관전환이 이루어졌고, 해당 박물관에서는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관내에 보관하지 않고 인근의 근정전에 책판을 적치해두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목판들은 광복 및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로도 계속해서 근정전에 방치되고 있다가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될 때 서울대로 옮겨오게 되었다.

한편 일본도서나 양장서적 등 조선본과 중국본 이외의 잡다한 도서는 모두 총무과로 인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보관전환이 이루어진 도서들은 참사관분실이나 학무과분실로부터 반출되어 총독부 총무과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반대로 총무과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도서 중 조선본으로 참사분실에서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보관전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한 사례로, 1916년 11월 17일자로 『東國算書』를 총무과 물품회계관리로부터 참사관분실로 보관전환 받은 것이 확인된다.[106]

도서들은 이와 같은 수집과 불출에 따라 다소간의 증감을 거쳤고, 1922년에 학무국 소관으로 보관전환되었다.[107] 1921년 8월 시점에서 '조선본'은 약 7천 부, 8만 5천 책, '지나본'은 약 4천 부, 8만 책으로 합이 약 16만 5천 책으로 집계되었다.[108]

그리고 학무국 보관전환을 전후한 시점에 또다시 대량의 인계수입(引繼

---

105)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할 때 구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수장품을 인계 받았다. 이러한 경위로 활자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106) 『圖書受拂ニ關スル綴』 1916년 10월 18일, 「圖書保管轉換ノ件」, 參事官室 → 總務課.

107) 서고는 계속해서 해당 서고를 사용하되 학무과분실로 칭해지게 되었다.

108)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5目 圖書ノ蒐集及部冊數.

受入)이 몇 차례 있었다.[109]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갑오-을미개혁 이래 의정부 또는 내각 계열의 각 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서 넘겨 받은 후 관련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도서 정리 기구로 인계되지 않고 미정리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보관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중에는 토지조사나 재산정리를 목적으로 내각 산하에 설치된 기구에서 가지고 있던 양안류, 전답 성책, 사법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검안, 죄인 성책, 외교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일안, 화안, 덕안 등의 외교 관련 문서철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출납부상으로는 1920년 10월 22일, 1923년 3월 8일 등 일자에 서무부(庶務部)로부터 인계수입된 기록물들이 등재된 것이 확인된다.[110] 서무부는 종전의 총무국으로, 총독부 각 부서에서는 서무부를 거쳐 인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22년 10월 14일에는 부산부로부터 들어온 자료들도 48종가량 확인되는데, 주로 동래부나 동래감리서의 행정자료들이다.[111] 현 '규장각 도서' 안에 서로 이질적인 종류와 성격의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5. 해제·발췌 사업의 전개와 자료 이용

도서 정리 과정에서는 해제 작업이 병행되어 추진되었다.[112] 1911년 6월 당시부터 취조국에서는 7명의 촉탁에게 도서 정리의 부속사업으로서 조선 도서에 관한 해제 작성에 착수하게 했다.[113] 해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관해 중추원 보고자료에서는 "조선도서는 아직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책 이름만으로 직접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적으며 해제가

109) 『圖書出納簿』(규장각 소장, 奎26798).

110) 위의 자료.

111) 위의 자료. 구체적으로는 도서번호 18102~18149번으로 등록되었다.

112) 『조선도서해제』와 관련해서는 도태현, 2003 「"조선도서해제"의 목록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를 참고할 수 있다.

113)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6節 朝鮮圖書解題ノ編纂.

없어 보고 읽는 데 불편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114] 요컨대 조선 도서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도서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해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취조국이 폐지되고 참사관실로 사무가 이관될 때 해제 사업도 그대로 이관되었으며, 수정과 증보를 거쳐 1914년까지 1,468종의 탈고를 하여 1915년 3월에 인쇄하여 배포했다. 그리고 1915년판 도서해제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를 정정증보하여 1919년 3월 31일 새로운 『조선도서해제』를 간행했다.[115] 1915년 5월로 구관제도조사의 사무가 참사관실로부터 중추원으로 소관이 바뀌게 되지만,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추원으로 사무가 인계되지 않고 여전히 참사관실에서 진행하였다.[116] 직원은 중추원으로 옮겨 근무하되 계속 이 사무에 종사하게 하여 완성시켰다. 해제 작업에 종사했던 인물들로는 정만조를 비롯해 참사관분실의 도서 정리나 발췌 조사 사무에 종사하던 인물들이 중복적으로 나타난다.[117]

한편, 발췌사업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조국과 참사관분실 모두 기본적으로 구관제도조사를 수행하는 기구였다. 도서 정리를 하는 한편으로는 고서(古書)와 각지의 관례(慣例)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실지에 출장하여 정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취조국에서는 『사색에 관한 조사』(1911), 『소작농민에 관한 조사』(1912) 등이 편찬되었다. 또 출장을 다녀온 취조국 직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들이 취조국 장관 앞으로 제출되었다.[118]

---

114) 위의 자료.

115) 도태현, 앞의 논문, 6-7면. 이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32년에 중간판이 발행되었다.

116)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6節 朝鮮圖書解題ノ編纂.

117) 한편, 당시 이왕직에서도 장서각 소장 한국본을 대상으로도 해제를 작성하여 『朝鮮書籍解題』를 간행했는데, 당시 장서각 도서를 대상으로도 이러한 조사·이용의 필요가 인지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관련해서는 崔鍾敏, 1988 「「朝鮮書籍 解題」考」,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118) 「[慶尙南道·慶尙北道 管內 契·親族關係·財産相續 槪況報告]」(1911), 「[錦江

참사관분실의 1914년 5월 1일자 보고자료에서는, “관습조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각지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며, 관습의 연원 또는 설명의 자료가 되는 조선, 지나 및 일본에 있는 典籍의 抄錄을 수행하고, 자료가 갖추어지면 법제 및 관습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19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19] 즉 기록 발췌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보고 자료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조선인 촉탁으로 하여금 담임하게 해둔 기록발췌의 사무는 大正 2년(1913) 말까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까지의 실록, 이태왕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에 대해 별지 1호 사항의 소재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게 했다. 나아가 大正 3년 1월부터 별지 2호의 사항에 대해 기성 목록에 의해 본문을 발췌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 중이다.[120]

실록 발췌 취조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는 제1호 및 제2호 실록 발췌 취조사항은 다음 제시한 <표 5>와 같다. 조선시대의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법률과 재정, 세제, 토지, 사회 신분제에 관한 사항 등을 발췌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 5> 참사관분실 실록 발췌 취조사항 (1914년 5월 1일 기준)

제1호 실록 발췌 취조사항		
1 종전 일본과의 간에 있어서의 관계 사항 (유구도 포함) 무역에 관한 사항 2 소위 야인과의 간에 있어서의 관계 사항	復戶, 給復 면세, 면부 [庶土免稅, 有土免稅. 均廳免稅 등 일체 면세 면부] 징세기관의 신설 및 개폐 12 부역에 관한 사항	24 제언 및 보에 관한 사항 본항의 수세 25 관서에 관한 사항 [官隷, 才人, 白丁 등에 관한 사항] 26 불교, 야소교, 동학, 巫覡에 관한 사항

및 洛東江 연안의 泥生浦落 관습 조사 보고서]」(1912) 등, 법전조사국 시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되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자료들은 ‘중추원 조사자료’로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119)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120)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무역에 관한 사항 3 명·청과의 간에 있어서의 관계 사항. 만일 元과의 사이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무역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외국과의 간에 있어서의 관계 사항 5 강역에 관한 사항 6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제에 관한 사항 8 법전에 관한 사항 대명률에 관한 사항 9 노비에 관한 사항 分賤에 관한 사항도 함께 10 전택에 관한 사항 分賤에 관한 사항도 함께 11 조세에 관한 사항 세목의 신설 및 폐지 전세의 세율 및 징수 三手米의 세율 및 징수 공물의 세율 및 징수 잡세의 세율 및 징수 [家基稅, 麥稅, 巫稅, 商賈稅, 각종 分稅] 대동미의 세율 및 징수 결전의 세율 및 징수 염세, 어세, 선세의 세율 및 징수 군포의 세율 및 징수 부가세의 징수 및 세율 [作紙, 加計, 解上, 駄價, 考卜債, 戶籍債, 民庫 등]	13 전제에 관한 사항 양전 양전척 토지의 종목 토지의 수획 토지의 매매 折受賜牌 隱結 餘結 官吏의 挾雜 결부 陳起, 給災 14 還上 및 賑給에 관한 사항 15 병역에 관한 사항 16 화폐에 관한 사항 常木, 布, 楮貨, 銅錢, 丁銀 등 일체를 말한다 17 재판에 관한 사항 18 처첩자녀에 관한 사항 적서의 구별 19 입후에 관한 사항 봉사, 양자, 수양자, 시양자, 손 20 경비에 관한 사항 녹제, 공인계, 궁중 부중 경비 등 일체 지출에 관한 사항 21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 향약, 작통, 면리 22 契에 관한 사항 貢契, 경성지방에 있어서의 각종의 계 23 묘지에 관한 사항 [北邙山도]	27 풍속에 관한 사항 관혼, 상제, 복제, 관, 가옥 기물 등 항목 28 중요 토목에 관한 사항 가령 용산에서 남대문 밖 開渠 논의 성내 開渠 공사 김제 벽골제 축조 축성 운하 부평 제언의 류 29 신경영 사업 당잠을 구하고, 당저를 기르고, 비단 직조를 개시하는 류 30 관찬서에 관한 사항 鑄字에 관한 사항 31 어염에 관한 사항 32 공업에 관한 사항 각종 장인에 관한 사항 33 상업에 관한 사항 보부상에 관한 사항 시장에 관한 사항 [좌상, 도고, 객주 등] 34 농업에 관한 사항 35 禁養에 관한 사항 36 물가에 관한 사항 37 大赦에 관한 사항 38 전항에 들지 않은 것으로서 긴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호 실록 발췌 취조사항		
1 分賤에 관한 사항 1 노비에 관한 사항 2 전택에 관한 사항 附 정전에 관한 사항 2 풍수설에 관한 사항 3 이두에 관한 사항	4 화폐에 관한 사항 5 법전에 관한 사항 6 입후에 관한 사항 7 관혼상제에 관한 사항 8 분묘에 관한 사항 9 전제에 관한 사항	10 세제에 관한 사항 부역에 관한 사항 11 山政에 관한 사항 12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

*전거:『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이러한 조사는 1915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1915년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의 「사무 진행 개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4개월 동안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해 꺼낸 책이 5,684책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중추원으로 송부한 것 3,264책
사전 편찬 담당에게 내어준 것 597책
조선도서해제 담당에게 내어준 것 866책
실록조사 담당에게 내어준 것 602책
외래인에게 열람하게 한 것 355책[121]

이 내역은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해 꺼낸 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원으로 송부한 것'은 보관전환이 아니라 참고를 위해 보낸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이렇듯 많은 책을 중추원에서 참고한 것은 중추원의 관제 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 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의 업무에 "조선의 구관제도조사"가 추가되었다. 종래 참사관실의 업무로 되어있던 구관제도조사를 중추원이 나누어 맡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조선반도사』 편찬이 추진되었다.[122]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어 조선사를 편수하기 이전에, 1915년도 『조선반도사』 편찬이 추진되던 당시부터 참사관분실에 소장되던 조선 고서를 활발히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실록조사 담당"이 언급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조사를 계속해서

121)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事務進行概要報告書」.

122) 『朝鮮總督府官報』 1918. 1. 19. 조선총독부 훈령 제3호, 「朝鮮總督府中樞院事務分掌規程」으로 중추원 아래에 조사과와 편찬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1922년 10월 28일의 사무분장규정 개정으로 편찬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조사과로 이관되었다. 1925년 6월 8일에는 조사과의 '사료 수집과 편찬' 기능이 삭제되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설치되기 때문이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대기」 '근대 중추원' 참조).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4개월 동안 활용한 것이 602책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래인에게 열람하게 한 일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외래인은 대개 일본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취조국, 참사관분실, 학무과분실로 이어지는 이 서고는 흔히 '규장각'이라는 속칭으로도 불리고 있었는데,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걸쳐 일본인 학자들의 논문들에는 조선에 방문하여 규장각 서고에서 문헌을 조사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산견된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를 들 수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가 1912년 4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여름에 조선에 가서 규장각 안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언급이 보인다.[123]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이나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1903년부터 일본 문부성 국어조사위원회 위원, 1923년부터는 고쿠가쿠인대학 국어학 교수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온다. 그가 1911년 7월에 공무를 명 받아서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24] 이 당시 취조국 관리하의 서고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는 일본의 불교학자이자 교육자로, 일본 문부성에 출사한 경력이 있고 현 도요대학(東洋大學)의 전신인 철학관(哲學館)의 설립자이다. 그가 일본제국을 돌며 유세했던 기록집인 『南船北馬集』의 「朝鮮巡講第一回」에는, 철학관 출신이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이었던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浪平治郎)[125]의 안내로 규장각에 가서 문고를 일람한

---

123) 金澤庄三郎, 1912「新領土朝鮮の文字」『學生』3(4) "夏, 私が朝鮮へ行つて奎章閣の中で發見したもので"

124) 金澤庄三郎, 1918「調査及研究: 吏讀の研究」『朝鮮彙報(4月號)』(朝鮮総督府, 1918-04), 97-98면 "されど名のみ聞きて, その物は見る由もなかりしに, 明治四十四年七月公務によりて渡鮮の際, 舊奎章閣に本書を藏すと聞き, 始めて其の實物を見ることを得たり."『대명률직해』에 관한 서술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125) 중추원 자료에 따르면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浪平治郎)는 1917년 11월 20일

일이 기술되어 있다.[126]

그밖에 1910년대 일본의 학술지에서는 “奎章閣에 가서 園木 통역생(末喜)의 안내로 李王의 친필, 활자(銅製 및 木製), 판목(특히 대전회통) 및 장서를 보았다. 내지인이 아직 보지 못한 珍籍이 많아 뜻이 있는 자는 신속히 와서 보아야 할 것이다”(1914)[127]라고 하거나, “그 때문에 매일 규장각에 다니며 사료 수집에 힘썼다.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이조의 실록이다”(1916)[128]라고 하는 등, 연구자들이 이 서고를 방문하여 자료를 보았다는 기록이 다수 보인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문하여 열람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6년 6월 19일, 참사관분실에서는 각 부국의 도서열람 및 대출 내규를 정하는데, 전문학자 등이 도서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참사관의 인허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케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129] 열람 청구 및 참사관의 인허라는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비공개 원칙의 폐쇄서고였던 것을 감안하면 열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 규정이 있기 전에도 묵시

부터 1919년 3월 31일까지 조선도서해제 사무에 종사했다. 이노우에 엔료가 순강(巡講)을 위해 조선에 가서 규장각에 방문한 시기는 大正 7년, 즉 1918년이므로 이즈음이다. 아라나미 헤이지로는 부산에 경성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126) 井上円了 編, 1918『南船北馬集 第15編』, 國民道德普及會, 104-105면 “荒浪平治郎氏(舊哲學館出身現今中樞院囑托)の案內にて奎章閣に至り, 文庫を一覽す, 藏書十五萬冊, 其中に地理誌の如きは長三尺幅二寸五分, 一冊の目方五貫八百目あるに驚く”

127) 橫山雅男, 1914「大正癸丑巡講略記(續)」『統計學雜誌』333, 20면 “奎章閣に赴き園木通譯生(末喜)の案內にて李王の親筆, 活字(銅製及木製), 版木(殊に大典會通)及藏書を見る內地人の未だ眼にせざる珍籍多ければ有志の者は速に來觀すべし”

128) 京都文學會 編, 1916「彙報 讀史會」『藝文』7(12) “それがため日々奎章閣に通ひて史料蒐集に努めたり. その中にて最も主要なるは李朝の實錄なり”

129)『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7目 圖書閱覽及貸出, 1916년 6월 19일「朝鮮·中國圖書 열람 및 대출의 건」第6順.

적 승인하에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연구자들에게는 조선을 비롯한 동양학을 연구함에 있어 규장각 서고의 자료가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것을 본다면 1924년 신문을 통해 보도된 실록 등사 금지 사건은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130] 당시 전주이씨 대동종약소에서 실록을 등사하고자 하였고, 민병석이 이왕직 장관으로, 고쿠부(國分)가 차관으로 있을 때 논의하여, 종친부에 비치하고 있는 것(즉 총독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등사하라는 승인을 얻어서 등사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이재극이 이왕직 장관으로 있을 때 종약소의 편의를 주기 위해 이왕직에 비치해둔 것을 등사할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1924년 3월까지 이왕직의 실록(즉 적상산사고본 실록)을 등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민병석 장관이 중지시켰고,[131] 그 이유를 물으니 "전 장관 이재극 씨가 실수한 일이어서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막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민병석이 그전에 승인했던 일을 이재극이 장소만 변경해준 것일 뿐인데 그것을 이재극의 실수라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실록을 등사할 때는 이왕직 관리가 반드시 옆에 서서 국제문제, 정치문제는 조금도 등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에 역대(歷代)에 관한 것만 등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같은 지면상의 별도 기사로, 이 일이 전주이씨 종약소에 감정을 가진 인물이 민병석을 충동하여 빚어진 일이라는 의혹도 실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기사에서 전하여주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총독부에서 종약소의 실록 등사를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며 장관의 협조를 구해 총독부 관리 하의 실록을 등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약소의 편의를 주기 위해' 이왕직의 것을 등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총독부가 관리하는 종친부 서고

130) 이 내용은 『시대일보』 1924. 5. 11. 「理由업는 實錄의 謄寫禁止 전장관의 실수로 밀고등사를 막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31) 민병석 → 이재극 → 민병석 순서로, 민병석이 다시 이왕직 장관이 되었다.

에 가서 실록을 보는 것에는 불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왕직으로 가서 실록 필사를 할 때도 이왕직 관리가 입회하고 등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 학자들의 논고에서는 규장각 서고에서 자료조사를 하며 그간 찾아보기 어려웠던 희구서를 접한 소회나 문헌조사의 결과가 단순히 서술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별한 제한이나 불편함을 겪은 사례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실록이라는 자료와 관련 있는 단체인 전주이씨 종약소에서 등사를 하고자 한 것임에도 반드시 관리가 입회를 하고 국제문제·정치문제 등사를 막는 등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물리적인 파손을 우려한 차원이 아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른 통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제약의 수준은 일반적인 자료 보존관리 차원에서의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도서 정리 사업 이후 보관전환

1. 학무국으로의 이관과 조선사편수사업(朝鮮史編修事業)에의 이용

1922년 10월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 개정으로 학무국 학무과 사무에 '고도서 보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132] 참사관분실에서 관리하던 도서 및 기록류는 1922년 11월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 소관이 되었다. 도서들은 이동하지 않고 같은 서고에서 학무국 소관으로서 계속 보관되었으며 학무과분실로 칭해졌다. 학무국 소관이 된다는 것은 이 도서들의 이용 주체로 학무관계 인사들이 보다 늘어나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학무관계의 목적이 더욱 개재됨을 시사한다. 공교롭게도 1922년 12월 훈령 제64호로서 조선사편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추원 내에서 집무를 시작하였다. 조선도서 및 기록류의 학무국 이관과 조선사 편수사업은 서로 영향 관계에 있

132) 『朝鮮總督府官報』 1922. 10. 13. 조선총독부 훈령 제50호.

었을 것이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사업의 흐름을 살펴보자.

1915년의 관제 개정으로 중추원에는 구관제도조사와 『조선반도사』 편찬 등의 사무가 규정되었다. 일제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정세와 5년간의 조선 통치 성적에 관해 자신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전통적인 역사관이 『한국통사』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자 이를 저지함과 더불어 통치기조였던 동화(同和)를 문화적 방면으로 달성하고자 조선 반도사 편찬사업을 추진했다.[133]

'반도사 편찬'을 담당한 중추원은 대대적인 사료의 수집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이 부분은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료 수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시 참사관분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도서 및 기록류가 '반도사 편찬'에 적극 활용되게 되었으며, 이 작업과 함께 도서 해제와 실록 발췌 작업이 더욱 확대되었다.[134] 반도사 편찬 사무에 종사했던 교토제대 교수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는, "奎章閣에서 연구한 문헌류에 있어서는 종래 양국의 관계 및 일본 측 사료의 사실을 한층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 종래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 最古의 地理書를 발견했다"(1916.10.)고 한 바 있으며,[135] 재차 "총독부의 서고에서 예기치 않게 훨씬 오래된 지리지를 볼 수 있었다"(1917.1.)고 밝힌 바 있다.[136]

참사관분실은 1916년 11월 27일에 중추원에서 구관 및 제도조사와 반도사, 인명사전 편찬에 필요하여 조선도서 및 중국도서를 대출하는 것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특별 취급을 하는 것은 참사

---

133) 정상우, 2011「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20면.

134) 위의 논문, 24면.

135) 三浦周行, 1916「半島史蹟調査に就て」(1), 『京城日報』, 1916. 10. 24, 1면. 지리서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말한다.

136) 三浦周行, 1917「朝鮮最古の地理誌」『藝文』 8(1)(内外出版印刷, 1917-01), 8면 "總督府の書庫(俗に奎章閣といふ)に於て圖らずも一層古き地理志を見ることを得たり"

관 분실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기타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중추원에 대출되도록"하는 것으로 정했다.[137] 그 직전에 마련된 규정에서는 1부 또는 5책 이내를 한도로 대출하도록 했으며, 특별본이나 유일본의 경우 대출하지 못하게 했고, 특별본은 특별히 참사관의 승인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하여 중추원의 사무와 관련해서는 특별본을 제외하고는 필요할 때마다 대출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의 근거로 든 것은, 중추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도서가 매우 많아 필요할 때마다 분실에서 열람하도록 하기 곤란하다는 점, 다른 소속 관청들과는 사정이 다르고 직원 또한 겸무를 하고 있기에 대출로 인해 파손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취급본 외에는 타 일반의 예에 따르지 않고 대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138]

한편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통치방침 변화가 있었고, 역사편찬을 위한 기구로서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도사 편찬사업은 별개로 진행되다가 완결되지 못한 채 1924년 말 중단되었다. 총독부 주도의 역사편찬의 방식은 『조선반도사』로 추진되었던 통사의 서술에서 『조선사』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발간이라는 것으로 옮아가게 되었다.[139]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1920년대 일본의 조선 통치 방침이 조선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포섭한다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있었고, 당시 일본 내에서의 역사편찬 사업의 진행 방식이 마찬가지로 통사 서술이 아닌 '사료의 수집과 발간'이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140] 1895년경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괘에서 편찬된 『大日本史料』와 『大日本古文書』, 문부성 관하 유신사료편찬회에서 편찬된 『大日本維新史料』 등이 모두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

1922년 12월 설치된 조선사편찬위원회, 그리고 1925년 6월에 조직을

137)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3節 圖書ノ整理, 第7目 圖書閲覽及貸出.

138) 위의 자료.

139) 정상우, 앞의 박사학위논문, 76면.

140) 위의 논문, 96-98면.

강화·개칭하여 성립된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공정한 학술적 입장'에서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였다.[141]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참사관실에서 학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목적과 관련해 그 무게중심이 구관제도조사에서 역사편찬으로 옮아갔음을 의미한다.

1922년 11월,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학무국에서 관장하게 된 이후로는 '조선사 편찬사무 개시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여, 특별취급이 필요한 도서에 관해서도 중추원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142] 여기서 특별취급이 필요한 도서는 조선 역대의 기록, 계보, 기타 인판(印版)·장정(裝釘) 등이 특이한 책, 구하기 어려운 책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앞서 조치를 완화한 것에 이어서 특별취급본에 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렇듯 조선사 편찬사무에 있어서 예외를 최대한으로 인정하면서 자료 활용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2.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보관전환

1925년 조선총독부는 그 산하에 관립공공도서관으로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학무국 관할이었다. 당시는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참사관분실의 정리 이후 1922년부터는 학무국 소관으로 인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도서들 중 일부를 조선총독부도서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관전환(保管轉換)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초대 관장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총독부도서관관제」발포 1년 전쯤에 도서관 창설의 내명을 받았다고 한다.[143] 관제의 공포는 1923년 11월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22년 11월경부터 총독부도서관 창설의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141) 위의 논문, 101면.

142)『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3節 圖書ノ整理, 第7目 圖書閱覽及貸出.

143)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3『國立中央圖書館史』, 國立中央圖書館. 149면.

이즈음은 참사관분실에서 학무국으로 '조선도서'가 인계되었을 무렵이다. 또한 이 직전인 1922년 5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 마쓰무라 마쓰모리(松村松盛)가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조선교육령공포기념사업의 하나로서 도서관의 설립을 권한다」는 글을 게재했던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44] 학무국 산하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되고 학무과분실 도서 일부가 그 개관의 기초장서로 보내진 배경에는 학무과장 마쓰무라 마쓰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도서관 설립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제가 1924년 발표한 「조선총독부도서관 사명」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 사명은 조선 통치의 주요 방침에 기초한 사상의 선도, 교육의 보급, 산업의 진흥에 관한 신고(新古) 도서의 수집, 조선 민족 문헌의 수집, 광의에 있어서의 조선 연구에 관한 화한양서 수집, 전선(全鮮)에 대한 도서관 보급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자가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공식적으로 일반에 개관한 것은 1925년이었고, 학무과분실로부터 도서가 보관전환된 것은 1924년 7월 14일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초대 관장 오기야마 히데오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로부터 보관전환을 받은 도서는 10,000책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총 경비 18,000원을 가지고는 도서구입비를 염출할 수가 없어서 총독에게 여러 번 이러한 사정을 진정하였습니다만 당시의 정세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총독부 안에 있던 도서실로부터 보관전환을 받은 도서가 약 10,000권쯤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은 대부분이 **고색창연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들**이었으므로 이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관할 수 없었습니다. (...)
>
> 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하였다고 해서 일반사회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열람자가 모여 왔습니다. 그런데 장서 수 겨우 12,000권 그것도 **그중의 10,000권은 총독부의 사무에 필요했던 도서**였고 조선교육회로부터 기부받은 2,000권 밖에는 소용되지 않아서 '圖書館'이 아니고 '圖書無館'이란 별명을 받아 혼이 났습니다.[145] (강조는 필자)

---

144) 위의 책, 149-150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은 책수(冊數)를 의미한다. 조선총독부도서관 개관시의 기초장서는 조선교육회의 기부서 2천 책, 그리고 조선총독부로부터의 보관전환 도서 1만 책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상으로는 1923~1924년에 조선총독부 총무과로부터 보관전환된 도서들, 1924년 7월 14일자로 학무국으로부터 보관전환된 도서들이 확인된다.[146]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출납부』상으로는 해당 도서들에 말소 표시와 함께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보관전환된 도서는 '조선도서'(한국본)와 '지나도서'(중국본)를 합쳐 300여 종, 1800여 책이었다. 나머지 8,000책가량의 도서들은 서무부(총무국에서 개편) 소관의 조선총독부도서 중에서 보관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서무부로부터 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된 것 중에는 본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중에서 조선총독부 총무국 총무과로 보관전환되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다.[147] 『도서출납부』에 '총무과로 보관전환'이라고 나타나고 동일 제목, 동일 책수의 건명이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보관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학무국으로부터 보관전환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朝鮮總督府'가 아닌 '本府學務局'이라고 되어 있다(부록 2-2).

조선총독부도서관장은 오기야마 히데오는 본래 조선총독부의 『조선반도사』 편집관이었던 인물로,[148]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장으로 취임하여 1945년

---

145) 위의 책, 189면.

146) 현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가 남아있어 시기별로 각 개별 도서들이 입수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원부는 소장 자료로 등록된 것이 아닌 업무용 자료로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협조를 얻어 사본을 확인하고 일부면을 본고의 <부록 2-2>로 수록하였다.

147) 예를 들어 본래 집옥재 도서였던 1880년 판본 『흠정고금도서집성』 1,626책은 참사관분실에서 보관되다가 1918년 4월 18일에 총무과로 보관전환되었다. 그리고 1924년 2월 2일 당시에 조선총독부 서무부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었다(부록 2-2 참조).

148) 아시아역사자료센터, 「アジ歴グロッサリー」'朝鮮総督府圖書館'. https://www.jacar.go.jp/glossary/term2/0050-0020-0020-0010-0430.html

10월 5일자로 미군정청으로부터 파면될 때까지 22년간 한 사람이 관장 업무를 수행했다. 조선총독부로부터 보관전환된 책과 관련하여 “고색창연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들”, 또는 “총독부의 사무에 필요했던 도서”로 표현하였다.[149] 오기야마 스스로가 총독부의 사무에 종사하면서 이 도서들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이 도서들을 근대도서관에 어울리는 도서라고 여기기보다는 ‘총독부의 사무에 필요한 도서’라고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서들이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장서인이 날인되었다. <그림 15>는 당시 학무과분실에서 보관전환된『東醫寶鑑』25책 완질 중 제3책의 내지 첫 면과 앞표지 뒷면이다.[150]

‘宣賜之記’는 이 도서가 간행되어 반사(頒賜)될 때 날인되었던 원 장서인이다. 또한 조선총독부 도서 정리 과정에서 날인된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도서들 중에는 ‘朝鮮總督府圖書之印’라는 인문(印文)의 장서인이 두 가지 서체로 확인된다. 참사관분실 도서 정리 과정의 것과 다른 서체의 ‘朝鮮總督府圖書之印’도 확인되는데, 총무과 등 조선총독부 내 다른 부서에서 날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동의보감』내지 첫 면의 해당 장서인은 참사관분실 도서 정리 과정에서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 참사관분실에서 정리한 도서였음을 알 수 있다.『도서출납부』상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었다고 한 11651번『동의보감』과 책수가 동일하여 이것이 본래 11651번 도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보관전환 당시에 세로로 긴 형태의 ‘朝鮮總督府學務局 保轉本[151]’ 장서인과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었다.

앞표지 뒷면에는 둥근 모양의 조선총독부 도서 등록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다. 그 시기는 1924년 7월 14일이며 등록원부나 출납부상에 학무과분실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도서들이 보관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와 일치한다.

이『東醫寶鑑』은 오대산사고에 내사되었던 선사본을 포함하여 25권 25

149) 國立中央圖書館 編, 1973 앞의 책, 189면.

150) 許浚(朝鮮) 奉敎撰,『東醫寶鑑』(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貴古朝68-3).

151) ‘保轉本’이란 ‘保管轉換本’을 의미한다.

<그림 15> 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된『동의보감』중 제3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貴古朝68-3)

책의 완질을 갖추고 있는 판본이며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동의보감』에는 완질이 없는데, 당시 학무국에서 완질을 채운 것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복본이 있는 것 중 특별히 선본(善本)을 가린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설립은 일견 비로소 근대 관립공공도서관이 설립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산하의 도서관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위해 운영된 기관이었으며, 그 기관지『文獻報國』에는 조선 내 발매금지 도서 목록과 문부성 추천도서 등이 실렸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의 '불온

서적'을 차단하고 그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도서를 소개하는 사상 통제를 수행했던 기관인 것이다.

건립된 시기로 본다고 해도 일본 내 관립공공도서관은 1870년대에 개관했고 대만총독부도서관은 1910년대에 개관하였는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개관은 1925년이 되어서의 일이었다. 일제는 학무과분실에서 보관하던 조선 고서를 포함한 조선총독부도서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기초장서로 보냄으로써 도서관으로서의 구색을 소박하게나마 갖추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학무과분실에 보관되던 16만 5천 책 중에서는 극히 일부가 공공도서관으로 이관되었고, '분실(分室)'로 표상되는 지식·정보의 독점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통치하며 '근대화'를 표방했지만, 도서 정책의 측면에서도 '근대'와는 거리가 먼 지식의 독점 및 사상의 통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3.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의 보관전환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민지 조선의 대학기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3.1운동을 비롯한 조선인사회의 동향이 계기가 되어 '문화정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통치정책이 실시되었고, 총독부 내부에서는 식민지 대학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152]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2년제 예과를 설치하여 개교하였고,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두는 학부과정이 1926년에 개설되었다. 1930년 9월, 학무과분실에 보관되던 도서 및 기록 일체가 경성제대로 이관되게 되었다는 소식이 각 신문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 서고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대학 측의 요구가 아직 용인되어오지 못하던 중 금년 여름 대학도서관 서고 제2기 증축이 완성되어 아직 버텨오던 규장각 측에서도 할 수 없이 내놓게 되었다"고 하였다.[153] 실제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이관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152) 松田利彦, 2014「京城帝国大学の創設」『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酒井哲哉·松田利彦 편), 東京:ゆまに書房, 110-112면.

153)『매일신보』1930. 9. 24.「奎章閣藏書廿萬卷 京城帝大에 移管」.

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지만 당시로서는 도서관 설비가 도서들의 행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54)]

때문에 당초에는 학무국 학무과분실에 보관되던 도서 중 일부 도서들에 한해 경성제국대학으로 보관전환을 하였다. 출납부상에는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경우와 같이 일부 도서들에 관한 말소의 표시와 '경성제대로 보관전환'되었다는 기재가 확인된다.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경우 결번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 도서들은 1930년에 경성제대로 도서 일체를 보관전환한 후에는 하나의 도서군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했다가 다시 채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된 책들은 그 시기가 출납부나 도서등록인을 통해 기재되어 있어 알 수 있으나 경성제대로의 일부 보관전환은 시기의 기재 없이 보관전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본『도서출납부』에는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도서번호 11889번『全韻玉篇』에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보관전환'이라는 기재와 말소 흔적이 보인 위에, 11889번에『周易諺解』가 다른 번호에서 옮겨와서 새로이 기입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11889번『周易諺解』에는 '경성제대로 보관전환'이라는 기재와 말소 흔적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성제대로의 보관전환'은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보관전환'이 있었던 1924년 7월 14일 이후부터, 도서 일체의 이관이 있었던 1930년 8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일체 이관되는 과정은 1928년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총 16만 2,159책을 이관하였다.[155)] 1930년에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이 준공

---

154)『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8目 古圖書ヲ城大ニ保管轉換. "昭和 5년(1930) 8월 京城帝國大學으로부터 조선 및 중국의 고도서 보관전환의 照會가 있었는데, 총독부에서는 不燃 소재의 서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책을 보관하는 것으로 同月 2일 총독의 결재가 있었다."(번역은 필자)

155) 김태웅, 2011「일제강점기의 규장각」『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95면.

되었고, 1930년 8월「조선 및 지나의 고도서 보관전환」조회로 '규장각 도서' 일체는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156] 일본 측 자료에는 이 이관에는 조건이 달렸다고도 되어있는데, 불연질 서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책을 보관하는 것으로 조선총독이 8월 2일 결재하였다는 것이었다.[157]

이 도서 및 기록류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실 자료나 정부 기록류, 문서 등 도서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것들을 일반 도서와 분리할 시도를 하거나 당시 다른 도서관들에서 채택하고 있던 분류 방식을 채택하여 개편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활용한 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방침을 택했다.

한편, 경복궁 동편의 종친부 부지는 1908년 무렵 이래 1930년에 이르기까지 제실도서 내지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보관하는 도서고로 사용되어 왔다.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어 나가기 시작한 1928년, 소격동에는 의전병원(醫專病院)이 설립되어 종친부의 서고와 같은 부지를 공유했다. 1930년에 도서가 완전히 이관되어 나간 후에는 서고로 사용되던 구 종친부 건물들은 의전병원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17>의 신문 기사는 당시의 사진과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 「의전병원에 넘어간 규장각 건물」외래환자부와 의국으로서 今後에 擴張使用
> 경복궁 옛 대궐 건춘문 밖 의전병원 앞에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분실로 있던 규장각은 29일 오전 10시 관계자 입회 아래 의전부속병원으로 인도되었다. 그보다 전 규장각이 간직하고 있던 고서 십오만 권은 모두 성대(城大)로 양도되었고 그 건물과 대지만 의전병원으로 넘겨준 것인데 (...)[158]

---

156)『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8目 古圖書ヲ城大ニ保管轉換. 보관전환 조회의 원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57) 위의 자료.

158)『매일신보』1930. 11. 30.「醫專病院에 너머간 奎章閣建物」(그림 17 참조).

한편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이관받은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관리하는 내규를 세웠으며, 이전까지 속칭으로 불리고 있던 '규장각 도서'라는 명칭을 공식화하였다. 규장각도서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에서 별도 관리가 이루어졌고, 법문학부 연구실과 같은 건물에 자리 잡았다.[159] 법문학부의 향후 조선·동양 연구에 있어 규장각도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의 관학자들은 주로 대외관계 및 언어 연구 관련 자료에 관심을 두었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고전번각위원회에서는 규장각총서를 간행했는데, 그 첫 번째는 『심양장계』였다. 그리고 『증정교린지』,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160] 또한 일제는 조선왕조실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영인 작업을 추진했다. 경성제국대학은 태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하여 192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933년 3월에 영인 작업을 마치고 20부를 간행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쿄제국대학 등 대학에 배포되었다.[161]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면서 대학교수 등 연구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조선인들의 활용 측면에서는 보다 폐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참사관분실과 학무과분실 시기에는 허가를 받을 경우 일부 조선인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도서들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이후로는 '자료의 완전한 보전'을 이유로 이러한 기회마저도 봉쇄되었다.[162] 당시의 여러 신문 사설을 통해 이러한 비공개 방침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3] 기존에 총독부의 열람 방침이

159) 김태웅, 2011 앞의 글, 95면.

160) 위의 글, 97면.

161) 위의 글, 97-98면.

162) 위의 글, 99면.

163) 『조선일보』 1930. 9. 24.「閱覽範圍縮少를 一般은 憂慮」"(...) 중요 국사를 한데 모아놓은 규장각문고가 이미 제국대학의 손으로 옮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바, 그중 '이조실록'으로 말하면, 원래 한국정부 당시에도 강화 전

폐쇄적이었던 것, 그리고 경성제대로 이관된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민간에까지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正宗創建의奎章閣
京城帝大로넘어가
朝鮮古籍의一大寶庫
卷數로十五萬册
主要古書總集成

<그림 16>「正宗 創建의 奎章閣, 京城帝大로 넘어가」
『동아일보』 1930.9.24.

등사와 오대산과 태백산 등 네 곳에 소장하여 오던 것을 모두 총독부에서 거두어다 지금부터 십여 년 전에 동경제국대학에서 달라 한다 하여 그중 한 벌을 빌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大正 8년의 지진 때에 한 책도 남지 않고 전부 불속에 들어 소실된 전례도 있었는데 (…) 또한 예전 총독부 손에 있을 때에도 일반에게 잘 공개하지 않던 것이 더구나 帝大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 범위가 더욱 협소하게 될 것이요"; 『중외일보』 1930. 9. 26「奎章閣의 古籍 公開함이 當然」"규장각문고가 학무국의 보관에 있을 때에도 그를 열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학무국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이와 같이 허락을 얻은 후에 그를 열람하게 만든 것으로 말하면 규장각 문헌이 모두가 오래되고 귀한 도서여서 한 번 유실하면 다시 얻기가 어려우므로 대중에 대한 공개를 피하고 (...) 그러나 寶庫라는 관념에 구속되는 끝에 공중에 대한 공개를 끄려 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되고 말 것 아닐까."(모두 필자가 현대어 표기로 윤문함)

救濟費非常支出과
稅金減廢調査等
이두지방일대지진에대한
閣議의重要한協議

詐欺犯

醫專病院에너머간
奎章閣建物
의래환자부와의국으로써
今後에擴張使用

青陽事件犯人
高玉丹移送
공주검사국에서취조개시
歸結은엇지될가?

<그림 17>「醫專病院에 너머간 奎章閣建物」
『매일신보』1930. 11. 30.

제 3 장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분리와 해체

앞서 대한제국기 궁내부 소관의 것을 시작으로 일제에 의한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살폈다. 이것을 ①고종 재위기 후반, ②순종대「규장각 분과 규정」시행 후, ③일제강점기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1911~1930)의 세 시기로 나누어 도해(圖解)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도서 정리에 있어서는 종류별 분리 관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와 성격을 가진 자료들이 한 기구 안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

1911년 3월 당시 취조국 장관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는 "조선 고서를 산일(散逸)시키지 않고 취조국에서 이를 정리·보관하고 나아가 도서관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근본의 목적"을 언급한 바 있으며,[1] 1913년 2월 당

A 어제·어필 선첩·선보 윤음·책문·족자 실록 어정제서
B 일반 서적 [상판 경사자집, 당판 경사자집]
C 관청일기류 등록류 의궤류 공문서류
D 활자
E 양안, 호적 등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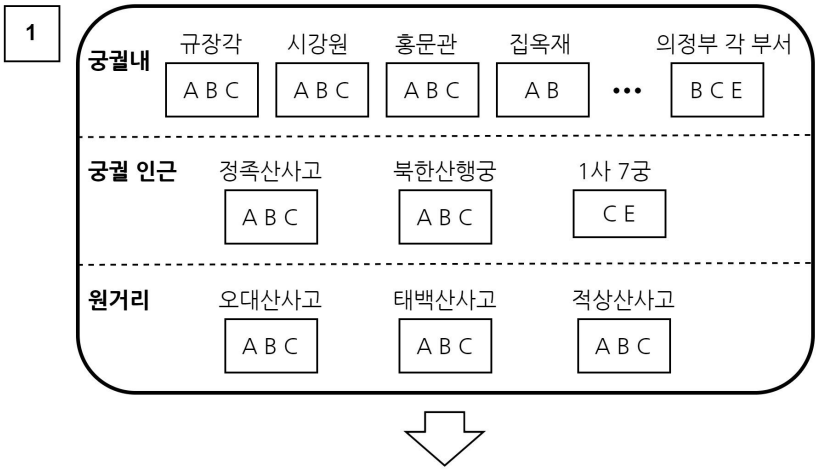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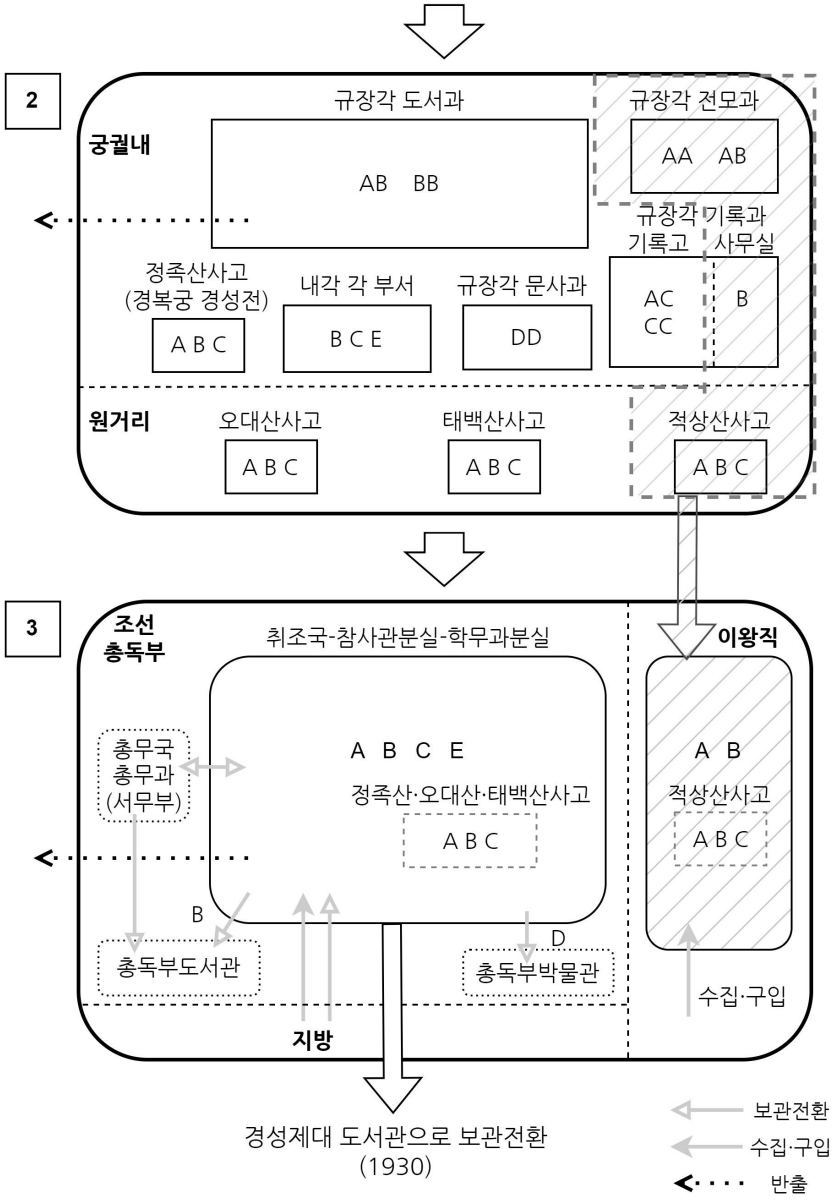

<그림 1>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 재편의 흐름

시에도 정무총감은 “규장각 도서를 완비하여 조선에 관한 완전한 제국의 문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목적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밝힌 명분과는 달리,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이관되는 흐름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도서 및 기록류임에도 인위적인 분리를 맞게 된 장서각 도서, 그리고 통감부와 일제에 의해 주도되거나 묵인된 시기별 반출이 존재한다.

실제 조선총독부 측으로 이관된 조선 도서 및 기록류가 활용된 양상을 감안하면,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도서 및 기록류의 ‘물리적인 측면’을 ‘산일시키지 않고’, ‘완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텍스트, 즉 지식·정보를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본이 존재하는 도서들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는 굳이 모든 판본을 보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왕직 장서각 도서로의 분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큰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일제는 황실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창설하여 불완전한 해체의 상태로 존속시켰다. 계보 관련 자료는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지식·정보를 활용할 여지는 많지 않았고, 이왕가에서는 창덕궁 봉모당의 자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일제는 도서들 일부를 이왕직 서무계 도서실 관리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당시에 지방사고들 간 소장본의 구성이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던 것에 착안하여 지방사고 중 한 곳의 도서와 기록을 이왕가 관리로 넘겼다. 그밖에 이왕직 도서로 창덕궁 기록과에 남겨져있던 서적이나 이왕직이 새로이 구입하거나 수집한 서적들이 포함되었다. 이왕직 관리 도서 및 기록류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봉모당 내의 모훈·계보자료, 그리고 적상산사고 소장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 왕실 아카이브의 원질서를 생각했을 때 본래 같은 성격으로

1) 朝鮮總督府 取調局 編, 『圖書關係書類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26764) 1911년 3월 23일,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長官(石塚) → 政務總監.

생산되고 관리되던 자료들이 더 이상 같은 성격의 자료로서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분리가 일어난 것이었다.[2)]

한편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물리적으로 산일시키지 않고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그 안의 지식·정보를 누락 없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시한 듯하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도서 또는 기록의 반출이 거듭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일제의 도서 정리의 과정에서는 복본의 수효 조사가 이루어졌고, 정리가 이루어져 복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에 한해서는 일본 본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의 형태로 반출했다. 도쿄제대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궁내성 도서료로 반출된 의궤는 모두 이렇듯 복본이 있는 기록물들이었다.

또 일제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가 당시 그들이 세운 방침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반출은 공식적인 보관전환이나 기증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도서 반출의 과정을 보면, 대출로 처리하였다가 반납을 받지 못하자 복본이 있는 도서에 관해서는 기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재차 독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반납을 받지 못했던 과정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오구라 신페이의 장서 중에는 대한제국기 관서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도서들이 여러 종 확인된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에 일제가 관여한 이래 의도적으로 또는 미필적인 고의로 자료들이 흩어지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일제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의 흐름을 살펴봄에 있어 해체의 양상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조선총독부로 강제접수된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총독부도서 내에서도 '참사관실전용', '학무과전용'의 도서로 취급되고 관리되었다. 한편 이왕직 소관에 있어서는, '이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가운데 왕공가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계보 보존 및 추념을 위한 자료, 또는 상징적으로 갖추어두는 자료 등이 분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매우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1 절 이왕직(李王職) '장서각(藏書閣) 도서'의 분리

1. 집옥재(集玉齋)·시강원(侍講院) 도서의 인계 거부 시도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황실령 제20호「전 한국 궁내부 직원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3] 그 내용은 전 한국 궁내부 직원으로서 조선총독이 '잔무취급(殘務取扱)'을 명한 자는 당분간 종전의 관직 구별에 따라 왕족(王族)과 공족(公族)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10년 12월 30일에 황실령 제34호「이왕직관제」가 발포되었다.[4] 이왕직(李王職)은 '궁내대신의 관리에 속하며 왕족 및 공족의 가무(家務)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차관과 사무관에서 말단까지 직제를 규정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왕직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잔무취급을 명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잔무취급을 면하는 훈령을 내렸다.[5]

1911년 2월 1일, 구 궁내부 대신 민병석이 이왕직 장관에, 구 궁내부 차관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가 이왕직 차관에 임용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고하 관직 68여 명의 임용이 발표되었다.[6] 같은 날 사무분장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이왕직 아래 서무계의 사무 중 하나로 "도서의 보관, 출납 및 종람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강점 직전 규장각 관리하에 있었던 궁내부 도서 및 기록 전체는 자연히 이왕직의 관리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1911년 1월 25일, 구 궁내부 대신 민병석에게 구 궁내부 규장각 보관의 한국정부 기록 및 도서를 전부 취조

---

3)『朝鮮總督府官報』1910. 9. 2.「前韓國宮內府職員ニ關スル件」(1910. 8. 29. 公布) "前韓國宮內府職員ニシテ朝鮮總督ニ於テ殘務取扱ヲ命シタル者ハ當分ノ內從前ノ官職ノ區別ニ從ヒ王族及公族ニ關スル事務ヲ掌理ス 朝鮮在住ノ王族及公族ニ附屬スル前項ノ職員ハ朝鮮總督之ヲ監督ス"

4)『朝鮮總督府官報』1911. 1. 9. 皇室令 第34號「李王職官制」(1910. 12. 30. 公布).

5)『朝鮮總督府官報』1911. 1. 31.「朝鮮總督府訓令第7號」(1911. 1. 31.) "明治44年1月31日限殘務取扱ヲ解カレタルモノト心得ヘシ"

6)『순종실록』부록 권2, 1911년 2월 1일(양력).

국으로 인계하라는 통첩을 보냈다.[7] 이왕직 장관 민병석은 1911년 2월 4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회신을 보냈다. 회신의 요지는, '구 궁내부 규장각 도서관'에 맡겨진 도서들 중 옛 집옥재 및 시강원 소장 도서, 도서과에서 새로 구입한 도서는 인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8]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종대 규장각 분과규정 시행 이후로 도서과, 기록과가 각기 도서(제실도서)와 기록(궁내부기록)을 담당했으며, 기록이 장치(藏置)된 곳은 창덕궁 기록고였던 한편 도서가 장치된 곳은 옛 종친부에 조성한 서고로 이 서고가 민병석이 말하는 '구 궁내부 규장각 도서관'이었다. 민병석은 구 궁내부 규장각 도서관에 맡겨진 도서는 '원 규장각, 원 홍문관, 원 북한산행궁, 원 집옥재, 원 춘방(시강원) 소속의 것 및 도서관 신설 후 구입한 서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계할 도서로부터 집옥재, 시강원, 신규 구입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 그중 집옥재 부분은 이태왕 전하 소장본에 해당하여 자유로이 출납 열람하셨던 것으로 도서관 설립 후 정리·보관의 필요상 요청하여 도서관에 격납했지만 현재 여전히 전하의 개인소장본으로서 명령에 따라 출납의 수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춘방의 왕세자 전하 소용의 분에 관해 이 또한 같은 취지로 도서관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모두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에 취조국으로 인계할 도서는 위 집옥재, 춘방 및 신규 구입분을 제외한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집옥재 도서들은 고종의 소장본으로서 고종이 자유로이 출납 열람했던

---

7) 이 통첩 문건은 현재 직접 확인이 되지 않고 서류철의 첫 번째 문서로 수록되어 있는 민병석의 회신 첫머리를 통해 해당 통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2월 4일, 李王職長官子爵 閔丙奭 → 政務總監山縣伊三郎.

8) 위의 자료.

9) 위의 자료.

것으로, 도서관 설립 후 정리·보관의 필요상 요청하여 도서관에 격납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개인소장분이라는 취지였다.[10] 또한 시강원 책 역시 동일하게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신규 구입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서 및 기록을 인계받을 부서로 지목된 취조국의 장관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는 해당 요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집옥재, 춘방의 서적 목록이 적확한 것이 현존하지 않아 만일 이를 분별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각 서적에 대해 押捺되어 있는 印影을 증거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과에서 새로이 구입한 서적은 본래 이왕가의 사유로 인정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옥재, 춘방의 서적이라 하더라도 前述의 방법으로 분별하여 이를 이왕직에 잔류시킨다면 혹 완비되어 있는 서적도 경우에 따라 이를 분리하고 어지럽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혹은 필요한 朝鮮 古書의 대부분은 이를 이왕직에게 잔류시켜두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지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불행히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조선 고서를 散逸시키지 않고 취조국에서 이를 정리·보관하고 나아가 도서관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근본의 목적은 거의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1]

집옥재와 시강원의 적확한 서적 목록이 없으므로 이를 분별하려 한다면 장서인을 증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12] 도서과에서 새로 구입한

---

1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고종이 집옥재 도서를 포함하여 여러 소장처의 도서를 모아 제실도서관을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당시 고종의 의지로 집옥재 도서들이 이관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1)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3월 23일,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長官 → 政務總監.

12) 현 규장각에는 1900년 이후로 작성된 집옥재 관련 서목 3종과 『춘방장서목록』이 소장되어 있는데, 도서과로부터 인계받기 전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서적은 이왕가의 사유(私有)로 인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장서인을 토대로 집옥재·춘방 서적을 이왕직에 잔류시킨다면 나머지 서적들에도 영향을 미쳐 필요한 조선 고서의 대부분을 이왕직에게 잔류시켜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약 한 달 후 이시즈카는 "그 후 이왕직 차관과 협의하여 그 서적은 전부 당국으로 인계하기로 내정하였음"을 정무총감에게 알렸다.[13] 당시 이왕직 차관은 1908년 9월 23일부터 대한제국 궁내부 차관으로 근무한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였다. 뒤이어 5월 4일, 임시총무부장관 사무취급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는 취조국 장관에게 "전 집옥재 및 춘방 서적도 이번에 전부 취조국으로 인계하도록 이왕직 장관에게 조회한바, 승낙의 취지로 회답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14] 이왕직은 직제로는 일본 궁내성 산하에 있으면서 직원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도서 및 기록의 관리기구로 지목된 총독부 취조국 장관의 의견이 이러했던 이상 사실상 이왕직 장관이 거부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15]

도서 목록을 토대로 하면 이왕직에서 인계를 거부한 자료 중 집옥재 도서가 39,817책, 시강원 도서가 20,119책으로,[16] 이 두 곳의 도서가 약 6만 책 규모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도서들에 대한 인계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후에 실제 이왕직 관리로 인정된 것은 『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책수를 기준으로 하여 2만여 책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왕직에 대하여 1911년 6월 1일자로 그 도서 및 기록 일체를 총독부 취조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17] 이왕직이 2월 1일부터

다고 말한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13)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4월 20일 調發 제156호.

14)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5월 4일 朝乙發 제4033호.

15) 『朝鮮總督府官報』 1911. 1. 9. 皇室令 第38號 「李王職官制」(1910. 12. 30. 公布).

16) 이는 『集玉齋書籍目錄』(규장각 소장, 奎11676, 1908년 작성) 및 『春坊藏書總目』(규장각 소장, 奎11671, 1905년 작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그리고 그밖에 도서과에서 새로 구입한 도서에 관해서도 인계를 거부하였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려우나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규장각 소장, 古017.1-Si61, 1908년 작성)에 따르면 1,215책이므로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15일 調發 제220호.

사무를 개시했으므로 이왕직에서 구 궁내부 기록 및 도서를 관리했던 것은 약 4개월간이다. 『순종실록』 부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前 奎章閣 소관 圖書 일체를 取調局에 인계하였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새로 구입한 서적 3,528冊, 또 구 宮內府에서 인수한 공문서와 아울러 서적 12,615책, 茂朱 赤裳山史庫와 璿源閣에서 옮겨온 서적 4,066책을 모두 도서관에 소장하였다.[18]

'전 규장각 소관 도서 일체'를 취조국으로 인계하되, 1911년 2월부터 6일까지 새로 구입한 서적, 구 궁내부에서 인수한 공문서와 서적 일부, 무주 적상산사고와 선원각에서 옮겨오는 서적은 이왕직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 궁내부에서 인수한 공문서와 서적 12,615책 중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구 규장각 전모과에서 관리하던 봉모당과 보책의 전모 자료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는 당초 이왕직에서 요청한 것에 비해 1/3가량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집옥재 도서와 같은 특색 있는 도서 대신 복본이 있다고 파악된 것 위주, 또는 전모 자료를 넘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왕직 장관이 인계를 거부한 자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4만여 책에 달하는 집옥재 도서였다고 할 것이다. 시강원 도서 역시 국왕이 세자 교육을 위해 조성했던 장서였다. 이왕직 장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조선총독부로 인계 거부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종의 의지가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계 거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창덕궁 봉모당 자료와 적상산사고 소장 도서가 포함된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일부가 이왕직의 소관이 되었다. 봉모당 자료는 왕가와 관계되는 것인 만큼 이왕직의 소관

---

18) 『순종실록』 부록 권2, 1911년 6월 19일(양력) "前奎章閣所管圖書一切, 引繼于取調局. 而自本年二月至六月, 新購入書籍三千五百二十八冊, 又舊宮內府引受公文書竝書籍一萬二千六百十五冊, 茂朱赤裳山史庫及璿源閣移來書籍四千六十六冊, 竝藏于圖書館."

자료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적상산사고 소장본이 이왕직 소관이 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인계 거부와 무산에 따른 일종의 보상 차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9]

2. 봉모당(奉謨堂) 및 적상산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한 도서 및 기록류 관리

앞서 살펴본 『순종실록』 부록의 이왕직 관리 도서 구성에 관한 설명을 기초로 하고 장서각에 소장된 대장류를 상호 비교하여 실제 어떤 자료들이 이왕직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 궁내부에서 인수한 공문서와 서적 12,615책'이라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구 궁내부 중에서도 전모과가 관장했던 전모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20] 정확하게는 1911년 6월 이전까지 창덕궁에 있던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중에서 '기록과 소관 기록류' 등 조선총독부에서 강제접수한 건을 제외한 것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21] 그중에 창덕궁 봉모당 자료가 중심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 『도서관계서류철』에서 목차 다음 가장 먼저 실려 있는 「조선도서 정리에 관한 건」의 2번 조항을 보면, '이왕가의 계보에 관한 것은 다시 이를 이왕가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되어있다.[22] 이것은 도서 정리 과정에서 모훈 자료나 계보 자료가 발견되면 이왕직으로 보낸다는 강제력을

---

19) 적상산 사고 소장 도서 및 기록류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기증했다는 사실을 일일이 장서인으로 남겼다.

20) 千惠鳳, 1996「藏書閣의 歷史」『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28면.

21)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창덕궁은 궁내부 청사의 각 사무실 등, 도서 및 기록류를 곳곳에서 소장하고 있었지만, 취조국으로의 인계 완료 보고에서 창덕궁에서 가져온 것을 '기록과 소관 기록류' 11,730책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일부는 취조국이나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서 파악하여 취조국으로 추가로 가져가거나, 일부는 이왕직 도서실로 합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는 『조판재산목록』, 『당판재산목록』을 통해 개별적으로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22) 『圖書關係書類綴』,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가진 성격의 조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의 도서 대장을 보면 어제, 어필, 선원계보기략 등이 일반 도서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23] 현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훈 자료나 계보 자료라 하더라도 창덕궁 봉모당에 있지 않았던 것, 예를 들어 순종대 도서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아직 전모과로 보내지지 않고 종친부 서고 안에 섞여 있던 것이나 경복궁 경성전에 적치해둔 정족산사고 소장의 것, 1914년 11월에 옮겨져 온 태백산·오대산사고 소장의 것은 조선총독부 도서 정리 범위에 합쳐졌다. 따라서 '계보 관련 자료를 이왕직으로 교부한다'는 방침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로 도서 정리 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이왕직으로 추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 규장각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해당 방침은 창덕궁 봉모당 자료를 이왕가의 관할로 하면서 그 근거 조항으로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창덕궁 내 기존의 봉모당과 책고들을 철거하고 1911년에 봉모당, 보각을 새로 지어 이왕직에게 증여했다.[24] 이왕직은 인계받은 모훈 자료들을 이 봉안시설에서 보관했다.[25] 조선총독부에서는 강점 당시 순종이 임어하고 궁내부 청사가 위치했던 창덕궁 내의 봉모당과 보각에 보존되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이왕가 관할로 인정하였다. 서류상으로는 궁내부에서 취조국으로 인계하였다가 반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물 자료는 계속해서 창덕궁 내에서 보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사수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왕직은 왕실자료와 일반자료를 구분해 보관했다. 『조판재산목록』에는

---

23) 도서 대장의 해당 자료들의 수록과 관련하여, 도서과, 전모과, 기록과가 나뉘어 있었던 순종대 규장각의 상황과는 배치된다. 순종대 규장각 도서과는 전모과·기록과 소관의 자료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실도서목록』에도 계보·기록류 등이 실려있지 않고 이들 자료에 '帝室圖書之章'도 날인되는 일이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도서로 취급하였다.

24) 정정남, 2019 「봉모당의 창덕궁 내 위치와 건축적 변화」『왕실 서고 봉모당의 건립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1-143면.

25) 千惠鳳, 1996 앞의 글, 28면.

재산목록 중에서 말소하는 것은 줄을 긋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는데, 봉모당으로 보관 전환을 하여 말소한 것들이 6건 보인다. 이왕직이 일본 궁내성 산하 소속 기구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리 대상 도서들을 한국본인지 중국본인지만을 구분하고 일괄하여 '도서'로 정리한 취조국이나 참사관분실의 방식보다는 왕실 내지 구 황실의 전통, 그리고 해당 자료가 담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26] 이왕직은 궁내에 산재되어 있을 만한 다른 자료들을 조사하고 추가로 수집하는 작업을 했다.[27] 매우 복합하게 되어있던 영조어제의 정리도 이왕직에서 이루어졌다. 계보의식을 중시했던 고종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28]

다음으로 적상산사고 소장 자료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적상산사고 소장 자료가 이왕가 소관으로 결정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앞의 실록 기록에 '이왕직 소관으로서 도서실에 소장하게 된 책'들의 언급이 있지만, 이 날짜에 이 도서들이 모두 이왕직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의 일자는 6월 19일이지만 첫 문장인 "前 奎章閣 소관 圖書 일체를 取調局에 인계하였다"는 것도 6월 1일자로 처리된 일이다.[29] 순종 승하 후에 편찬되었다고 하는 실록의 특성상, 어떤 일자에 기록된 내용이라도 해당 일자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부연설명으로서 반영하였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실제로 적상산사고 소장 자료들을 이왕가 소관으로 하는 일은 취조국으로의 도서 및 기록류 인계가 있을 당시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

---

26) 이는 '존재하는 이왕'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였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것으로, 참사관분실의 경우와 대척을 이루는 지점이다.

27) 千惠鳳, 1996 앞의 글, 29-30면.

28) 고종의 계보 의식 표방과 관련해서는 서진교, 2001「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숭사업과 황제권 강화의 사상적 기초」『한국근현대사연구』 19; 이민아, 2021「고종대 궁궐 儀禮空間 정비의 지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한국문화』95 등이 참고가 된다.

29)『圖書關係書類綴』1911년 6월 15일 調發 제220호.

인다. 앞의 『도서관계서류철』 소재 「조선도서 정리에 관한 건」에서는 전라북도 무주사고, 즉 적상산사고 소장본을 취조국에 인계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30] 또한 인계가 있었던 6월 이후의 시점에 어느 사고 소장본을 이왕직으로 보낼지 논의가 오간 것이 취조국의 서류철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도서 및 기록류 인계 시기를 전후하여 지방사고 소장본들의 경우 대체로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족산사고 소장본과 북한산행궁 소장본 중 중복본을 이왕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안하는 조회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명의로 발송되었다.

(가) 朝乙發 제5594호 調受 제245호 明治 44년(1911) 6월 26일 제218호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
취조국 장관 이시즈카 에이조님

사고 도서 返却에 관한 조회

본년 4월 28일부 朝乙發 제3825호를 통해 원 강화사고 장치 서적을 인계하게 되어 이왕직으로부터 원 궁내부 규장각 도서 전부를 인계하는바, 금번 원 양주사고 장치 도서는 융희 3년 4월 원 궁내부에서 이를 규장각으로 옮기고 그대로 귀국에 인계했다는 취지로 이왕직으로부터 통지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응당 위 두 사고의 도서 중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조사한 후에 중복되는 분은 반납했으면 하여 이와 같이 조회하는 바입니다.
또한, 참고를 위해 '원 규장각 도서 목록'을 확인하고자 하니 그 사본 1부를 회부했으면 합니다.

明治 44년(1911) 6월 24일[31]

30) 『圖書關係書類綴』,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31)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6월 24일 朝乙發 제5594호, 「史庫圖書返却方照會」, 政務總監 山縣伊三郎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나) 明治 44년(1911) 9월 26일 기안 明治 44년(1911) 9월 30일 시행
調發 제310호 明治 44년(1911) 9월 30일

사고 도서 返却에 관한 건

장관(이시즈카 에이조)
정무총감 앞

본년 6월 24일 朝乙發 제5594호로 도서를 반납하도록 조회가 있었으나, 원래 북한산 장치의 ("양주사고"라고 朱書로 부기됨 -필자 주) 서적은 일찍이 원 궁내부 도서과에서 규장각으로 이전하여 타 도서와 함께 정리한 것을 본국에서 규장각 도서와 함께 인계를 마친 것으로서, 과연 어느 서적이 북한산의 서적이었는지 용이하게 이를 분별하기 어려워,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당국에서 보관하도록 헤아려주셨으면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회답을 드립니다.

나아가, 규장각 서적 목록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편찬 중으로, 餘部가 없는 바 송부하기 어렵습니다.[32]

'중복되는 분을 보낸다'는 취지로 미루어 이때는 아직 적상산사고 소장본을 넘기는 결정이 있기 전이라 생각된다.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조회는, 경복궁 경성전에 옮겨져 있던 '원 강화사고 장치 서적' 즉 정족산사고 소장본과, 1909년 4월에 규장각으로 옮긴 북한산행궁 도서 모두 인계가 완료되었는데 중복되는 분이 있을 것이니 조사한 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 『도서관계서류철』은 취조국에서 편철했기 때문에 정무총감과 취조국 간에 주고 받은 문건은 있지만 정무총감이 이왕직과 주고 받은 문건은 그 사본을 첨부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문서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태도와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그전에 이왕직에서 정무총감에게 '복본이 있을 경우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일이 있기에 정무총감이 이러한 조회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32)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9월 30일 調發 제310호, 「史庫圖書返却方ニ關スル件」, 長官(石塚英藏) → 政務總監.

이 조회와 관련하여 취조국 장관은 북한산행궁 소장본은 일찍이 규장각 도서과에서 타 도서와 함께 정리한 상태로 인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조국에서 그대로 보관하겠다고 답했다.[33] 이 답신의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산행궁 도서는 제실도서로 이미 다른 도서들과 합쳐졌다 하더라도, 정족산사고본 도서는 아직 그렇지 않았으며 강점 이후 1911년 4월까지도 경복궁에 따로 보관되고 있었다. 정족산사고의 도서 목록을 토대로 구 도서과 도서 중에 복본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이왕직으로 보내는 일은 가능한 작업이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응할 의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무총감은 '원 규장각 도서'의 현황을 참고하기 위해 도서 목록 사본을 회신과 함께 보내주기를 요청했지만, 취조국 장관은 목록을 편찬 중이어서 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미 서고 안에서 보관되고 있던 북한산행궁 도서와 경복궁 내에서 인계받은 정족산사고 소장본 모두 이왕가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대신 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의 지방사고 중 하나인 적상산사고 소장본을 이왕가의 소관으로 하는 결정이 어느 시점을 기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 도서실의 일종의 도서 등록원부인 『조판재산목록』, 『당판재산목록』에는 구입연월일과 적요란이 있어 각기 입수의 시기와 입수의 경위를 알 수 있다.[34] 『조판재산목록』에 따르면, 적요란에 '茂朱史庫所藏書籍'이라는 기재가 보이는 적상산사고 소장 도서들의 '구입 연월일'란에 1914년 3월 3일이라는 날짜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날짜가 소위 '기증'이라는 결정으로 서류상으로 이관이 이루어진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결정은 그 전에 있었고 실제 책을 이송해 온 것이 이 시기임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의 장서들이 서울로 옮겨

33) 위의 자료.

34) 『조판재산목록』(K2-4664)과 『당판재산목록』(K2-4639)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이른 것은 1910년 4월, 가장 늦은 것은 1915년이다. 도서들이 입수될 경우 추가로 기재하였고,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말소로 처리했는데, 봉모당으로 옮긴 것도 말소로 처리하고 있어 왕실자료와 일반자료를 구별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는 시기가 1914년 11월경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적상산사고 소장 도서들도 비슷한 시기에 창덕궁 내 이왕직 도서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추원 조사자료에서 '明治 44년(1911) 赤裳山 史庫 도서 5,519책이 다시 한번 李王家에 기증되었고'라고 시점을 밝히고 있는 점을 신뢰한다면 서류상으로 이왕가 관리로 돌려받은 것이 1911년, 실물이 옮겨져 들어온 것이 1914년 3월 3일일 가능성이 있다.[35)]

아울러 적상산사고에서 옮겨진 자료들에는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그림 2). 적상산

宣廟寶鑑卷之一
宣祖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
熙運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
明宗大王二十二年丁卯六月二十八日辛亥
明宗大王薨于景福宮之 寢殿前二十七日
上疾猝重日午尤篤時右議政權轍朝京大臣
只有領議政李浚慶左議政李奠及藥房都
提調沈通源三人而已右承旨尹斗壽手書
宋朝文彦博入宿禁中故事示李浚慶浚慶
入宿 闕內夜半大漸

<그림 2> 적상산사고 도서에 날인된 장서인
『宣廟寶鑑』(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59)

35)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사고는 본래 조선(대한제국)의 사고였으며 순종대에는 궁내부 규장각 기록과 소관 사무로 지방사고가 포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에서는 장서인에 '기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적상산사고 소장본이 구 궁내부 사무를 승계한 이왕직 소관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접수를 거쳐 조선총독부가 이왕가로 기증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끝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새로 구입한 서적 3,528冊'이란, 이왕직이 창설되는 시점이 1911년 2월인 만큼 이왕직 서무과 도서계에서 구입한 책에 관해서는 이왕직에서 관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서각 소장 일부 도서의 인기(印記)와 『조판재산목록』, 『당판재산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당시 이왕가의 관할로 인정되었던 '신규 구입 도서'의 시기적 범위는 1911년 2월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인 순종대 규장각 도서과 시기의 일부까지 약간 더 소급되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현재 장서각에는 약 87종의 '帝室圖書之章' 날인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실도서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 도서과 소관의 제실도서 일체를 취조국으로 보내게 하고 그중 이왕직에서 요청했던 집옥재 및 시강원 도서를 이왕가의 관할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帝室圖書之章' 날인 도서들이 장서각에 소장되게 된 경로가 궁금하다. 그런데 이 '帝室圖書之章' 날인 장서각 도서들을 그 표지의 도서명과 책수를 토대로 재산목록에서 찾으면 거의 대부분이 실려있으며, 모두 1910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구입한 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36] 이왕직에서는 앞서 도서과 신규 구입분을 취조국으로 인계할 도서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37] 당시 취조국에서는 '도서과에서 새로이 구입한 서적은 본래 이왕가의 사유

36) 이것은 본고의 후단에 <부록 3-1>로 정리해두었다. 한편 약 87종으로 파악한 '제실도서지장' 중에는 일본도서가 29종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판재산목록』이나 『당판재산목록』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석은 58종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37)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2월 4일, 李王職長官子爵 閔丙奭 → 政務總監 山縣伊三郎.

로 인정할 성질이 아니'라며 동의하지 않았다.[38] 그러나 실제로는 1910년 3월에서 8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구입한 도서에 한해서는 이왕가의 관할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39] 이 도서들에는 '제실도서지장'이 날인되었고, 특정 시점까지 종친부 서고에 보관되고 있다가 일련의 결정 과정을 거쳐 이왕가로 보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일부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된 도서들이 장서각에 소장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순종실록』에 기록된 것 외에 취조국 또는 참사관분실(혹은 학무과분실)에서 이왕가로 추가로 넘긴 도서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圖書關係書類綴』 소재의 1911년 6월 20일자 기안 문서를 보면, "서적 정리 방침은 아래와 같이 할지"라고 하여 안을 세운 것이 확인된다. 주임인(主任印)과 주관인(主管印), 장관인(長官印)까지 날인이 완료되어 있고, 내용의 수정이 있을 때 줄만 그어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직원이 날인하여 함부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 또 이 서류철에 최종적으로 합철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실제로 적용된 방침일 가능성이 크다. 취조국은 1년 만에 폐지되고 총독관방 참사관분실로 그 사무가 인계되는데, 사무를 인계받은 참사관분실에서는 취조국이 남긴 이 서류철을 통해 취조국 당시에 세운 정리 방침의 내용을 파악했을 것이다. 여기서 아래의 7번 조항을 살펴보면,

> 7. 이왕직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서적 중 다수의 여부가 있는 것은 이를 別庫에 존치하여 둘 것. (별고에 존치하여 다음에 "타일 이왕직에 증여할 준비를 하여"가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있고 中山의 날인이 되어있음 -필자 주)

라고 되어 있다. 즉 취조국에서는 인계받은 서적 중 부수가 많은 것은 별

---

38)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3월 23일,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長官(石塚) → 政務總監.

39) 다만 이것이 『순종실록』의 기록 중 구 궁내부에서 인수한 공문서 12,615책 내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이왕직에서 새로 구입한 서적 3,528책 내에 포함되었는지는 미상이며 도서목록을 토대로 수치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에 두고 후일에 이왕직으로 증여할 계획이 일시나마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고 여부는 별고에 존치한다고 하는 것에 그치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복본이 있더라도 이왕직에 넘기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다. 같은 서류철에 묶여있는 「사무 개요」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리를 마친 후에는 폐기가 필요한 것도 적지 않을 듯하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나중에 폐기를 하게 되더라도 이왕직으로 넘기는 것에는 다소간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서각 소장 자료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추가로 교부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장서각 소장 『조판재산목록』, 『당판재산목록』을 통해서는 1915년까지 입수가 이루어진 장서각 소장 도서들의 입수 경위와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취조국 또는 참사관분실에서 추가로 교부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경리실(經理室)과 같이 다른 부서로부터 입수한 기록은 보이는데, 이것은 군영자료로서 총독부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1915년이면 참사관분실의 도서 정리가 대체로 마쳐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추가 교부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서 정리 과정에서는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장서인이 날인되었는데 현재 장서각에서 찾아볼 수 있는 '朝鮮總督府圖書之印' 날인 도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40] 조선총독부에서는 그 소관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대한 보관전환 또는 기증이 있을 때 대체로 문건을 남겨두거나 출납부와 같은 자료에 기재를 해두었다. 조선총독부 총무과로의 일본서·양서 보관전환,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의 활자 보관전환의 문건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왕가로 기증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상산사고 소장본 외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

40) 장서각에서 그 인기(印記)에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보이는 것으로는 『西庫藏書錄』(K2-5132)과 『악학궤범』(K3-589) 총 2건이 검색되나 모두 영인본이다(2023년 5월 11일 16시 46분 검색).

제2절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해외 반출 사례

1. 일본으로의 '업무용' 반출

일제가 조선 도서 및 기록류에 관여한 이래 다종 다양의 반출이 있어 왔다. 그중에는 '업무용'을 이유로 들어 기증으로 처리한 것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과정에서 근거 자료들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과 2011년에 걸쳐 대체로 반환이 이루어졌고 관련한 연구도 축적되어 있다. 본 항목에서는 크게 이토 히로부미 도서 반출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반출, 의궤 반출을 범위로 하여 그 내용을 살피고, 이러한 반출이 전체 맥락에서 가졌던 의미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대한제국에 통감부가 설치된 후 제1대 통감으로 1906년 3월부터 1909년 6월 14일까지 재임했다. 이 기간에 이토가 가져간 한국의 고도서로서 이른바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 33부 563책, 이른바 '구 통감부 채수본' 44부 465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책들은 2011년 반환되었다. '구 통감부 채수본'은 그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사고나 시강원, 홍문관, 집옥재, 정부 각 부처 등에 소장되었던 대한제국 소유의 도서였을 가능성이 크지만,[41] 반출 과정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궁내대신이 조선총독에게 이 도서들의 양도를 요청했던 것을 감안할 때,[42] 그 '채수(采收)'란, 구입 등을 통해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하는 처분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또 이것과 관련해 궁내대신이 조선총독에게 공식적으로 양도를 요청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래 구 대한제국 소유의 도서였을 것이 추정된다.

---

41) 이상찬, 2002「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韓國史論』48, 254-259면.

42)『圖書關係書類綴』1911년 5월 22일 朝乙發 제4596호(臨時總務部長官事務取扱 小松綠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調受 제214호)의 첨부문서(1911년 5월 15일 宮內大臣伯爵 渡邊千秋 → 朝鮮總督伯爵 寺內正毅).

한편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알려졌으며,[43]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관련 문건이 2002년에 추가로 지적되었다.[44] 이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과 관련하여 취조국 자료보다 더 이른 시기의 자료가 문서철로 남아있어, 그 내용의 상세히 분석을 통해 반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서각에는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왕직이 설치되기 전까지 도서과 업무와 관계되어 남아있는 문서철들이 남아있는데, 『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은 그중 하나이다.[45] 『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은 도서과 관련 문서철이지만 표지에는 그 엮은 주체가 전 규장각 문사과(文事課)로 되어 있다. 서두에는 이 문서철을 엮어서 남긴 경위가 국한문혼용체로 기재되어 있다. 표제와 서두의 기록으로 미루어 규장각 직원이 후일을 대비하여 남겨두기 위해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

書籍 借渡 事實

隆熙 3년(1909) 7월 13일 일본 궁내대신 비서관 森泰二郎이가 伊藤 太師의 지휘로 도서과 소재 서적 33부 563책을 일본에 공용으로 빌려주게 한바, 그 서적을 수에 맞게 빌려준 후에 森 비서관의 차람증을 영수하고 동년 8월 7일에 도서과장 黑崎美智雄의 의견으로 이 33부 내 別記 9부는 남은 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제외하고 24부는 정리상 필요하므로 신속히 반환할 일로 차관, 대신의 처판을 거쳐 동월 26일에 규장각경 趙同熙 명의로 森 비서관에게 공함을 발송하였으나 회보는 없음.

그 서류는 갖추고 있음.[46]

이에 따르면 도서과 소재 서적 33부 563책을 '일본에 공용으로 빌려주는 일'을 이토 히로부미가 지휘했고, 도서를 반출한 실무자는 일본 궁내대

43) 白麟, 1968「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書誌學』創刊號.
44) 이상찬, 2002 앞의 논문, 235면.
45) 궁내부 편, 『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장서각 소장, K2-4886).
46) 『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 「書籍借渡事實」.

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森泰二郎)이다. 빌려갔다고 하는 시기는 융희 3년, 즉 1909년 7월 13일이다. 1909년의 『職員錄』에 따르면 당시 궁내대신은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로, 그 비서관으로 모리 다이지로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47] 모리 다이지로는 안중근 의사 의거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수행하다가 피격당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職員錄』에는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의 이름 앞에 작은 글씨로 겸직사항을 부기하고 있는데, "圖書寮編修官"이라고 되어있다. 즉 모리 다이지로는 궁내대신 비서관이기도 하면서 도서료(圖書寮) 소속의 편수관이기도 했다.[48]

모리 다이지로의 소속과 직책으로 미루어 궁내성의 편수 목적을 위해 도서들을 가져간 것이 추측이 되지만, 이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먼저 이 서류철의 서류들을 살펴보면, 위에 제시한 서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서들이 대체로 역순으로 엮여있다.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1909년 7월 13일자 일본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가 궁내부 규장각경 조동희에게 제출한 「차람증」이 가장 앞선 일이다.

이 문건은 차람할 도서의 도서명과 책수가 기재되어있는 목록과 이 도서를 차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록은 <표 1>과 같다.

책수는 563책이며, 읍지를 1부로 계산하여 33부가 된다. 목록 다음에는 "열기한 서적을 일본에 공용으로 借渡하려 하고, 일이 마쳐진 후에는 환송할 것이며 만약 그간에 규장각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즉시 돌려주겠다"고 되어 있다. 일자는 융희 3년(1909) 7월 13일, 발신인과 수신인은 각각 일본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森泰二郎)와 궁내부 규장각경 조동희(趙同熙)였다. 서두에서 명기한 7월 13일이라는 일자는 즉 이 차람증의 날짜이다.

---

47) 『(日本)職員錄 明治42年(甲)』, 63면(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8) 도서료의 업무는 관제 개정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당시로서는 '황통보(皇統譜), 황실전범 정본, 조서칙서 및 황실령의 정본 등을 소장, 천황 및 황족 실록의 편수, 도서의 보관 출납, 공문서류 편찬 및 보관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다(위의 직원록 참조).

<표 1> 이토 히로부미 지휘의 모리 다이지로 차람 도서 목록

연번	서명	책수	연번	서명	책수
1	國朝寶鑑	26책	21	忠武全書	8책
2	國朝通紀	10책	22	謨訓輯要	3책
3	辛壬紀年提要	7책	23	邑志 平安	12책
4	寄齋雜記	2책[1권 결]		忠淸	12책
5	芝峯類說	10책		京畿	12책
6	東史補遺	4책		江原	5책
7	林忠愍公實記	3책		全羅	12책
8	麗史	22책		咸鏡	4책
9	麗史提綱	14책		黃海	3책
10	東閣雜記	4책		慶尙	14책
11	祖鑑	11책	24	戊申事績	1책
12	瀋陽日記	9책	25	乙巳定難記	1책
13	敦孝錄	23책	26	癸甲日錄	2책
14	羹墻錄	4책	27	嶺南人物考	7책
15	三忠錄	1책	28	弘齋全書	100책
16	通文館志	5책	29	同文考略	35책
17	弘文館志	1책	30	宋子大全	102책
18	同春年譜	2책	31	尤菴集	60책
19	退溪言行錄	3책	32	增正交隣志	3책
20	李文靖公實記	1책	33	自警編	5책
					합계 33부 563책

*전거:『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借覽證」

이후 1909년 8월 7일, 도서과장 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는 7월 13일에 이토 지휘로 모리 비서관에게 대출했던 도서 중 여러 질이 있는 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통지하고 그밖의 건들은 도서 정리상 필요가 있으니 신속히 돌려달라는 뜻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떤지를 규장각경에게 품의했다.[49]

그리고 8월 11일, 도서과장 구로사키 미치오는 이 일과 관련하여 상의하고자 지바 마사타네(千葉昌胤)에게 서한을 보냈다.[50] 도서과장 구로사키

49)『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1909년 8월 7일,「貸渡圖書에 關흔 通知件」.
50)『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1909년] 8월 11일,“拜啓過般手續中ノ森祕

미치오는 도서과장 명의로 모리 비서관에게 발송하는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규장각경 조동희 또는 궁내부 대신 민병석의 명의로 일본 궁내대신 앞으로 발송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단 궁내부 차관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의 의견도 물어보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51]

8월 17일, 지바 마사타네는 이 문건을 별지 첨부하여 규장각경 조동희에게 참고 후 지휘를 바란다고 품신했으며, 지바가 밝힌 신분은 도서과장 대리였다.[52] 그리고 그 결과 '여질이 있는 건'과 '열람 후 반납할 건'을 각각의 목록으로 만들어 8월 26일자로, 규장각경 조동희의 명의로 모리 다이지로에게 송부했다.[53] 특히 후자의 제목은 '신속히 반납할 건[斯速還交之件]'으로 썼다가 '열람 후 반납할 건[覽後還交之件]'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발송을 준비하면서 작성하고 교정한 실제 안(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납 요청 문건과 각기 목록은 아래와 같다.

書官ニ對する通知する件者正式通知ヲ發スル際ハ閣卿又ハ大臣ノ名ヲ以テ岩倉宮內大臣宛ニ發セラレ度圖書課長ヨリ森祕書官宛ニスル時ハ森祕ニ賜與する意味ニモ解し得ラルベキニ付右御含ノ上一應次官ノ御意見ヲも御尋を被下度　　不備"(탈초는 필자에 의함)

51) 이 문건은 공문서 용지가 이용되지 않았고 가로로 길게 일본어 초서로 작성된 서한이며, 내용적으로도 '拜啓', '不備' 등 전형적인 서한의 투식을 사용하였다. 1909년 당시는 이미 도서과, 그리고 궁내부 내의 곳곳에 일본인이 배치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을 시기로, 당시 도서과 실무가 이와 같이 일본인들 사이의 사신(私信)을 통해 논의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것이 업무 참고를 위한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이 공공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2) 지바 마사타네(千葉昌胤)는 1910년 병합을 전후한 시기까지 종종 도서과장 대리로 문서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圖書關係文書』 1910년 12월 8일 「請求書」 등).

53) 『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한 件』 1909년 8월 26일, 韓國 宮內府奎章閣卿 趙同熙 → 日本國 宮內大臣祕書官 森泰二郎.

지난 번 대여하신 규장각 서적 합계 33부 내 아래 9부는 여질이 있는 것이므로 궁내성에서 열람하도록 두는 것에 여전히 장애가 없지만 그 외의 여러 종은 현재 도서 정리로 인해 필요하니 열람 후 신속히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여 별지를 붙여 요청 드리니 밝게 살피기 바랍니다.

隆熙 3년(1909) 8월 26일

한국 궁내부 규장각경 趙同熙
일본 궁내대신 비서관 森泰二郎 귀하

여질이 있는 건 ……

國朝寶鑑	26책	弘文館志	1책
麗史	22책	通文館志	5책
弘齋全書	100책	退溪言行錄	3책
羹墻錄	4책	林忠愍公實記	3책
謨訓輯要	3책		

열람 후 반납할 건 ……

國朝通紀	10책	乙巳定難記	1책	同春年譜	2책
辛壬紀年提要	7책	邑志	74책	忠武全書	8책
祖鑑	11책	嶺南人物考	7책	三忠錄	1책
戊申事績	1책	同文考略	35책	敦孝錄	23책
瀋陽日記	9책	自警編	5책	李文靖公實記	1책
麗史提綱	14책	增正交隣志	3책	東閣雜記	4책
東史補遺	4책	宋子大全	102책	芝峯類說	10책
癸甲日錄	2책	尤菴集	60책	寄齋雜記	2책 [1결]

즉, 여러 부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경우 계속 열람하도록 두어도 무방하나 그 외에는 도서 정리상 필요가 있으니 반납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던 것이다. 발송 명의는 규장각경 조동희이나 이러한 결정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일본인 직원들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동안 취조국 및 참사관분실에서 취하는 것과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다. 일본 궁내성

이나 총독부 내 다른 부서 등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일단은 반려를 요청하지만, 복본이 여러 질 존재하는 것은 반납이 늦어질 경우 엄하게 독촉하지 않고 보관전환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경의 요청에 관해 1910년 강제병합까지도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54] 이에 전 규장각 문사과에서는 이 서류들을 증빙을 위해 묶어놓았고 이후 이왕직에서 보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이왕직 서무계 도서실에서는 이 미반환 책들과 관련하여 또한 목록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55] 궁내성으로의 차도(借渡) 사실과 그 목록이 덕수궁 내입건(內入件)과 함께 묶여있는 자료이다. 차람인의 "氏名"은 "宮內省"으로 되어있고 여질이 있다고 한 책들과 반납을 요청한 책들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다. 비고란에는 각각 "以上書冊係有餘秩留在貴者供閱尙屬無妨事有公牒", "以上書冊圖書整理上必要者則閱覽後斯速還敎事有公牒"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사용한 어휘나 표현으로 미루어 이왕직 서무계에서 위 문서철『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훈 件』에 수록된 서류들을 참고로 해서 본 문건을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왕직 괘지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직에서 편찬한 것임이 분명하나, 이왕직 도서실의 업무자료가 어떤 경위로 장서각이 아닌 규장각에 소장이 되어 있는지는 미상이다. 여기서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 도서들은, 규장각경 조동희 명의로 반납 요청을 한 문건에서도 확인되듯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열람하여도 된다는 의미였다. 때문에 이왕직에서는 반납 요청 도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시금 목록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11년 5월 15일, 일본 궁내대신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조회가 발송되었다. 수신자는 이왕직이 아닌 조선총독이었다.[56]

---

54)『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훈 件』,「書籍借渡事實」.

55)『圖書室保管書籍中德壽宮內入及宮內省借渡調査表』(규장각 소장, 奎26706).

56)『圖書關係書類綴』1911년 5월 22일 朝乙發 제4596호(臨時總務部長官 事務取扱 小松綠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의 첨부문서(1911년 5월 15일 宮內大臣 伯爵 渡邊千秋 →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별지 목록의 조선 전적은 일찍이 일한관계 사항 조사의 자료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고 伊藤 공작이 한국에서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동 공작 훙거 후에는 당성 도서료에 보관하게 하여 둔바, 도서료에서는 관제상 왕족·공족의 실록 편수의 일도 관장하므로 이들 편수상 필요한 참고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래 제실도서 중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위 전적은 제실도서 중으로 편입시켰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위는 모두 당성으로 양도할 일로 생각해주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으로 조회하는 바입니다.

明治 44년(1911) 5월 15일

궁내대신 백작 渡邊千秋
조선총독 백작 寺內正毅

이 문건의 별지에 도서 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이 33부 563책, "구 통감부 채수본"이 44부 465책이었다. "한국 궁내부 규장각본"이란 위에서 살펴본, 이토 히로부미의 지휘를 받아 모리 비서관이 대출해간 책이었다. 또한 "구 통감부 채수본"이란 구 한국 통감부에서 수집한 책이다. 일본 궁내대신이 말하는 제실도서란 일본 궁내성에서 관리하는 일본 제실도서이다. 일본 궁내성 도서료의 업무중 하나인 왕·공족의 실록 편찬에도 참고가 되고 '제실도서'에 편입하고자 한다며 이 책들을 양도(讓渡)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반환하지 않겠다, 관리의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총독부 임시총무부장관 사무취급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는 5월 22일, 이 궁내대신 조회를 첨부하여 우선 조사한 후에 양도에 지장이 없을지 유무를 회보해달라는 취지로 취조국 장관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에게 보냈다.[57] 이시즈카 에이조는, 양도에 지장이 없는 서적을 일부 명기하고 나머지 서적은 정리가 필요하므로 반려해달라고 궁내성으로 회

57)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5월 23일 朝乙發 제4596호; 이상찬, 2002 앞의 논문, 237-238면.

신해줄 것을 고마쓰 미도리에게 요청했다.

이후로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실제로 서적 반납 등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911년 말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 개요」에 따르면 총독부를 거쳐 이 도서들의 반환을 궁내성으로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다.[58]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르러서야 환수를 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반출이다. 일제는 1913년 10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하였다.[59] 취조국의 도서 정리 문건이 편철된 『圖書關係書類綴』의 서두 「조선 도서 정리에 관한 건」에는 '3. 당분간 봉화사고, 평창사고, 무주사고 소장의 것은 종전과 같이 엄하게 군수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고, 단 경무총감부에서 조회하여 해당 사고의 경비에 주의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60] 지방사고의 도서들이 즉시 옮겨지지 않고 사고에서 보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무주 적상산사고의 도서들은 이왕직 도서실로 옮겨졌으며, 태백산, 오대산사고의 도서들은 1914년 11월에 서울로 옮겨졌다.[61] 이 중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이 그 전년도 10월에 이미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이 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증을 '추동'한 것은 도쿄제국대학 교수 시라토리 구라

---

58) 『圖書關係書類綴』, 「事務概要」.

59) 『朝鮮舊慣 및 制度調査 沿革의 調査 第2冊』에는, "1913년 10월 오대산 사고에 있는 李王家 역대의 실록 439권을 東京帝國大學에 기증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의 439권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필사 과정에서의 오기일 수 있다. 책수는 한국에서 파악하기로는 787책, 도쿄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794책으로 되어있다.
『東京大学総合図書館旧蔵 朝鮮王朝実録画像データベース』, 「資料の解説」
(https://iiif.dl.itc.u-tokyo.ac.jp/repo/s/jitsuroku/page/about)

60) 『圖書關係書類綴』, 「朝鮮圖書整理ニ關スル件」.

61)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大正 3년(1914) 11월에는 태백산, 오대산 양 사고의 도서를 京城으로 옮겼다."

키치(白鳥庫吉)로 알려져 있다. 1913년 여름 휴가 중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실록 1부를 도쿄제국대학으로 이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하며, 데라우치가 이를 허락했다고 한다.[62] 시라토리는 해당 업무를 위해 도쿄제대로부터 출장을 얻어 8월 하순에 경성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실록 절반 정도가 수송되어있었다고 한다. 시라토리는 이것을 도쿄로 수송하게 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주문진항에서 도쿄로 수송되었다고 한다.[63] 그리하여 1913년 11월에 '미려한 대본 787책이 모두 도쿄에 도착해서 도쿄제국대학에 진장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64]

조선왕조실록의 반출은 궁내성으로의 반출의 경우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문부성 소관의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소위 학술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일본 제국대학관제에 따르면 제국대학의 대학 교수들을 임명하고 총장을 감독하는 주체는 문부대신이었다. 일본 궁내성 제실도서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함이 궁내대신의 명의로 조선총독에게 발송되었듯, 만약 당시 실록 기증을 요청하는 문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부대신의 명의로 조선총독에게 발송되었을 것이다.

조선 내에서 총독부 관료들이나 관변학자들은 실록을 자주 참고하였는데, 주로 관습과 제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한 것이었다. 일본 내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주로 조선사와 만몽사 연구의 자료가 되었다. 일본의 시각에서 주변국 역사를 연구하는 일환인 것으로, 편수와 연구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궁내성에서 일본의 천황가의 일부로서 왕공족의 실록을 편찬한다고 하는 것과 큰 틀에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도쿄제대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65] 관동대지진 이후 오대산사고본의 잔존본으로서

---

62) 裵賢淑, 2014「五臺山史庫本 實錄의 還收에 관하여」『東國史學』57.

63) 위의 논문, 153면.

64) 白鳥庫吉, 1914「李朝實錄について」『史學雜誌』25(2), 251면(위의 논문, 153면에서 재인용). 裵賢淑은 책수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65)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잔존본 27책이 경성제국대학으로 돌아왔고, 추

1932년에 27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또 추가로 발견된 것이 2006년에 47책, 2018년에 1책이 돌아와 현재 국내에 총 75책이 소장되고 있다. 환수된 실록의 등록번호 유형이나 장서인의 날인 양상을 볼 때 1923년까지도 도쿄대학 도서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실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66] 또 2018년 국립고궁박물관 구입의 『효종실록』 1책은 2017년에 경매로 나왔던 것을 낙찰받아 2018년에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가능하다면 그 경위에 대한 추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67]

끝으로 궁내성 도서료의 요청에 따라 의궤를 반출한 일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반출한 의궤는 대부분 궁내성 도서료로 보내져 궁내청 서릉부로 이어졌다.[68] 이 의궤들은 2011년 12월 반환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의 제2책에는, 「도서료로 이관한 의궤 목록」이라는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69] 목록에는 도서번호와 의궤의 서명이 인쇄되어 있고 첫 면 우측 하단에 '圖書寮'라는 붉은색 글자가 찍혀 있다. 한편 참사관분실의 도서출납부에도 의궤의 반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70] 도서의 말소가 있을 경우 해당 도서에 줄을 긋고 그 간략한 사유를 비고에 적었다. 의궤는 주로 13000번대에서 14000번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정 의궤들에 '불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도서출납부 제1책의 끝부분에는 또다시 이 목록을

가로 발견된 47책이 20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반환되었다. 이 책들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추가 1책을 경매로 구입하여 총 75책이다.

66) 이상찬, 2013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연구』 31, 499면.

67) 이상찬, 2021 「오대산사고본 조선시대 실록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왕조실록·의궤박물관, 19면.

68) 이 반출 의궤와 관련해서는 앞서 강문식이 문헌자료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강문식, 2011 「일본 宮內廳 소장 儀軌의 현황과 특징」 『奎章閣』 39).

69)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제2책, 「圖書寮へ移管ノ儀軌目錄」.

70) 『[奎章閣]圖書出納簿』(규장각 소장, 奎26798).

기재하고 있는데, 모두 79종이다. 위의 참사관분실 자료와 도서출납부간 79종의 종수가 일치한다. 도서출납부의 해당 목록 비고란에는 “궁내성 도서료로 양도. 大正 11년(1922) 6월 12일자 영수증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71]

이 반출과 관련된 문서 몇 건이 일본에 산재하고 있다. 의궤 반출이 이루어진 것은 1922년의 일이나, 그 관련 교섭은 1920년에 대체로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서는 이왕공실록 편수 업무를 자임하고 있었다. 고종 훙거에 따른 국장이 1913년 3월 거행되었고, 앞서 ‘이희공’ 이재면과 ‘이준공’ 이준용이 각기 1912년, 1917년에 서거한 상황이었다. ‘조선서지학’에 있어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와 함께 그 이름이 거론되는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는 1919년 5월, 일본 궁내성 도서료의 촉탁원이 되어 왕공족실록 편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아사미 린타로는 1919년 『이태왕실록』 편찬에 착수하여 1923년 11월에 편수를 마쳤다.[72] 『이희공실록』의 원고를 1920년 6월 30일, 『이준공실록』의 원고를 10월 31일에 탈고하였다. 『이준공실록』 원고 완성 직전인 10월 14일부터 5일간 경성으로 출장하여 관계기관에 대해 사료 제공의 교섭을 했으며, 그때 그가 『이태왕실록』 편찬에 불가결한 사료로 인식했던 것이 의궤였기 때문에 궁내성 차관을 통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기증의 의뢰를 했다고 한다.[73]

사무단계의 교섭으로는 1920년에 궁내성의 도서두(圖書頭, 도서료의 장)와 조선총독부 참사관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져 있었다.[74] 관련 자료가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에 소장된 「아리가 게이타로 자료(有賀啓太郎資料)」에 수록되어 있다. 아리가 게이타로는 통감부에서 특허국 심사관을 역임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을

---

71) 『[奎章閣]圖書出納簿』(규장각 소장, 奎26798) “宮內省圖書寮ニ讓渡 大正十一年六月十二日附領收證ニ依ル”

72) 永島広紀, 2013「旧宮内省図書寮の朝鮮本蒐集と日韓の文化財問題」『年報朝鮮學』16, 80-81면.

73) 위의 논문, 81면.

74) 위의 논문, 81면.

거쳐 참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직속 상사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 휘하에서 사료 정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75]

조선 도서 무상 양여 의뢰에 대한 회답

大正 9년(1920) 10월 8일 기안

별지[와 같이] 圖書頭로부터 이태왕 및 이왕시대의 의궤류를 무상양여하도록 의뢰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4부 이상 현존하고 사무상 지장이 없는 것은 각 1부를 아래 안으로써 기증할지 판단을 여쭙습니다.

안(案)

조선총독부 참사관

궁내성 圖書頭 앞

본년 9월 18일자 圖普 제192호를 통해 이태왕 및 이왕시대에 있어서의 의궤류를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의뢰하신 취지를 확인하고, 곧 별지 목록과 같이 별도의 철도편을 통해 송부하는바, 살펴 수납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회답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례도감의궤 제13154호 2책, 상호도감의궤 제13407호 1책, 존숭도감의궤 제13451호 1책, 철종대왕부묘도감의궤 제13855호 1책은 이미 귀부로 대출한 것이므로 그대로 留置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서 송부에 요하는 화물 운임 등은 지불하셨으면 하여 덧붙입니다.[76]

---

75) 위의 논문, 81면.

76) 『有賀啓太郎資料(14)』(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소장), 1920년 10월 8일 기안, 「朝鮮圖書無償讓與依賴ニ對スル回答」. 본 문건은 永島広紀, 위의 논문, 81-82면에서 재인용하였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別紙圖書頭ヨリ李太王及李王時代ノ儀軌類無償讓與方依賴有之候ニ付四部以上現存シ事務上差支ナキモノ各一部左案ヲ以テ寄贈相成可然哉仰高裁

案 / 朝鮮總督府參事官 / 宮內省圖書頭宛

本年九月十八日附圖普第一九二號ヲ以テ李太王及李王時代ニ於ケル儀軌類無償讓與方御依賴ノ趣了承卽チ別紙目録ノ通別途鐵道便ヲ以テ送附候條御査收相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1920년 9월 18일,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서는 조선총독부로 공문을 보내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는 고종대 및 순종대 의궤를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사관분실은 '4부 이상 현존하고 사무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선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궁내성 도서료의 청구를 받아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논의의 시점에 4종 5책은 이미 대출이 되어 도쿄로 옮겨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77]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공문에는 또한 1922년 4월 1일에 궁내성 차관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공문을 보내 당시 진행 중이던 왕공족실록 편찬에 의궤가 필요한데 내용을 일일이 필사해오는 것이 어려우니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는 의궤를 무상 양도해 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78]

의궤는 이러한 경위를 거쳐 반출되었으며, 궁내성 도서료는 1922년 5월을 기하여 이관된 의궤를 소장 도서로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79] 앞에서 살펴본 출납부상의 기재 일자 1922년 6월 12일은 영수증의 날짜를 따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제 반출은 그보다 앞서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成度此段及回答候也

追テ嘉禮都監儀軌第一三一五四號二冊、上號都監儀軌第一三四〇七號一冊、尊崇都監儀軌第一三四五一號一冊、哲宗大王祔廟都監儀軌第一三八五五號一冊ハ既ニ貴府ヘ貸付セシモノユヘ其儘御留置相成度候也

尙圖書送附ニ要スル荷造運賃等ハ御支拂相成度申添候也."

77) 그런데 참사관분실의 대출 규정(1916. 6. 19)에 의하면 "京城, 仁川, 水原 이외의 지역에 있는 관서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말고 분실 집무에 차질이 없는 한 그 청구에 응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췌해서 송부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 第1章 朝鮮總督府 取調局, 第3節 圖書ノ整理, 第7目 圖書閱覽及貸出). 그럼에도 일본 도쿄로까지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은 실무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을 보여준다.

78) 강문식, 2011 앞의 논문, 156면.

79) 永島広紀, 2013 앞의 논문, 82면.

당시 궁내성으로 이관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도서 정리로 붙여진 도서 라벨은 그대로 두고 궁내성 분류에 기초하는 라벨을 추가로 부착해 관리했다.[80] 그 궁내성 라벨은 2011년 반환시에 궁내청 서릉부 도서과에서 전부 떼어내, 환수된 의궤들에는 조선총독부 도서 라벨이 남아있고 추가 박리흔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의궤들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궁내성 도서료에서 조선의 왕공족의 실록을 편수하는 사무와 그 근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이렇듯 노력을 쏟았다는 것에는 추가적인 의문이 남는다. 우선 신분의 창설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국이 일제에 강제병합되면서 구 황실 일가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 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황족과 화족으로 나뉘던 귀족계급에 왕족과 공족이 새로이 창설되었다. 명목상으로는 황족 이하, 화족 이상이라는 위치였다. 당시 적용되던 「궁내성 관제」를 살펴보면, 궁내성 도서료에서 관장하는 사무의 하나로 "天皇, 皇族, 王族 및 公族 실록의 편수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실록 편수 사무는 원래부터 도서료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07년 11월 궁내성 관제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때까지는 도서료의 사무로 '제실의 도서기록을 보관하며 황통보·황족첩적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고만 규정되어있다.[81] 1907년 11월 관제 개정으로 사무가 구체화되고 실록 편수 사무가 규정되었으며, 이때에 와서 편수관이라는 직이 생겼다.[82] "天皇, 皇族실록의 편수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인데, 이를 상기해보면 대한제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도서들을 가져간 시기가 대단히 공교롭다. 이 궁내성 관제는 1910년 한국 강제병합으로 왕공족이 생겨났을 때 새로 개정을 하지는 않고 개정 일자는 그대로 쓰면서 실록 편수 사무에 "왕족 및 공족"만을 추가했다.

의궤를 가져간 구체적인 사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서에 '왕공족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선은 그것을 신뢰하는

---

80) 위의 논문.

81) 『法令類纂』 1889년 7월 「宮內省 官制」.

82) 즉 1908년 직원록부터 편수관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편수관 세 명 중 한 사람이 대한제국의 책들을 빌려간 모리 다이지로(森泰二郎)이다. 앞의 내용 참조.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위 '왕공족실록'으로서 『李太王實錄』, 『李熹公實錄』, 『李埈公實錄』의 3종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의문인 점은, 의궤들의 대부분의 고종대의 궁중의 의례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개인 일대기의 성격이 짙은 일본식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데 모두 긴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고종을 대상으로 한 『이태왕실록』의 경우 참고가 될 수 있었겠으나 일대기를 편찬하기 위해 '의궤'를 79종이나 가져간다는 것은 의문스럽다. 궁내성 도서료에서는 강제병합 이전부터 이토 히로부미 사후에 이토 반출 도서들을 넘겨받아 소장하기도 하였다. 그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83]

2.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政務總監)에 의한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로의 반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서출납부』를 통해서는 대략 1917년부터 조선 도서 및 기록류의 반출 사실과 추가로 입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번호순 목록 기장은 1917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그 목록 위에 도서 불출에 따른 말소, 도서의 추가 불입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1922년의 의궤 반출 사실도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제1책의 후단에는 1917년 10월 1일부터 1929년 12월 18일까지 물품 관리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자료를 인수인계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기간 동안 이 장부를 통해 책의 출입 기록을 남기고 그 수를 확인했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의 도서 관리에 관해서는 사후 보고자료보다 직접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1차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장부상에 나타나는 보관전환이나 기증은 앞에서 살펴본 궁내성 도서

8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그들의 '천황실록'을 편찬하거나 자신들의 궁중의 의례를 거행하는 데 참고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1907년 이후, 또 1920년 이후 일본 궁내성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검증해보아야 한다. 궁내청 서릉부는 자체적으로 문고와 문서관을 갖고는 있지만 자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실지조사가 필요하다.

료로의 의궤 반출(1922)이나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의 보관전환(1924), 후술할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으로의 반출(1925), 경성제국대학으로의 보관전환(일부, 연도미상)과 같이 대체로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에서 개인에게 '기증'한 기록도 확인되고 있어 검토를 요한다. 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례는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를 통해 '데라우치문고'로 반출된 사서삼경 중국본 규장각 도서 7종 50책이다. '지나본'을 대상으로 하는『도서출납부』제2책상에는 "政務總監保管轉換"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시 해당 책 목록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에게 기증'했으며 '데라우치 오호문고로 보냈다'고 하였다.[84]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1876~1947)는 야마구치현 출신의 일본 정치인이며,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의 장남,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1929년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되었다.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 정확히는 데라우치의 호를 딴 寺內櫻圃文庫)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전적 등을 이용해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아들인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가 개관한 데라우치 가문의 사설문고이다. 고다마 히데오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이 책들을 '기증받아' 장인의 문고인 데라우치문고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데라우치문고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데라우치 히사이치가 사망하는 등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자 야마구치여자단기대학(현 야마구치현립대학)의 부속도서관으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그 자료가 야마구치현립대학,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 경남대학교(1996년 야마구치현립대학으로부터 기증) 등에 나뉘어 보관되어 오고 있다. 위의 여러 기관의 소장 목록을 조사한 단행본이 출간되어 있어 참고가 되는데,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 소장 목록을 보면 사서삼경 7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 있다.[85] 위에서 살펴본『도서출납부』상의 반

84)『[奎章閣]圖書出納簿』"(寺內櫻圃文庫へ贈)政務總監兒玉秀雄へ寄贈"

85) 伊藤幸司, 2013『寺内正毅ゆかりの図書館 桜圃寺内文庫の研究』, 東京:勉誠出版, 285-286면.

출 도서, 즉 고다마 히데오가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 사서삼경 7종 50책인 것이 분명하다.

출납부상에 남은 기재에서 '보관전환'이라는 표현과 '기증'이라는 표현이 혼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도서의 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을 서류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사후에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라는 표현으로 보면 일단은 고다마 히데오가 정무총감이 된 1929년 이후부터 경성제대로 이관이 완료되는 1930년 사이에 반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28년에서 1930년은 수 차례에 걸쳐 도서 및 기록류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1929년 이후 고다마 히데오가 정무총감일 때 반출한 것이라면 대학 도서관으로 일체 이관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안에 속하는 도서를 개인에게 기증한 것이 된다.[86]

데라우치문고 소장 사서삼경 7종 50책은 이토 고지(伊藤幸司)의 2013년 목록이 작성된 이후 2023년 현재까지 변동 없이 현재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전체 책에 관한 실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모든 책의 내지 첫 면에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櫻圃寺內文庫'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첨지를 붙여 현 소장처의 장서인을 날인하고 "寺內順子氏寄贈"이라고 기재했다(그림 4). 해당 가문에서 "順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찾아보면, 데라우치의 마사타케의 장남인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의 처의 이름이 데라우치 준코(寺內順子)이다. 즉,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자부에 의해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이라고 하는 현 소장처로의 기증이 있었던 것이다.

『周易』의 경우 제1책(수권)과 제12책(권지20-21), 제14책(권지23-24)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에 '帝室圖書之章'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87] 대한제국

86) 시점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다마 히데오는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도서들을 접할 기회는 1929년 이전에도 있었다. 보다 앞선 시점에 불출이 이루어진 후 1928~1930년에 경성제대로의 이관 작업을 하면서 1929년 이후 시점에 도서와 출납부 현황을 점검하던 중, 서류상 정리를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에게 기증'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인 자료를 통한 검토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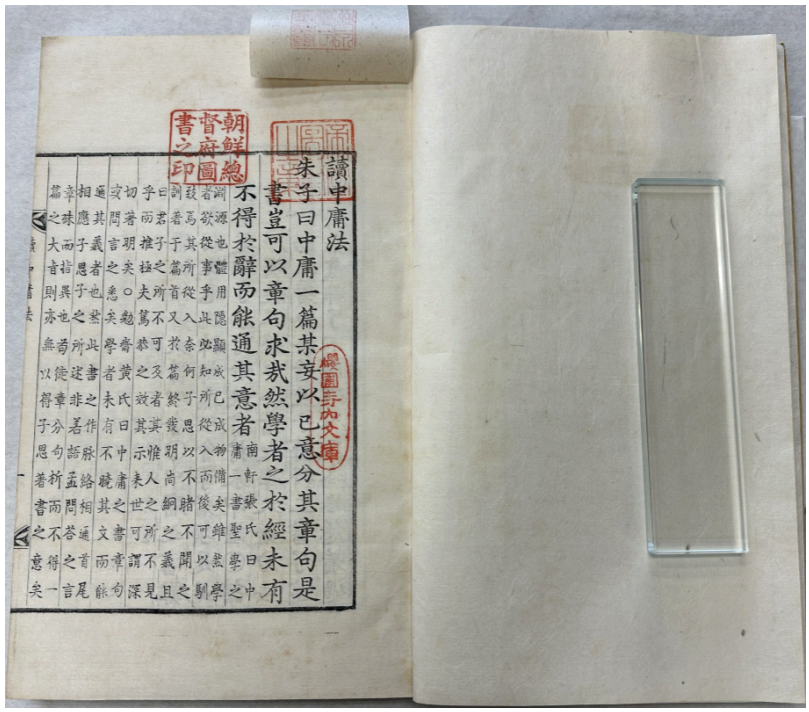

<그림 3>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 소장『中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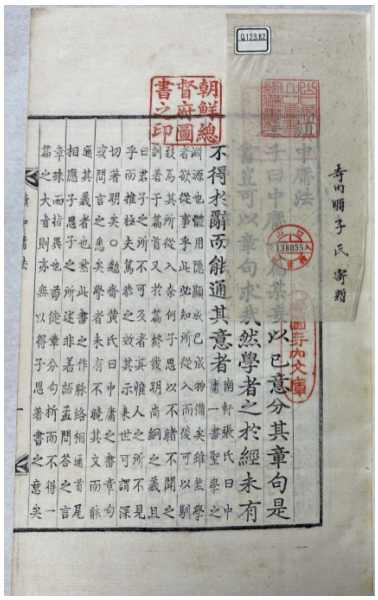

<그림 4>『中庸』의 첨지　　<그림 5>『中庸』의 표지

*소장·촬영협조: 일본 야마구치현립야마구치도서관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에서 날인한 것과 동일한 서체의 장서인으로, 일본의 '帝室圖書之章'이 아니다.[88] 『中庸』에도 '帝室圖書之章'이 함께 날인되어있다(그림 3). 『詩傳』과 『大學』에는 「영조어제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1960년대 문화재 협상 당시에 반환을 요구했던 항목 중 하나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반출'이었다. 문서상으로 '조선총독부의 기증'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문화재에 해당한다. '기증'을 포함한 조선총독부의 행위는 적법유효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한편 일본 내 데라우치문고 관련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문고 내의 도서들의 출처와 관련해 약탈 등 불법행위는 없었고 조선본은 적법한 구입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89] 그런데 일본 연구자들이 이렇듯 데라우치문고 내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기증' 처리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벨기에 뢰번(Leuven)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으로의 기증

『도서출납부』에는 "'루벤' 도서관으로 기증"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록이 38건에 달하여 어떠한 해외 소재 도서관으로 상당한 반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일부 해당 도서번호에 다른 책을 끼워 넣어 다른 책이 그 번호를 갖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결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출납부상의 기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도서들이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그 도서관이 어디에 소재하는 어느 도서관을 말하는지, 어떤 사유로 '기증'을 했다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거나 연구된 바가 없다.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일본어로 "'루벤' 도서관으로 기증"[90]이

87) 24권 합 14책으로, 『周易』(규장각 소장, 奎中12)과 동일한 판본으로 생각된다.

88) 인면(印面)은 제1장 제1절 31면의 각주64를 참조할 것.

89) 渡辺滋, 2021 「近代における朝鮮本の流通: 日本との関わりを中心に」『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 14 등.

90) 출납부에는 간혹 '루벤(ルーヴェン)'이 아닌 '루벨(ルーヴェル)'이라고 쓴 것도

라는 기재가 가리키는 도서관은 벨기에의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이다. 벨기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후술하는 경위로 이 대학은 네덜란드어계와 프랑스어계로 나뉘게 된다. 일문 표기에서 보이는 '루벤(ルーヴェン)'이라는 발음은 영어식 발음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리 전 및 분리 후 네덜란드어계 대학교를 말할 때는 뢰번 가톨릭 대학교 또는 KUL(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이라 쓰고, 분리 후 현재 도서를 소장 중인 프랑스어계 대학교를 말할 때는 루뱅 가톨릭 대학교 또는 UC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이라 쓰고자 함을 밝혀둔다.

KUL은 1425년에 창설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톨릭계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및 독일의 공습으로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수백 년에 걸친 문헌 다수가 소실되었고, 종전 후 벨기에는 세계 각국에 도서의 기증을 호소했다. 1921년에 이와 관련해 일본 내 기부 운동이 발족되었다. 당시 주요 재벌들이 참가한 도서 기증 위원회가 만들어져 현재 가치로 약 12억 엔(당시로 6만 엔)의 기부금이 모아졌고, 그리하여 13,000책을 넘는 일본도서가 기증되었다고 한다.[91]

벨기에에는 복수의 공용어가 있어 대학교들도 네덜란드어계의 대학교와 프랑스어계의 대학교로 분리되었다. KUL 역시 1968~1970년에 프랑스어계 대학교가 분리되어 루뱅 라 뇌브 지역에 프랑스어계 루뱅 가톨릭 대학교(UCL)가 창설되었다. 당시 장서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서도 양 대학 간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일본에서 기증한 도서에 관해서는 그 역사적 가치를

보이는데 어떻게 쓴 것이든 기증과 관련하여 참고하라고 부기된 책과 페이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제2책 48페이지, 제2책 49페이지) 같은 기증건임이 분명하며 '루벨'이라고 쓴 직원이 오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납부의 다른 기록(예를 들면 의궤)의 체재를 생각해볼 때, 기증사실에 동일한 책 및 페이지수를 부기한 것으로 미루어 그 위치에 기증과 관련한 전체목록, 경위 등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장각에 현전하는『도서출납부』자체는 제1책이 '조선본', 제2책이 '지나본'으로 되어있어 이것이 출납부의 제2책을 가리킨 것은 아닌 듯하다. 현재로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91) 이 내용은 재벨기에일본국대사관의「ルーヴェン大学への寄贈日本図書」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https://www.be.emb-japan.go.jp/itpr_ja/lfb_042.html)

감안하여 처음부터 나누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되었다고 한다. 이 도서들은 프랑스어계 UCL에서 전부 보관하기로 정해졌다. 이러한 경위로 일본에서 벨기에로 기증한 도서들은 현재 UCL에서 소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해당 국제사업의 경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뢰번국제사업위원회사업성적보고」(1926년 10월 간행, 이하 「성적보고」)에 따르면, 1923년 7월 27일에 문부성 내 뢰번국제사업위원회(이하 사업위원회)를 열고 사업을 결의, 실행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1일의 관동대지진 및 화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사업이 재개되게 되었다.[92] 그해 연말 궁내성의 하사금 및 남작 스미토모의 기부금을 기초로 하여 1924년 1월 8일부터 우에노공원 도쿄미술학교 문고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증할 도서를 선택하고 구입, 송부하는 등 일체의 사무를 개시했다고 한다.

벨기에로의 도서 발송은 ①1924년 8월 7일 제1회 324부 1,977책, ②1924년 12월 1일 제2회 587부 3,354책, ③1925년 3월 16일 제3회 560부 3,175책, ④1925년 10월 8일 제4회 810부 2,818책, ⑤1926년 3월 9일 제5회 791부 2,194책, ⑥1926년 8월 30일 제6회(최종) 130부 164책 등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93] 「성적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일본에서 뢰번 대학교 도서관으로 기증한 도서는 실로 약 1만 4천 책의 많은 양에 달하며, 그 채집은 주로 우량한 고서에서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는 일본의 고문화를 표징하는 취지에서, 또는 뢰번 대학교 도서관의 자랑이었던 'incunable(희구서 -필자 주)'에 대한 고려로부터 나온 것이다. (...) 이러한(관동대지진 -필자 주) 경우를 당하여 다수의 도서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도쿄에서의 채집이 곤란했기 때문에 주임자가 누차 교토,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출장하여 한정적인 시간 내에 부족한 도서를 보충하기 위해 진력한 노고도 또한 조명되어야 한다. 송부한

92) 이 내용은 대체로 『渋沢栄一伝記資料』(渋沢青淵記念財団竜門社 엮음, 渋沢栄一伝記資料刊行会 간행)의 「ルーヴェン国際事業委員会」 항목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93) 『渋沢栄一伝記資料』 제37권, 387면, 「ルーヴェン国際事業委員会事業成績報告」.

도서의 대다수가 위원회의 선택 구입에 의한 것이지만, 그밖에 궁내성 이하 관공청 및 국내 유지의 기증에 의한 것도 약간 있다. 그중 攝政宮 전하(후의 쇼와텐노)의 뜻에 의해 도서료 소장의 귀중한 복본 수백 책 등을 기증한 것은 특기되어야 한다.[94]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도쿄에서의 도서 수집에 곤란을 겪고 주임자가 출장을 간 곳으로 교토, 오사카, 나라를 들고 있을 뿐, 조선총독부에서 도서를 가지고 왔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참사관분실의 기록에는 '기증'으로 처리를 해두었음에도, "사무소 설치 이래 궁내성 도서료 및 와세다대학으로부터 대부분의 도서 기증이 있었고, 간행물을 기증해온 관공청·학교 등 수 개소가 있다"[95]거나, "궁내성 이하 관공청 및 국내 유지의 기증"[96]이 있었다고 뭉뚱그렸다. 기증자 목록에는 '조선총독부'라는 기재가 보이나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한 구 대한제국 소유의 고도서를 가져갔음을 밝히지는 않아 이것만 보면 총독부의 간행물을 기증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당시 사업위원회와 벨기에 측의 연락 사무를 맡고 있던 일본 외무성에서 편철한 업무 자료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다.[97] 이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뢰번 가톨릭 대학교로 기증된 것이 규장각 소장 『도서출납부』상으로 확인되는 도서들은, 벨기에로의 6차에 걸친 도서 발송 중 제3회차 발송 중 「朝鮮總督府寄贈書」 안에 포함되어 벨기에로 보내졌다(그림 6). 이 「조선총독부기증서」에는 『도서출납부』상의 38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출간물, 특히 조선 통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성격의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목록상에는 일본식 발음이 알파벳으로 병기되어 있다.

---

94) 위의 자료집 제37권, 388면.

95) 위의 자료집 제37권, 386면.

96) 위의 자료집 제37권, 389면, 「ルーヴェン国際事業委員会事業成績報告」.

97) 『白耳義國「ルーヴワン」大學圖書館再興ニ關スル件』 JACAR Ref.B12082010100, 圖書館關係雜件(B-3-10-2-30, 外務省外交史料館), 「朝鮮總督府寄贈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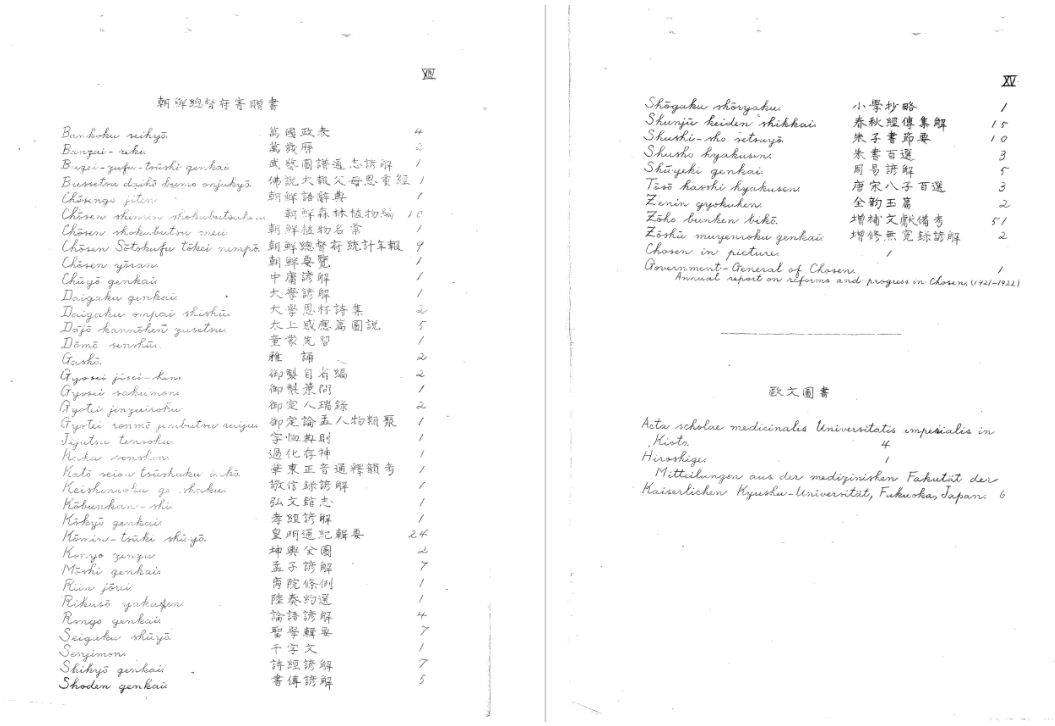

XV

朝鮮總督府寄贈書

Bunkoku seikyō	萬國政教	4
Bunpai-reki	萬政曆	2
Bōgei-zufu-tōishi genkai	武經圖譜通志諺解	1
Bussetsu daibō bonmō gyōkyō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
Chōungo jiten	朝鮮語辭典	1
Chōsen shinrin shokubutsushi	朝鮮森林植物誌	10
Chōsen shokubutsu meii	朝鮮植物名彙	1
Chōsen Sōtokufu tōkei nempō	朝鮮總督府統計年報	9
Chōsen yōran	朝鮮要覽	1
Chūyō genkai	中庸諺解	1
Daigaku genkai	大學諺解	1
Daigaku onpai shishū	大學恩杯詩集	2
Dōjō kannichō zusetsu	太上感應篇圖說	5
Dōmō senshū	童蒙先習	1
Gashō	雅誦	2
Gyosei jissi-kan	御製自省編	2
Gyosei sekinori	御製策問	1
Gyotei jinjurokku	御定人瑞錄	2
Gyotei ronmō jinbutsu ruigu	御定論孟人物類聚	1
Igutsu tenroku	字恂典則	1
Kika sensō	過化存神	1
Kato seiin tsūshaku inshō	華東正音通釋韻考	1
Keishinroku go shoku	敬信錄諺解	1
Kōbunkan-shi	弘文館志	1
Kōkyō genkai	孝經諺解	1
Kōmin-tōkei shiryō	皇明通紀輯要	24
Kongo zenzu	坤輿全圖	2
Mōshi genkai	孟子諺解	7
Rin jōrei	隣院條例	1
Rikusō yakufen	陸奏約選	1
Rongo genkai	論語諺解	4
Seigaku shiryō	聖學輯要	7
Senjimon	千字文	1
Shikyō genkai	詩經諺解	7
Shoden genkai	書傳諺解	5

XV

Shōgaku shōryaku	小學抄略	1
Shunjū keiden shikkai	春秋經傳集解	15
Shushi-sho setsuyō	朱子書節要	10
Shushi hyakusen	朱書百選	3
Shūyeki genkai	周易諺解	5
Tōsō hashi hyakusen	唐宋八子百選	3
Zenin gyokuhen	全韻玉篇	2
Zōho bunken biko	增補文獻備考	51
Zōshū muyenroku genkai	增修無寃錄諺解	2
Chosen in picture	1	
Government-General of Chosen.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1921-1922)		1

歐文圖書

Acta scholae medicinalis Universitatis imperialis in Kioto.	4
Hirohige. Mitteilungen aus der medizinischen Fakultät der Kaiserlichen Kyushu-Universität, Fukuoka, Japan.	1
	6

<그림 6> 벨기에로의「朝鮮總督府寄贈書」

『白耳義國「ルーヴアン」大學圖書館再興ニ關スル件』(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외무성의 문서철에는 우편 발송 사무를 비롯한 잡다한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와의 사이에서 기증을 결정하거나 도서를 정하는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선 도서와 관련 있는 것은 제3회에 수록된 이「조선총독부기증서」목록이 전부이다. 외무성에서 사무 전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측과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목록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록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업위원회와 조선총독부 사이에 업무상 연락하며 생산된 1차 사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뢰번국제사업위원회에서 조선총독부로 조선 고도서 기증을 요청했던 것인지, 아니면 총독부에서 자발적으로 한 일인지는 알기 어렵다. 도서의 선정에 있어서도, 도서들의 면면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경향성이 보

인다. 실제로 어떠한 기준으로 조선의 고도서를 선정하였는가 하는 점을 자료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된 도서들의 세부 서지사항과 위원회 문서철에 함께 수록된 다른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UCL에 소장 중인 일본의 기증 서적 목록은 일본에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어 있다.[98] 대체로 서적 첫 면의 이미지와 간단한 서지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서상으로 조선 도서 38종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이는 반출된 조선 도서들이 적어도 2000년까지는 실제 해당 대학교에 소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99]

목록서상으로 표지만이 실려 있거나 이미지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내지 첫 면의 이미지가 실려 있는 것은 25건이다. 25건 모두에서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확인되며, '集玉齋'(1건), '侍講院' 및 '春坊藏'(2건), '帝室圖書之章'(6건), '奎章之寶'(1건) 등이 함께 확인된다.

UCL에 소장 중인 『論孟人物類聚』은 그 내지 첫 면에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어 있어 이 책이 대한제국기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관리되던 한국의 도서임을 알 수 있다.[100] 정조 때 편찬하여 순조 즉위년에 간행된 어정서이다. 또 뢰번으로 보내진 도서 중에는 경서언해류가 많이 보인다. 『孟子諺解』, 『書傳諺解』의 경우 '侍講院' 및 '春坊藏'이라는 장서인이 확인되고 있어 시강원에서 간직하던 도서임을 알 수 있다.[101] 위의 도서들을 도서출납부에서 확인

---

98) 山崎誠 編, 2000 『ルヴァンラヌーブ大学蔵日本書籍目録』, 東京:勉誠出版. UCL의 '일본 컬렉션(Collection japonaise)' 홈페이지에서는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Accès au catalogue numérisé)를 제공하고 있다. (https://dial.uclouvain.be/digitization/fr/digital-collection/collection-japonaise)

99) 현재 소장 여부와 상세 서지 파악 등을 위해서는 실지조사를 요한다. UCL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지만 2023년 7월 기준으로 소위 '일본 컬렉션' 중에서 원문 열람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그치며 일본 간행의 도서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 山崎誠 編, 앞의 책, 53면.

101) 위의 책, 78·108면.

하면 조선총독부가 붙인 도서번호 기준 각각 5334번, 413번, 440번 도서이다. 현재 규장각 청구기호에 奎5334번, 奎413번, 奎440번이 빠져있는 것은 이 벨기에로의 반출로 인한 것이다.[102]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으로 반출된 조선 도서의 명세는 <부록 3-2>로 제시하였다.

당시에 조선 도서 중에서 기증서를 선별함에 있어 『周易諺解』, 『詩經諺解』, 『中庸諺解』, 『增修無寃錄諺解』를 비롯한 언해본과 『陸奏約選』, 『朱書百選』, 『雅誦』, 『論孟人物類聚』, 『御定人瑞錄』을 비롯한 어정서가 많이 포함된 이유는 사업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해볼 여지가 있다. 당시 「성적보고」에 따르면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은 주로 '우량한 고서'에서 하였고, 이는 '일본의 고문화를 표징하는 취지'와 '뢰번 대학교 도서관의 자랑이었던 희구서에 대한 고려'에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103] 또 외무성 문서철에 따르면 서적 기부에 관해 "기부하는 서적은 주로 '邦文'이었으면 하며, 漢文 또는 歐文의 서적은 일본에서 출판된 것에 한할 것"이라는 방침이 보인다.[104] 또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뢰번국제사업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모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책을 구입하여 기부를 한 것이고, 서적으로 기증을 받아 기부한 것은 일부분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일반적으로 기부할 도서들은 일본 내 구입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책들이었지만 어정서와 언해본은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주로 관 주도로 간행하여 품질이 높은 선본(善本)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과분실 내에 이러한 성격의 도서들이 대체로 복본으로 소장되고 있어 여기서 책을 선정해 기증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

102) 현재 규장각 청구기호이자 옛 조선총독부가 관리를 위해 붙인 도서번호 중에 결번이 있는 이유는 『도서출납부』의 반출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간혹 결번에 새로 입수된 다른 도서로 채우거나 또 몇 책을 묶어서 한꺼번에 번호를 당겨서 새로 매긴 경우도 있으나, 이 세 도서의 경우는 다른 도서로 대체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결번으로 남아있다.

103) 『渋沢栄一伝記資料』 제37권, 388면.

104) 『白耳義國「ルーヴワン」大學圖書館再興ニ關スル件』 JACAR Ref.B12082010100, 圖書館關係雜件(B-3-10-2-30, 外務省外交史料館), 208-209면.

당시 기부 이후에 해당 대학교 총장과 도서관장은 벨기에 주재 일본제국 대사에게 감사장을 보냈고 이것이 「성적보고」에 수록되어 있다.[105]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방대한 도서'의 '기증'을 함으로써 벨기에와 우호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조선 고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증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특별전시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보관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 조선 도서들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 통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책자 몇 가지 등을 부가하여 보냈다(앞의 <그림 6>의 목록 참조). 그중에는 조선총독부 영문 시정연보인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1921-1922)*도 포함되어 있었다.[106] 희구서로 유명한 역사적인 벨기에의 도서관으로 보내는 기증 도서 중에 조선의 유서 있는 도서들과 조선총독부 홍보서를 포함하여 보낸 것은, 일본이 이러한 문화수준을 가진 나라를 그 판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도서 기증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기증'이라는 점에서 고다마 히데오의 데라우치문고로의 반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적법유효성을 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현재 보유한 국가가 제3국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사안이다.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안'이 있으나 아직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관행 측면에서도 반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문화재 반환에 관해 소극적이다.[107]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방안을 모색하던 당시에는 법적 해결보다는 정

105) 『渋沢栄一伝記資料』 제37권, 390면.

106) 영문 시정연보를 통한 조선총독부의 대외선전과 관련해서는 박보영, 2022 「영문 『시정연보』를 통한 조선총독부의 대외선전 전략과 국제사회의 시선」 『한국학논총』 57을 참고할 수 있다.

107) 정민정·유의정, 2010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현안보고서 Vol.62), 국회입법조사처.

부간의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 세 국가가 얽혀있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 사안이 더욱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4. 대한제국 학부도서의 오구라문고(小倉文庫)로의 반출

도쿄대학 문학부 도서실 한적(漢籍)코너에 보관되고 있는 고도서 중에는 언어학연구실 소관의 오구라문고(小倉文庫) 선장본 도서들이 있다.[108] 이는 조선총독부 편수관, 경성제대 교수 및 도쿄제대 문학부 언어학과 교수직을 역임한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가 수집한 장서를 기부하여 조성된 것이다.

오구라문고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이 문고의 특징으로 (1) 조선본을 중심으로 15~20세기에 걸친 한국어학 관련 자료를 골고루 갖춘 것, (2) 한글 자료 및 구결 자료가 가장 많다는 점, (3) 같은 책의 이본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되도록 많은 종류의 이본을 수집한 점, (4) 필사본 중에는 대마도 한국어 통사였던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 기증본이 존재하는 점, (5) 한국 개화기 국문 연구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109] 오구라 신페이가 그만큼 한국어학이나 언어학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오구라문고 장서 중에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정부 부처였던 학부 관련, 즉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등의 장서인이 찍힌 도서들이 존재한다. 오구라문고에 학부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후쿠이 레이(2011)의 연구에 부록으로 실린 오구라문고 도서 목록에는 인기(印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110]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는 오구라문고에 학부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구

108) 오구라문고와 관련해서는 후쿠이 레이, 2011「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중세어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奎章閣』39가 참고가 된다.
109) 위의 논문, 243면.
110) 위의 논문, 257-366면.

라 신페이의 근무 이력과 관련하여 설명되어 있다.[111] 개인이 학부도서를 수집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學部)는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중앙관청으로, 학무아문을 개칭한 것이다. 학무행정을 관장하였고 소속 부서로 대신관방·학무국·편집국 등이 있었다. 이중 편집국은 교과용 도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사항, 도서의 구입·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112] 학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만큼 상당량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었고, 특히 교과서 편집을 주요 사무로 하는 편집국에서는 각 교과 과목과 관련한 도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규장각에 소장된 『학부편집국서책목록』(이하 편집국서책목록)의 존재는 학부 내에서도 편집국의 서책이 비중이 컸음을 보여준다.[113] 편집국서책목록의 편제는, 첫머리의 어제·어필을 제외하고는 경서부, 역사부, 지리부, 천문부, 법률부, 경제부, 수학부, 이화학부 등 신식 학문의 교과목과의 연관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

오구라문고 내 '학부도서'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오구라문고 도서 12종 30책에는 조선 내지 대한제국 중앙 관청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고, 대부분 편집국서책목록상으로 확인이 된다.

---

111)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오구라문고 소개에서는 오구라문고 내 이러한 책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오구라 신페이가 당시 조선총독부 편집국에 근무하며 대한제국 학부에 소장되었던 도서를 정리할 때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http://kostma.korea.ac.kr/ 2023. 8. 4. 12:30 검색).

112) 『官報』 1895. 4. 21. 「學部分課規程」. 이후 학부관제와 학부 분과규정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본 내용에 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113) 『學部編輯局書冊目錄』(규장각 소장, 奎11554).

<표 2> 오구라문고 내 학부도서

연번	서명	책수	청구기호	인기
1	短語	1책	L174788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2	蒙語老乞大	8책	L44543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3	兵將說	1책	L174519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廂庫, 編輯課備付
4	四聲通解	2책	L44535	學部圖書, 廂庫
5	新訂字數	1책	L44709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摛文院
6	字鑑	1책	L175200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7	長語	2책	L174447-8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8	增補三韻通考	1책	L44710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9	陣說	1책	L175206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編輯課備付
10	捷解新語	10책	L175026-35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廂庫
11	華東正音通釋韻考	1책	L174590	學部圖書
12	華東正音通釋韻考	1책	L175106	學部圖書

*전거: 후쿠이 레이, 2011「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중세어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奎章閣』39, 257-366면; 東京大学 OPAC (https://opac.dl.itc.u-tokyo.ac.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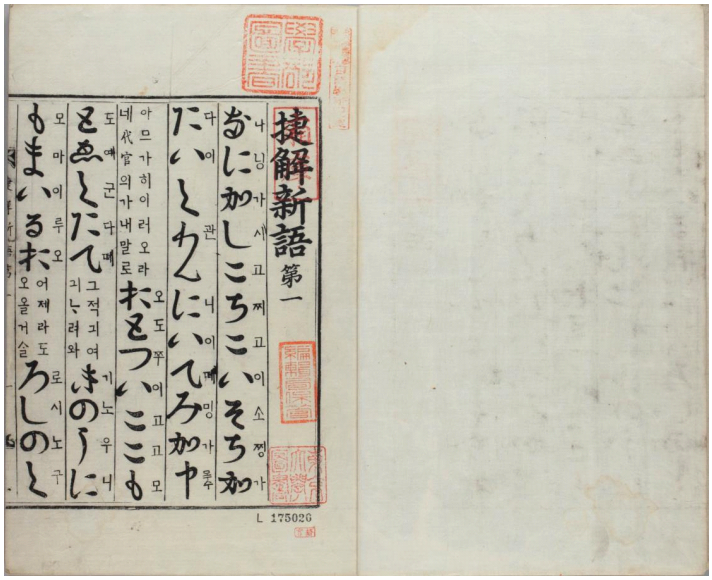

<그림 7> 오구라문고『捷解新語』의 장서인

*현 소장처: 일본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이미지 제공: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편집국서책목록의 자서부(字書部)에서는 『사성통해』와 『자감』, 『신정자수』, 『증보삼운통고』, 총서부(叢書部)에서는 『단어』, 『장어』, 『진설』, 『병장설』, 『첩해신어』 등이 확인된다. 이중 오구라문고본 『신정자수』는 국내에 현존하는 동일 서명의 『신정자수』와는 다른 종류의 자보(字譜)로, 유일본이다.[114]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모습은 <그림 7>과 같다.

개별 도서에 학부 장서인이 확인되는 점, 학부의 편집국서책목록상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도서들은 학부에서 보관된 바 있던 대한제국 정부 소유의 도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 소유의 도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의 대상이 아니므로 오구라 신페이가 이 도서들을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점유하게 된 이 책들을 오구라 신페이가 선의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오구라 신페이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學部圖書' 장서인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구라 신페이는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속·편수서기(판임관) 겸임으로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그가 맡은 직무는 교과서 편수 및 검정이었다.[115]

대한제국기 내각 각 부서의 도서 및 기록류는 강제병합 후 총독부의 각 부서에서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 도서들은 강점 직후 총독부 학무국에 보관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취조국에서는 1911년 5월 18일자로 '학부 대여 규장각 도서 반환'을 총독부 학무국에 요청했다. 오구라 신페이가 학무국 직원으로 부임한 1911년 5월 시점에는 학부도서들이 총독부 학무국 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무국에서는 취조국 요청에 따라 학부도서들을 인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도서들은 참사관분실에서 도서 정리가 이루어져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외에도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어 있고 도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오구라문고 내

114)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 오구라문고 소장 「신정자수(新訂字數)」 상세서지.

115) 야스다 도시아키, 2020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한국학연구』 59, 12-13면.

위의 12종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경위로 도서 정리에서 누락되고 현재 도쿄대학에서 소장 중이며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학부도서들이 취조국이나 참사관분실로 인계되기 전 1910년대 초반에 반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구라 신페이는 언어학자이면서 특히 일본어학과 한국어학을 연구했다. 「조선에 있어서의 사전의 연혁」(1913, 1914), 「조선에 있어서의 옛날의 일본어학서 첩해신어」(1914)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다.[116] 전체적인 오구라문고 장서의 특징과 같이, 오구라 신페이가 소장했던 학부도서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언어나 문자와 관련된 것이 많다. 그의 연구 주제와 도서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러한 도서들은 그의 개인적인 연구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구라 신페이가 개인적인 동기로 반출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처럼 언어학을 연구하는 본업에서 비롯된 동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밖에도 오구라 신페이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고서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구라문고 도서 중에는 『간이벽온방』 필사본이 있는데, 1935년 당시 경성제국대학에 소장된 '규장각 도서' 중 오대산사고 내사본 『간이벽온방』을 필사한 것이다.[117] 의학 서적이면서도 한글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중세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 때문에 필사를 하여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내용만 필사한 것이 아니라 원본 면지에 기재된 "萬曆四十一年正月 日 內賜辟瘟方一件 五臺山上"이라는 기재와 내사(內賜) 과정을 담당한 우승지의 수결까지 필사했으며, 내지 첫 면의 '宣賜之記'까지 그려넣은 것이 확인된다. 오구라 신페이가 조선 고서 각판본이 지닌 개별적인 특성에 흥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

---

116) 小倉進平, 1913「朝鮮に於ける辭書の沿革」『國學院雜誌』19(12); 1914「朝鮮に於ける辭書の沿革(2)」『國學院雜誌』20(2); 1914「朝鮮に於ける辭書の沿革(3)」『國學院雜誌』 20(3); 1914 「朝鮮に於ける昔時の日本語學書「捷解新語」」『藝文』5(4).

117)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簡易辟瘟方』(奎3199)으로, "萬曆四十一年(1613) 正月日 內賜…五臺山上"의 내사기와 '宣賜之記'가 확인된다. 훈련도감자로 인쇄된 간본이다.

이다.

오구라 신페이의 학부도서 수집 경위와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기증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만일 공식적인 기증에 따른 소장이었다 하더라도 데라우치문고의 7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라는 주체의 기증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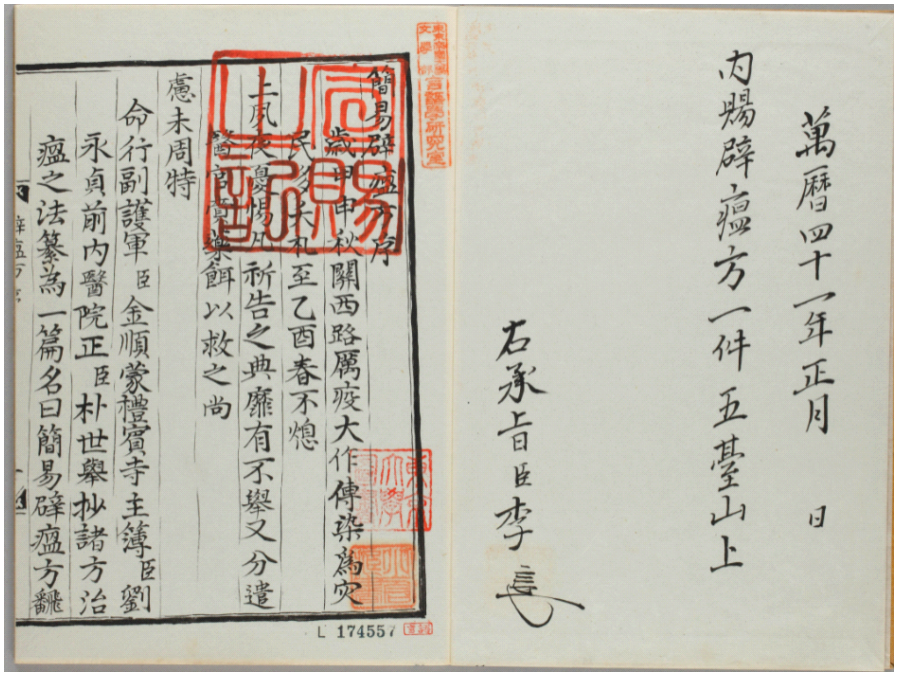

<그림 8> 오구라 신페이 필사본『簡易辟瘟方』

*현 소장처: 일본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이미지 제공: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고유한 특성으로는 목적에 맞는 개별 보관과 이용, 영구 보존 자료의 지방 분산 보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료의 병치(竝置) 경향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에는 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관서의 서고들 그리고 궐 밖에 위치한 행궁이나 각 지방의 사고들에서 개별적으로 도서와 기록류를 소장하고 있었다. 각 관서는 필요한 서적들과 자체적으로 편철한 등록, 공문서철 등을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했다. 특히 홍문관, 시강원이나 정조대 창설되는 규장각 등은 문한(文翰)과 관계된 관서로서 장서량이 많았다.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중앙과 지방 곳곳에 사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도성 바깥에는 정조대에서 병인양요 이전까지는 외규장각, 고종대 후기에는 북한산행궁이 중요한 수장처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각 관서나 서고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되 대체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도서 및 기록류를 서로 구분을 이루는 가운데 같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일제의 관여 이래 일련의 재편을 겪게 되었다.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는 궁내부 속사들이 통폐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부사, 홍문관, 돈녕사의 기능이 규장각에 통합됨으로써 규장각의 기능이 형식상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일제가 궁내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었으며, 궁내부 전체로 보면 인원이 감축되고 그 기능은 위축되었다.

궁내부 산하의 도서 및 기록류의 존재 양상에도 점차 변화가 생겼다. 1907년 2월에는 왕실의 제사를 맡고 있던 1사 7궁을 폐지하고 각 궁사에 있던 문서들을 창덕궁으로 가져와 조사했다. 일제는 황실재정정리 과정에서 황실의 재산 대부분을 국유로 만들었으며, 궁방 관련 문서들은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으로 인계되었다. 1907년 궁내부 관제 개정으로 폐지된 홍문관의 도서는 규장각의 소관이 되었다. 1908년 초에는 궁내부 훈령으로

궁내부 산하의 각 서고를 조사하도록 했다.

1908년 9월 23일, 「규장각 분과 규정」이 제정되어 규장각 아래에 전모과·도서과·기록과·문사과의 네 분과가 설치되었다. 일제가 일본의 궁내성 도서료와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기구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규장각 산하의 각 분과에 의해 궁내부 산하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 아래 각 분과에 종류별로 집결되었다.

전모과에서는 어제·어필, 선첩·선보 등 황실과 관계되는 전모 자료를 관리했다. 전모 자료의 수장(收藏)에 있어 궁궐 내에는 창덕궁 봉모당이 핵심적인 곳이었다면, 궁궐 밖에는 특히 고종 연간 후기에 북한산행궁이 중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1909년 4월에 도서과의 주도로 북한산행궁의 소장 도서 및 기록류를 도서과 서고로 옮겨왔고, 그중 모훈·계보와 관련 있는 전모 자료들은 전모과로 보내졌다. 종류별 분리가 전개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도서과에서 관리한 것은 기록류나 전모 자료을 제외한 순수 서적들이었다.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 시강원, 북한산행궁 내에 있던 도서들 약 10만 책을 모아 '제실도서'로 관리했으며, 인수궁으로 불리던 구 종친부 터의 경근당, 옥첩당, 사성문 좌우행각 등에 서가를 배치하고 도서를 보관했다. 그 목록으로서 『제실도서목록』을 간행했으며, 「제실도서보관규정」과 「제실도서대출규정」을 제정해 운용했다.

기록과의 사무는 공문서류의 편찬·보관·정리·분류에 관한 사항, 윤발·일성록·상주문·의궤·책문 및 족자 등의 상장(尙藏), 사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궁내부 산하에 있던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종 등록류, 의궤류와 각종 공문서류 등이 '궁내부기록'으로서 규장각 기록과 소관으로 보관되었으며, 그 목록으로 『궁내부기록총목록』이 간행되었다.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에 따라 궁내부 각 속사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를 1년 단위로 규장각 기록과로 보내 편찬하게 했으며 「궁내부기록대출규정」을 두어 대출할 수 있게 하였다.

문사과의 사무는 진강(進講)·대찬(代撰)에 관한 사항, 존호 및 시호에 관한 사항, 윤발(綸綍) 및 『일성록』 편찬에 관한 사항, 사책(史冊)의 기초(起

草)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실록자, 한구자를 비롯한 조선시대 활자 수 종이 문사과에서 보관되었다.

이렇듯 궁내부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가 규장각 산하 각 과로 집결되는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종류별로 4과에서 분리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즈음 제실박물관이 기획되어 개관하였듯 도서와 관련해서는 제실도서관의 개관이 기획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개관하지 않았고,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도서 및 기록류의 관리기구인 규장각이 폐지되고 자료만 남았다.

일제는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구 궁내부의 사무를 당분간 구 궁내부 잔무취급직으로서 처리하도록 명했다. 왕족과 공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이왕직이 1911년 2월 1일자로 창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구 궁내부 규장각 소관의 도서 및 기록류 일체를 취조국으로 넘기도록 했고, 이왕직 관할로 남겨진 일부를 제외하고 1911년 6월을 기해 인계되었다. 순종대 규장각 산하로 모여있던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강점 이후 약 5개월간 궁내부 잔무취급직에 의해, 그리고 약 4개월간 이왕직에 의해 관리되다가 조선총독부 취조국에 강제접수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과 취조국 폐지 후 그 사무를 이어받은 참사관실은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 조선 도서 및 기록류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이나 문서관의 개관과 같이 그 지식·정보를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조사기구인 취조국·참사관실 전용의 자료로 만들었으며, 총독부 총무과에서 관리되던 여타 '조선총독부도서'와는 다른 도서 분류법을 적용하고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취조국에서는 도서과 서고로 쓰이고 있던 구 종친부 부지의 각 서고에 도서 및 기록류를 장치(藏置)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도서와 기록, 문서철, 첩 등 종류를 불문하고 일괄 '도서'로 취급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했고 목록과 해제를 작성했다. 총독부 각 부서에서는 식민 통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참고하고 활용했으며 조사기구에서 만든 목록과 해제는 그 활용을 원활하

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 취조국·참사관분실 자체로도 본연의 구관제도 조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의 발췌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작성했다. 취조국·참사관분실 서고는 당시 속칭 '규장각'으로 칭해지고 있었는데,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곳에 소장된 자료들이 소개되고 활용되었다.

한편 서류상으로 이관이 되었던 오대산사고·태백산사고의 도서 및 기록류가 1914년 11월에 경성으로 이송되어 서고에서 합쳐 정리되었다. 조선 초부터 이어져 오던 분산 보관의 원칙과 장점은 1909년 북한산행궁과 정족산사고가 운영되지 않게 되면서 훼손되었고 이 시점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참사관분실에서는 서양서, 일본서, 활자, 판목 등은 모두 타 부서나 타 기관으로 보관전환하고 '조선'과 '지나'의 '고서'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한편으로는 19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 계획을 개시하여 각 지로부터 고도서, 금석문 탁본, 관청 소장 기록류들을 수집하거나 접수했다. 또 대한제국기에 궁내부가 아닌 내각 각 부서에서 보관하던 도서 및 기록류는 강제병합 이후에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도서로 편입되었다. 이른 시기에 합쳐진 것은 1915년 도서 대장 자료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늦게는 1920년과 1923년에 양안류, 전답 성책, 사법·외교 관련 등 다량의 기록물이 일괄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총독부의 자료 활용의 목적은 점차 '역사 편수'에로 그 비중이 옮아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중추원 관제 개정으로 구관제도조사 사무를 중추원으로 이관하였고 조선반도사 편찬 사무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추원에서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활발히 이용하게 되었다. 1922년 12월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자료집으로서의 조선사 편찬이 추진되었고, 통사인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은 별도로 이어지다가 미완결로 종료되었다. 그간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참사관실 소관으로서 참사관분실 내에서 관리되었으나, 1922년 11월을 기하여 학무국의 소관으로 옮겨져 이 서고는 '학무과분실'이 되었는데, 이러한 학무국으로의 이관은 총독부에서 도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자평하는 단계가 되었던 것

을 시사하며 이 자료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이 구관제도조사에서 역사 편수로 옮아가는 것도 그 이관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학무국 산하 공공도서관으로서 조선총독부도서관 설치를 추진하여 1925년에 개관하였다. 조선에 설립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사상통제와 일제의 홍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학무국 산하의 도서관을 개관하면서도 학무과분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도서 일체를 활용하여 개관하지 않았다. 대신 학무과분실의 1,700여 책을 포함한 조선총독부도서 1만여 책을 보관전환한 것이 총독부도서관 개관시 기초장서의 83% 남짓을 점했다. 학무과분실의 16만여 책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면서 지식·정보의 독점이라는 전근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의 도서 및 기록류를 근대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없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 도서·기록류를 분리·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시대 도서 및 기록류 중 일부는 이왕직 관할로 분리되어 '장서각도서'를 이루었다. 또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라는 특수관권에 의해 수 차례 반출이 이루어진 것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의 고유한 문화와 맥락과 논리 속에서 생산되고 보관되어왔던 도서 및 기록류가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해체되어갔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왕직 소관이 된 자료로는 무주 적상산사고 도서 및 기록류와 봉모당에 보관되고 있던 전모 자료, 구 도서과에서 신규 구입한 책 등이 있었다. 그밖에 창덕궁에서 보관되던 자료들 중 조선총독부에서 접수하지 않은 것들을 이왕직에서 관리했다. 이왕직에서는 왕실자료와 일반자료를 분리하여 관리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존재하는 이왕'을 중심으로 한 자료 관리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특수관권에 의해 이루어진 반출 사례들은, 일제의 도서 관련 정책의 주목적이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온전히 보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해체의 측면을 보여준다. 통감부 시기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반출건이나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의 궁내성과 도쿄제국대학으로 소위 '기증'을 명목으로 했던 반출건은

선행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근년까지 환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반출건도 존재한다.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에게 기증하여 데라우치문고에 소장된 도서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고다마 히데오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사위로, 1929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된 인물이다. 규장각 소장의 도서출납부상에는 일부 도서가 고다마 히데오 정무총감에게 기증되었고 데라우치문고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책들은 모두 야마구치 현지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모든 책에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날인되어 있고 일부 책에 '帝室圖書之章'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또한 1920년대 일본이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의 전후 복구 원조로 도서 1만 3천여 책을 기증할 때 그 안에 '조선총독부 기증 도서'를 함께 보냈는데 여기에 당시 학무과분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 도서가 38종 포함되었다. 주로 언해류, 어정서 등의 도서로, 선본(善本) 위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春坊藏'과 '侍講院', '集玉齋', '奎章之寶' 등과 '帝室圖書之章' 등이 날인되어 있는 도서가 확인된다. 여기에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 통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책자 몇 가지가 첨가되어 보내졌다. 이 도서들은 현재도 벨기에 UCL 도서관에 '일본도서 컬렉션'으로서 소장되고 있다.

끝으로 명시적인 기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반출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학부도서를 살펴보았다. 도쿄대학 오구라문고는 오구라 신페이의 장서 기증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그 안에는 조선 및 대한제국의 중앙관청이었던 학부(學部)의 장서인이 날인된 도서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숫자는 12종이다. 학부도서는 강제병합 이후 총독부 학무국에 의해 취조국-참사관분실로 인계되어 현 '규장각도서' 중에서 대체로 확인이 되나, 위의 12종은 알 수 없는 경위로 반출되어 오구라 신페이 장서에 포함되었고 현재 도쿄대학에서 소장되고 있다. 오구라 신페이는 1911년 5월, 총독부 학무국에서의 근무를 시작한 이력이 있는 인물

이며 국가 소유의 도서는 매매의 대상이 아닌 만큼 합법적 취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도서와 기록류를 참고하고 이용하기 위해 한곳에 모았다. 목적은 구관제도조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일제는 여러 식민지들에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한 형적이 확인된다. 당시 일제가 식민지 통치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긴 구관제도조사를 조선 내에서 추진함에 조선 도서 및 기록류는 그만큼 긴요한 자료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취조국과 참사관분실에서는 도서 정리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하게 목록을 만들고 해제를 작성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구 자체로도 이 도서들을 토대로 발췌 조사를 하였고,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서도 이 도서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도서를 찾을 수 있어야 했고, 어떠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관리의 자료 안에는 왕실 및 황실의 상징과 관련한 것이나 옛 정부 관청의 공문서철, 양안, 호적 등의 행정자료가 망라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어야 할 자료들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이 자료들을 한곳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편의의 측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종대 잠시 시도했던 '근대적 분리'는 폐기되었다.

분류의 측면에서도 도서분류법인 사부분류를 변용하여 적용해야 했다. 사부분류는 본래 도서에 관한 분류법이었고, 순수 도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이 자료군에 적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이었다. 이런 불편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의 여타 도서관에서 적용되던 신식의 도서분류법을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통치정책의 자료로 삼기로 하면서,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도서 정리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다양한 성격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도서 및 기록류는 뒤섞여서 합쳐진 상태로 1930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관리는 조선시대의 관리와 대조되는 점이 많다.

조선시대 관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의 양상은 조선시대의 행정이나 정치문화와 관련되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통감부 시기에 궁내부에서 관련 사무를 담당한 아오야기 쓰나타로가 '당시 궁중 사무는 혼란스러웠고 기록과 서적들이 혼잡하게 퇴적되어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방식에 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그렇게 일제는 순종대 규장각 아래에 궁내부 산하의 도서 및 기록류를 모으고, 한편으로는 종류별 분리와 '조사'와 '정리'를 시도했다.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과 함께 규장각이 폐지되고 남은 구 궁내부 소관 도서 및 기록류, 그리고 구 내각, 구 통감부에서 보관하던 조선 도서 및 기록류를 정리하는 사무가 취조국-참사관분실에 주어졌다. 식민지의 구시대에 관한 사료로서 취급하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리와 같을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가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원천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 또 체계성을 결여한 번호 부여, 도서가 아닌 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정리가 이루어진 채로 오늘날로 이어졌다. 모든 건마다 원 소장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질서로 복구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며, 전근대와는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현대에 있어 원래의 질서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난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 개별 도서 및 기록류가 생산되고 보관된 사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수록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한편 일제가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를 식민지화한 후 도서 및 기록류를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하는 것을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 막부나 각 번들의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하는 부분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구 막부의 자료는 철저하게 해체했지만 대한제국 황실은 조선 이왕가로 남겨두고 일부 자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일본 내 각 번들의 자료는 현지 보관이 원칙이었음에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구관제도조사를 위해, 또는

역사편찬을 위해 최대한 수집하는 것을 그 방침으로 하였다. 일본 내 상황과의 차이나 유사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지점들이 있다.

끝으로, 반출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례들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통감부나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특수관권에 의한 도서 또는 기록류 반출의 사례는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해외 소재 문화재가 무단으로 반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매매에 의한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특수관권에 의한 반출인 것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면 그 경위를 규명하고 사후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의 오대산사고본 실록 환수, 2011년 의궤 환수 등 실무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반환' 용어를 쓸 것인지, '기증' 용어를 쓸 것인지 하는 문제가 부상했다. 이러한 사안마다 소환되는 것이 1965년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었으며,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법적 의무로써 반환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 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고, 당시 일본의 문화재 발굴·반출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자발적인 의사로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1] 문화재 문제는 약 1,400점의 문화재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과거사 청산을 상징하는 '반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못한 것이나 인도받은 문화재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에서 실패한 협상으로 지적되었다.[2] 이후 문화재 환수 사안에서 일본 측은 본래 국제법상 의무가 없고 주장하거나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이 이미 있었음을 거론하여 어디까지나 '기증'이라고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것이다. 협정으로부터 한참 후에 궁내청 서릉부 소장 상황이 파악된 이토 히로부미 반출 도서와 같은 사례를 보면 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 문화재의 일본 국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음이 시사된다.

---

1) 엄태봉, 2019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아태연구』 26(2), 200-201면.

2) 위의 논문, 200-201면.

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하는 것은 양국간 문화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일본 정부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는 합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사유(私有)의 것은 더욱이 진행형인 문제인 것이다. 불법 반출이 의심되는 해외 소재 도서와 관해 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과거로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1) 연대기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純宗實錄』

2) 관서지, 법전류 및 규례집

『奎章閣志』,『弘文館志』
『經國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六典條例』
『宮內府規例』

3) 행정 기록 및 문서철 자료

議政府 편,『起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746)
宮內府 편,『訓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5121-2)
內藏院 편,『會計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9113)
經理院 편,『引繼에 關한 目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21653)
帝室會計審査局 편,『宮內府費豫算明細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42)
[宮內府 편],『[1908년 규장각도서정리지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RD00181)
宮內府 편,『文事課日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89)
宮內府 편,『引繼書類』(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917)

宮內府 편,『圖書關係文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87)

宮內府 편,『圖書課 書籍 借渡에 관흔 件』(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86)

統監府 편,『統監府文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朝鮮總督府取調局 편,『圖書關係書類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26764)

[朝鮮總督府取調局 편],『[通牒]』(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017.91 G999t)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 편],『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李王職庶務課 편, 1918『圖書日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11)

『白耳義國「ルーヴワン」大學圖書館再興ニ關スル件』JACAR Ref.B12082010100, 圖書館關係雜件(B-3-10-2-30, 外務省外交史料館)

4) 도서 대장류 및 해제(解題)

※이하 청구기호 머리글자 奎는 규장각, K는 장서각 소장이며 두 경우는 편의상 소장처 표기를 생략함.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서목 및 형지안

『奎章總目』(奎4461)

『西序書目草本』(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25.3)

『西庫藏書錄』(奎7717)

『摛文院書目』(K2-4657),『西庫書目』(K2-4963),『閱古觀書目』(K2-4654)

『奎章閣書目』(奎11670)

『奎章閣書目』(奎11706),『奎章閣書目』(K2-4636)

『集玉齋書籍目錄』(奎11676),『集玉齋目錄外書冊』(奎11703),

『集玉齋書籍調査記』(奎11705)

『春坊藏書總目』(奎11671)

『北漢冊目錄』(奎26740)

『新購入圖書目錄』(奎25265)
『弘文館冊目錄』(K2-4673)
『[정족산사고]實錄曝曬形止案』(1906, 奎9296)
『茂朱赤裳山城列聖實錄曝曬形止案』(1898, K2-3714)

규장각 전모과, 도서과, 기록과 관련

『奉謨堂奉藏書目』(K2-4647), 『奉謨堂後庫奉藏書目』(K2-4648),
『謨堂奉安冊寶印信目錄』(K2-4646)
『帝室圖書目錄』(奎25243)
『[朝板圖書目錄]』(奎26725), 『[唐板圖書目錄]』(奎26771),
『別庫藏置書籍目錄』(奎26790),
『奎章閣圖書課藏書目錄』(K2-4635), 『圖書冊數表』(K2-4643)
『宮內府記錄總目錄』(K2-5130)

취조국-참사관분실-학무과분실 관련

『朝板部別目錄』(奎26742), 『唐板部別目錄』(奎26754)
『引繼圖書目錄』(奎26703)
『五臺山史庫圖書目錄』(奎26736), 『五臺山史庫藏書目錄』(奎26735),
『太白山史庫圖書目錄』(奎26738), 『太白山史庫藏書目錄』(奎26741)
『朝鮮圖書臺帳』(奎26716)
『朝鮮圖書索引簿』(奎26779), 『支那圖書索引簿』(奎26724)
『[奎章閣]圖書出納簿』(奎26798)
『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奎26728)
『奎章閣圖書引繼目錄』(奎26715)

조선총독부 간행서

『朝鮮總督府圖書目錄』(1913·1916,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ㅋ029-0074)
『朝鮮總督府圖書目錄(朝鮮版)』(19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朝鮮總督府圖書目錄』(192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朝鮮總督府圖書目錄』(1924·1927·1930·1934·193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朝鮮圖書解題』(191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朝鮮圖書解題』(193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기타

『朝版財産目錄』(K2-4664), 『唐版財産目錄』(K2-4639)
『圖書室保管書籍中德壽宮內入級宮內省借渡調査表』(奎26706)
『朝鮮總督府圖書館 登錄原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편,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남산도서관 소장)

5) 통감부, 조선총독부 보고 자료

統監府 편, 1908 『韓國施政年報 明治39, 40年』(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第2冊)』(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1938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6) 관보 및 신문류

『(朝鮮國)官報』
『(大韓帝國)官報』
『(日本國)官報』
『(統監府)公報』
『朝鮮總督府官報』
『大韓每日申報』, 『帝國新聞』, 『皇城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7) 지도 및 도면

「仁修宮及畿湖學校外扈衛本營平面圖」, 「仁修宮內敬近堂書棚配置圖」, 「仁修宮內玉牒堂書棚配置圖」, 「仁修宮門左右書棚配置圖」(이상 4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第壹號宮內府廳舍新築平面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RD04513)

『京城府市街圖』(19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京城市街図」(1925, 일본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소장, YG/7/GE141/So)

8) 기타 문헌

李裕元, 『林下筆記』

『(大韓帝國)職員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日本國)職員錄』(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朝鮮総督府及所属官署職員錄』(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9)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2019 『奎章閣圖書藏書印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송병기, 1971-7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大韓民國國會圖書館.

渋沢青淵記念財団竜門社 편, 『渋沢栄一伝記資料』, 渋沢栄一伝記資料刊行会 (https://eiichi.shibusawa.or.jp/denkishiryo/digital/main/)

朝鮮總督府 編, 1931 『朝鮮古蹟圖譜』 11, 朝鮮總督府.

10)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JACAR) (https://www.jacar.go.jp/)

2. 연구 논저

1) 단행본

국내

加藤一夫 외(최석두 옮김), 2009『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아시아에서의 일본 근대 도서관사』, 한울.
國立中央圖書館 편, 1973『國立中央圖書館史』, 國立中央圖書館.
고바야시 히데오(임성모 옮김), 2004『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김문식 외, 2009『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문식 외, 2019『왕실 서고 봉모당의 건립과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문화재청 편, 2004『덕수궁 정관헌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박성진·이승일, 2007『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대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역사비평사.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서울역사편찬원, 2019『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서울역사편찬원.
송승섭, 2019『한국 도서관사: 고대~근·현대시대』, 한국도서관협회.
송승섭 외, 2021『(국립중앙도서관) 사서부일지: 1948년(단기 4281년)』, 도연문고.

옥영정 2020『조선 왕조 존각 봉모당의 자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왕현종, 2019『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 자료: 관습 기초자료·『조선관습제도조사사업개요(번역서)』, 혜안.
이시카와 데쓰야 외(조혜린 외 옮김), 2021『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협력: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한울.
이영미, 2011『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일조각.
이태진, 1990『奎章閣小史』, 서울大學校圖書館.
_____, 2000『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이철원, 1954『王宮史』, 東國文化社.
정긍식, 1992『국역 관습조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정옥자, 1988『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정준영, 2022『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양으로서의 조선, 지향으로서의 동양』, 사회평론아카데미.
천혜봉·윤병태, 1996『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혜주, 2020『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정탐과 출판활동』, 한양대학교출판부.
한영우, 2008『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지식산업사.
헨리 페트로스키(정영목 옮김), 2001『서가에 꽂힌 책』, 지호.

국외

NHK取才班, 2011『朝鮮王朝『儀軌』: 百年の流轉』, 東京:NHK出版.
國立國會圖書館 편, 1979『國立國會圖書館三十年史』, 東京:國立國會圖書館.
大木康, 2009『中国明末のメディア革命ー庶民が本を読む』, 東京:刀水書房.
山崎誠 編, 2000『ルヴァンラヌーブ大学蔵日本書籍目録』, 東京:勉誠出版.
三戸十三 編, 1919『後藤男修養』, 日本書院.
小林英夫, 2006『満鉄調査部の軌跡: 1907-1945』, 東京:藤原書店.
伊藤幸司 편, 2013『寺内正毅ゆかりの図書館桜圃寺内文庫の研究: 文庫解

題・資料目錄・朝鮮古文書解題』, 東京:勉誠出版.
日本図書館文化史研究会　編, 2017 『図書館人物事典』, 東京:日外アソシエーツ.
前間恭作, 1944『古鮮冊譜』, 東洋文庫.
酒井哲哉·松田利彦 편, 2014『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 東京:ゆまに書房.
靑柳南冥, 1922『李朝史大全』, 朝鮮研究會.

2) 연구 논문

국내

강문식, 2012「일본 宮內廳 소장 儀軌의 현황과 특징」『奎章閣』39.
_____, 2015「규장각 西庫의 운영과 서적 관리」『한국문화』70.
_____, 2018「정조 대 봉모당 운영과 장서 관리」『藏書閣』40.
권기석, 2022「정조(正祖) 어정(御定)·명찬서(命撰書)의 인쇄 수량과 보급 정책」『국학연구』49.
권태억, 1994「1904~1910년 일제의 한국침략구상과 '시정개선'」『韓國史論』31.
김문식, 2005「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내용 및 특징」『奎章閣』28.
_____, 2018「18세기 국왕의 왕실자료 편찬과 봉모당」『藏書閣』40.
김선영, 2023「고종대 奎章閣의 궁궐 내 書籍 收藏에 관한 검토」『서울과 역사』114.
김아란, 2023「李王職 博物館 설립 과정에 대한 재검토」『서울과 역사』113.
김태웅, 1994「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奎章閣』16.
_____, 1995「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奎章閣』18.
_____, 2008「日帝强占期 京城帝國大學의 奎章閣 관리와 所藏 資料 활용」『奎章閣』33.
김효경·이혜은, 2013「조선총독부도서관의 안정복 장서 수집과 자료적 특징」『古文書硏究』43.

나가시마 히로키, 2016「2개의 고종실록 편찬을 둘러싼 궁내성·이왕직의 갈등: 아사미 린타로와 오다 쇼고의 역사 서술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64.
남권희, 1983「奎章閣西庫와 그 書目分析」『奎章閣』7.
_____, 2008「「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書誌學硏究』40.
도태현, 2003「"조선도서해제"의 목록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4(2).
류미나, 2009「'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간 문화재 반환 교섭」『일본역사연구』30.
목수현, 2000「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美術史學硏究』227.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19『문화재대관 사적 제1권(증보판)』, 문화재청.
민회수, 2015「일제강점기 규장각 書目의 '記錄類' 형성 과정」『한국문화』70.
_____, 2022「대한제국 말기 學部의 규장각 도서 관리」『奎章閣』61.
박보영, 2022「영문『시정연보』를 통한 조선총독부의 대외선전 전략과 국제사회의 시선」『한국학논총』57.
박현순, 2015「『奎章閣書目』을 통해 본 규장각 장서」『한국문화』70.
_____, 2018「정조대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한국문화』82.
배현숙, 2014「五臺山史庫本 實錄의 還收에 관하여」『東國史學』57.
백 린, 1962「奎章閣 藏書에 對한 硏究: 特히 그 沿革과 藏書內容의 變遷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_____, 1963「奎章閣과 그 藏書의 變遷」『圖協月報』4(4).
_____, 1964「奎章閣 略史」『서울大學校 圖書館報』2.
_____, 1968「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書誌學』創刊號.
서영희, 1990「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韓國史論』23.
_____, 1994「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奎

章閣』17.
_____, 2022「일제 식민사학의『고종실록』 편찬배경과 편찬과정 연구」『사학연구』145.
서진교, 2001「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추숭사업과 황제권 강화의 사상적 기초」『한국근현대사연구』19.
송승섭, 2022「개화기 한국 근대 도서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구보학보』32.
신병주, 2008「조선후기의 기록물 편찬과 관리」『기록학연구』17.
신용하, 1981「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奎章閣』5.
안창모, 2009「종친부 터의 근대적 변화와 근대건축」『종친부 실측조사보고서』, 종로구청.
엄태봉, 2019「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아태연구』26(2)
연갑수, 1994「高宗 初中期(1864~1894) 정치변동과 奎章閣」『奎章閣』17.
옥영정, 1996「擒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研究」『書誌學研究』12.
_____, 2004「장서각 소장 어제류 간본의 서지적 분석」『書誌學研究』29.
_____, 2005「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前期 總集類 書籍과 서지학적 가치」『奎章閣』46.
_____, 2019「「童蒙先習」의 서지적 재검토」『書誌學研究』78.
, 2021「한국 古文獻의 현황과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書誌學研究』87.
윤병태, 1991「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정신문화연구』14(3).
은정태, 2009「고종시대의 경희궁: 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34.
이민아, 2021「고종대 궁궐 儀禮空間 정비의 지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고종대 궁궐 내 현왕 어진봉안처의 변화와 '규장각' 계승」『한국문화』95.

이상찬, 1991「『引繼에 關한 目錄』과 『調査局來去文』의 검토」『書誌學報』6.
_____, 1992「일제침략과「황실재정정리」(1)」『奎章閣』15.
_____, 1995「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역사비평』33.
_____, 1997「규장각 소장 자료의 공문서 분류도장에 대하여」『書誌學報』20.
_____, 2002「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韓國史論』48.
_____, 2005「을사조약이 아니라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이다」『역사비평』73.
_____, 2013「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한국문화』61.
_____, 2013「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자료적 가치」『한국학연구』31.
_____, 2013「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한국근현대사연구』64.
_____, 2021「오대산사고본 조선시대 실록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이승일, 2012「일제 강점기 한국관습조사자료의 소장 현황과 분류·記述: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 자료를 중심으로」『법사학연구』46.
이왕무, 2014「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藏書閣』31.
_____, 2021「李王職 연구: 조직 구성의 배경과 운영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82.
이영학, 2014「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기록학연구』41.
이재두, 2020「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74책의 유래와 특징」『조선시대사학보』94.
이재준·송일기, 2009「藏書閣 所藏 內賜本의 書誌的 硏究」『書誌學報』33.
이재준, 2020「장서각 소장 적상산사고본 연구」『藏書閣』44.
_____, 2021「장서각 도서의 성립 과정과 전래 경위」『藏書閣』46.

이태진, 1996「奎章閣 中國本 圖書와 集玉齋圖書」『民族文化論叢』16.
이행숙, 1982「奎章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혜원, 2008「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史料價値에 대한 연구」『건축역사연구』17(4).
이혜은, 2023「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헌의 장서 관리 현황 분석」『書誌學硏究』93.
이혜정, 2012「「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書誌學硏究』52.
_____, 2019「集玉齋書籍目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집옥재서적목록의 서지적 분석」『書誌學硏究』85.
_____, 2021「집옥재 소장 조선본의 유래와 주제별 분류」『藏書閣』45.
_____, 2023「북한산성 행궁과 「돈녕보첩」의 봉안」『書誌學硏究』93.
장 신, 2016「일제하 이왕직(李王職)의 직제와 인사」『藏書閣』35.
장영숙, 2009「『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한국민족운동사연구』58.
_____, 2012「'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한국근현대사연구』61.
정상우, 2011「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욱재, 2016「日本宮內廳所藏 '公族實錄'의 편찬과 특징」『韓國史學報』64.
정준모, 2003「한국 근·현대미술관사 연구: 국립미술관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모순의 근원을 중심으로」『한국근대미술사학』11.
정준영, 2009「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조계영, 2011「규장각 소장 현판의 역사와 특징」『奎章閣』39.
조은진, 2023「1920년대 관립전문학교 대학 승격 운동의 추이와 성격: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한국문화』101.

천혜봉, 1972「藏書閣의 珍籍」『國學資料』創刊號.
최종민, 1988「「朝鮮書籍 解題」考」,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최혜주, 2000「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來韓활동과 植民統治論」『國史館論叢』94.
_____, 2009「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大東文化研究』66.
_____, 2016「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의 '신일본(조선)' 건설론」『동북아역사논총』54.
한영우, 1997「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國史館論叢』73.
허영란, 2007「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시장조사'를 중심으로」『史學研究』86.
홍문기, 2006「甲午改革 이후 秘書機關의 변천과 君主權」『韓國史論』52.
황정연, 2007「고종연간 집경당(緝敬當)의 운용과 궁중(宮中) 서화수장(書畵收藏)」『문화재』40.
_____, 2008「高宗 年間(1863-1907) 宮中 書畵收藏의 전개와 변모양상」『美術史學研究』259.

국외

宮間純一, 2012「宮内省·宮内府·宮内庁の組織に関する基礎的研究一: 図書寮·書陵部における官制·事務分掌の歴史的変遷」『書陵部紀要』64.
渡辺滋, 2021「近代における朝鮮本の流通: 日本との関わりを中心に」『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14.
鈴木慎太郎, 2013「後藤新平と岡松参太郎による台湾旧慣調査をめぐる評価: 福島正夫論文の検討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法政論集』250.
白石烈, 2020「宮内省図書寮の呼称」『日本歴史』866.
小田省吾, 1936「朝鮮史籍解題講義(1)」『靑丘學叢』23.
永島広紀, 2013「旧宮内省図書寮の朝鮮本蒐集と日韓の文化財問題」『年報

朝鮮學』16.
笠原英彦, 2019 「明治帝室制度の形成と伊藤博文·シュタインの「邂逅」」『法學研究：法律·政治·社会』92(11).
七戸克彦, 2011 「現行民法典を創った人びと（26）組織改編後の委員3·4: 小宮三保松·西源四郎, 外伝21: 閨閥」『法学セミナー』56(6), 日本評論社.

부 록

<부록 1-1> 창덕궁 내 신축 궁내부 청사 제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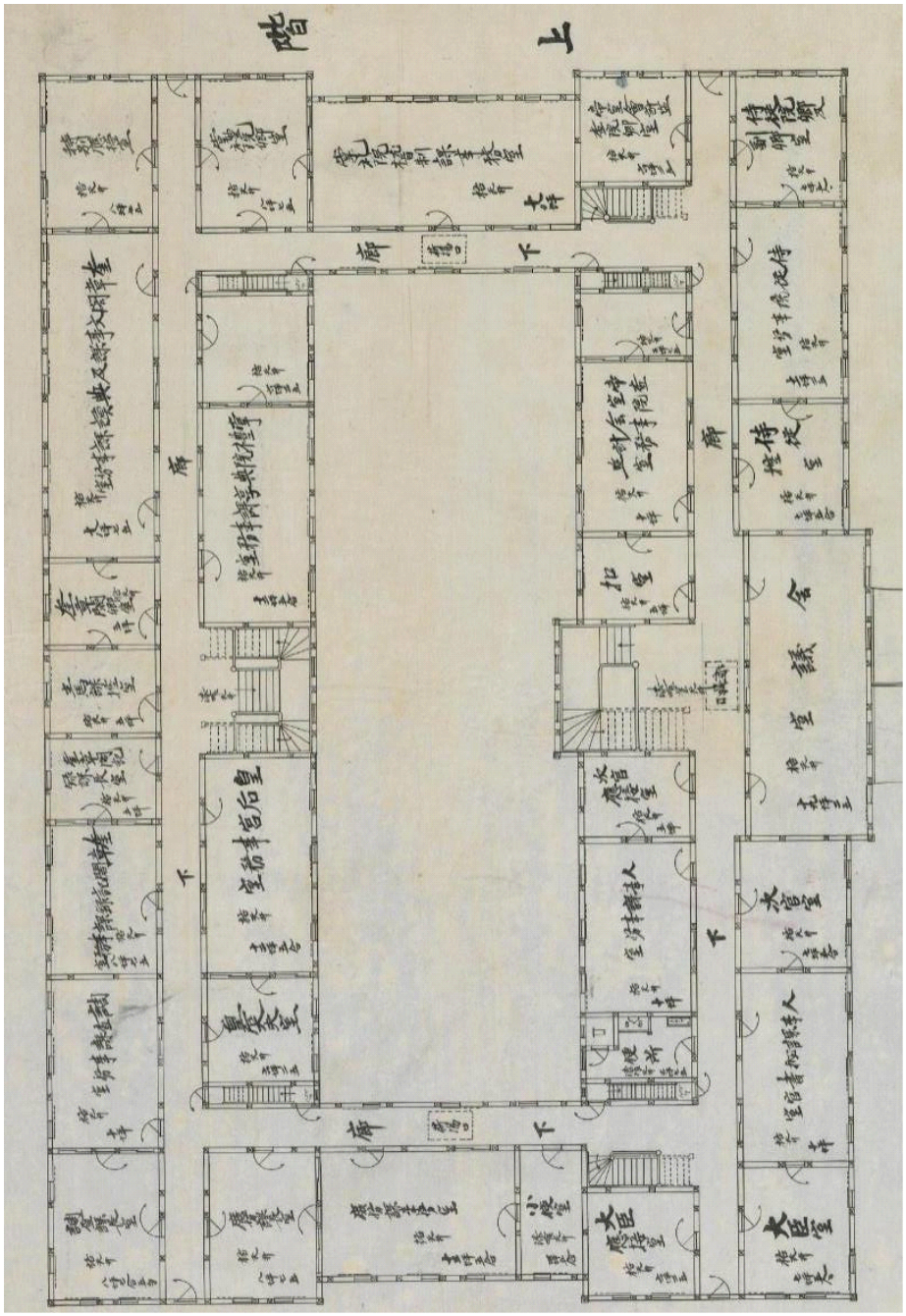

*전거: 「第壹號宮內府廳舍新築平面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RD04513)
*비고: 원자료에는 2층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계상(階上)에 한하여 인용하였음.

<부록 2-1> 1914~1915년 참사관분실 각 서고별 소장 현황

1914년 10월 참사관분실 서고 현황

종별	부수	책수	비고
제1고	4,137	15,437	[조선본]
제2고	6,835	22,848	[조선본]
제3고	2,467	18,041	[지나본]
제4고(階上)	341	9,939	[조선본]
제4고(階下)	2,747	55,181	[지나본]
제5고(의궤) [및 제6고]	1,540	12,832	[조선본]
합계	18,067	124,278	
제8고(호적)		194	
활자		21장	
제5고(판액)			
제7고(판수)			

1915년 12월 참사관분실 서고 현황

서고	지나본		조선본	
	부수	책수	부수	책수
제1고			4,137	15,437
제2고			6,834	22,848
제3고	2,467	18,041		
제4고[階上]			70	9,721
제4고[階下]	4,014	63,886		
제5고			849	1,901
제6고			714	1,149
별고			376	19,176
계	6,041	81,927	12,980	70,232
총계	부수 19,141 책수 152,159			

*출처: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金泰雄, 1995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整理 事業」『奎章閣』 18, 180면에서 재인용)
*비고: [ ] 괄호 안 부기는 상호 비교를 토대로 필자가 추정하여 기재한 것임.
1914년 11월에 태백산, 오대산 양 서고 소장도서가 이송되었음.

<부록 2-2>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의 사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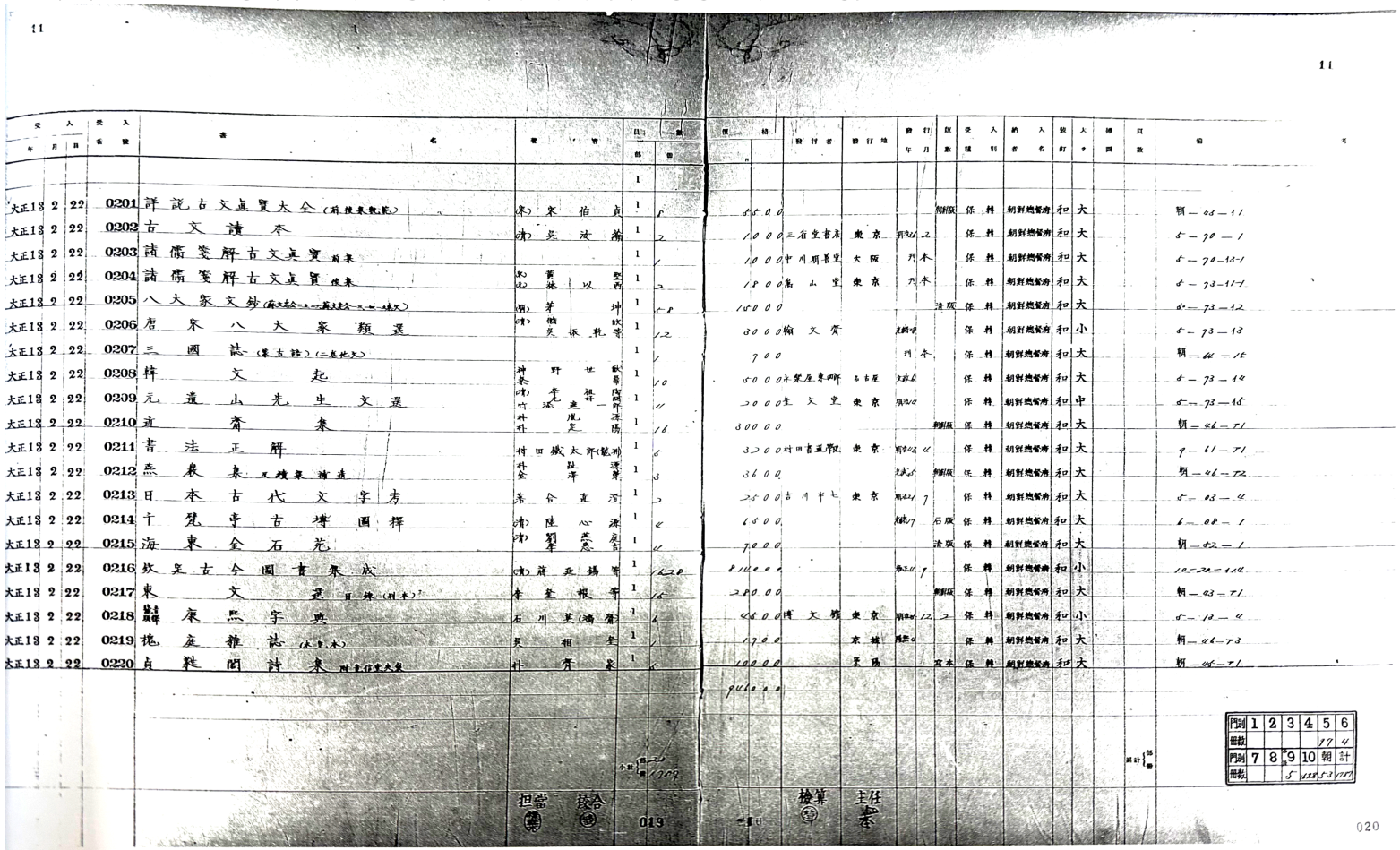

受入年月日	受入番號	書名	著者	部	冊	價格	發行者	發行地	發行年月	版	受入種別	納入者名	裝	大	綴	冊數	備考
大正13 2 22	0201	詳說古文眞寶大全 (前後集飜訳)	(宋) 衆伯貞	1	5	8500				朝鮮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03—11
大正13 2 22	0202	古文讀本	(清) 吳汝綸	1	2	1000	三省堂書店	東京	明治12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70—1
大正13 2 22	0203	諸儒箋解古文眞寶 前集		1	1	1000	中川明善堂	大阪	明本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70—13-1
大正13 2 22	0204	諸儒箋解古文眞寶 後集	(宋) 黃堅 (元) 林以順	1	2	1800	鳥山堂	東京	明本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73—17-1
大正13 2 22	0205	八大家文鈔 (唐宋八大家文鈔 二 唐文)	(明) 茅坤	1	10	18000				清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73—12
大正13 2 22	0206	唐宋八大家類選	(清) 儲欣 張惠言	1	12	3000	榆文堂		明治		保存	朝鮮總督府	和	小			5—73—13
大正13 2 22	0207	三國誌 (第五冊) (二卷缺文)		1	1	700			明本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4—15
大正13 2 22	0208	韓文起	神奈川 野世紀	1	10	5000	六合館	東京	大正6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73—14
大正13 2 22	0209	元遺山先生文選	(清) 李祖陶	1	11	2000	生文堂	東京	明治40		保存	朝鮮總督府	和	中			5—73—15
大正13 2 22	0210	近齋集	宮城 直麿 宮井 定陽	1	16	30000				朝鮮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6—71
大正13 2 22	0211	書法正解	村田藏太郎	1	5	3200	村田書店	東京	明治43	4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9—61—71
大正13 2 22	0212	燕巖集 及續集 諸選	朴趾源 金澤榮	1	3	3600			大正6	朝鮮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6—72
大正13 2 22	0213	日本古代文字考	喜谷直淵	1	2	2600	吉川半七	東京	明治41	7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5—03—4
大正13 2 22	0214	十梵寺古塼圖釋	(清) 陸心源	1	4	6500			大正7	石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6—08—1
大正13 2 22	0215	海東金石苑	(清) 劉喜海	1	4	7000				清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2—1
大正13 2 22	0216	欽定古今圖書集成	(清) 蔣廷錫等	1	1420	810000			昭和7		保存	朝鮮總督府	和	小			10—24—114
大正13 2 22	0217	東文選 目錄 (刊本)	徐居正	1	15	28000				朝鮮版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3—71
大正13 2 22	0218	康熙字典	石川英 (鴻齋)	1	4	4500	博文館	東京	明治40	12	保存	朝鮮總督府	和	小			5—18—4
大正13 2 22	0219	槐庭雜誌 (未完本)	吳相奎	1	1	1700		京城	昭和4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6—73
大正13 2 22	0220	貞蕤閣詩集 附 李仁榮夫人集	朴齊家	1	6	10000		瀋陽		寫本	保存	朝鮮總督府	和	大			朝—46—71
						940000											

門別	1	2	3	4	5	6
冊數				17	4	
門別	7	8	9	10	朝	計
冊數			5	1125.53	1717	

1924.2.22. 조선총독부(총무과)로부터의 보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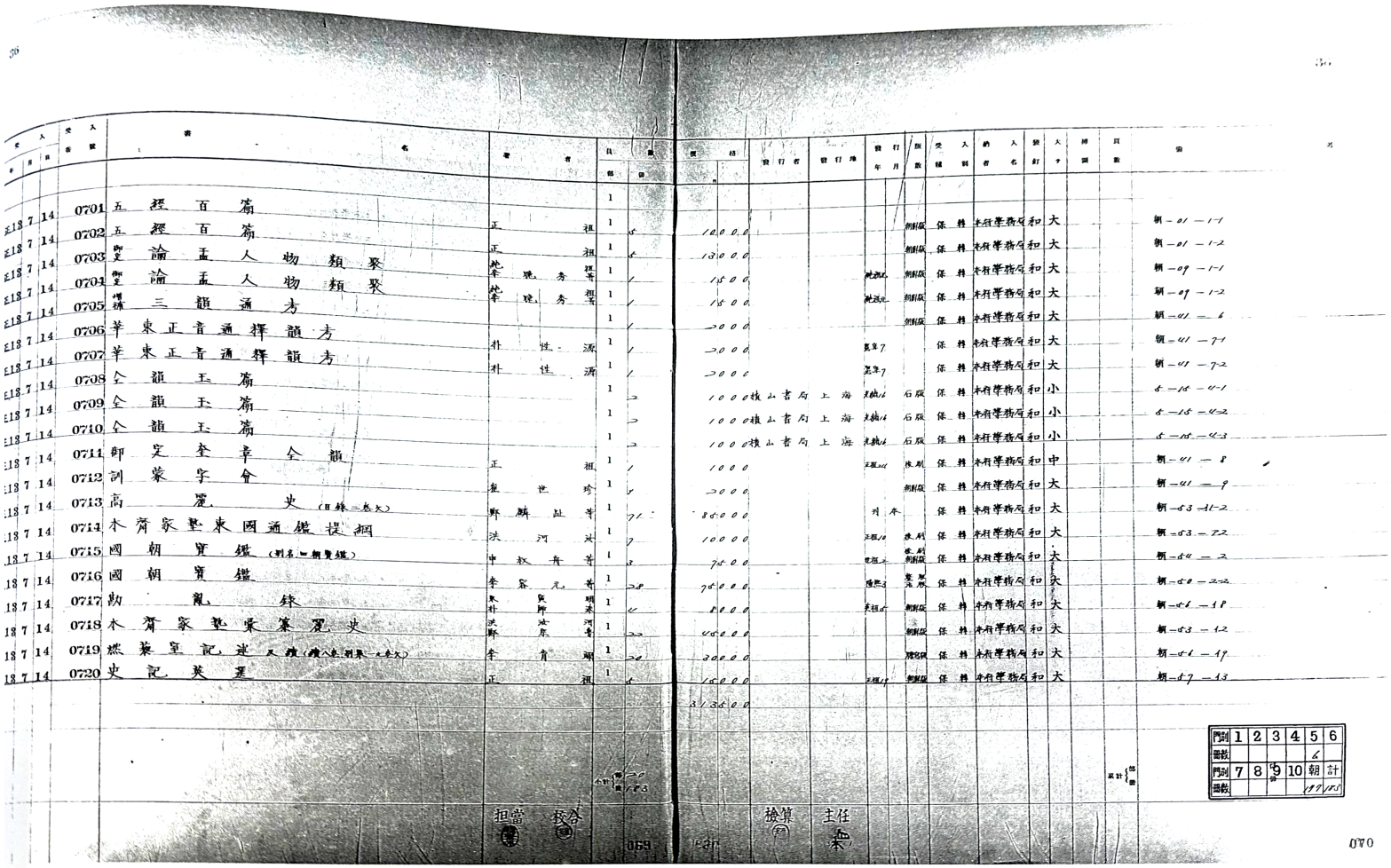

受入年月日	受入番號	書名	著者	員數	價格	發行者	發行地	發行年月	版數	受入種別	納入者名	製本	大小	補闕	頁數	備考
大13 7 14	0701	五經百篇		1												
大13 7 14	0702	五經百篇	正祖	1	15	10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1-1-1
大13 7 14	0703	御定論孟人物類聚	正祖	1	15	10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1-1-2
大13 7 14	0704	御定論孟人物類聚	李晚秀等	1	1	150		純祖元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9-1-1
大13 7 14	0705	增補三韻通考	李晚秀等	1	1	150		純元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9-1-2
大13 7 14	0706	華東正音通釋韻考		1	1	2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1-6
大13 7 14	0707	華東正音通釋韻考	朴性源	1	1	200		昭和7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1-7-1
大13 7 14	0708	全韻玉篇	朴性源	1	1	200		昭和7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1-7-2
大13 7 14	0709	全韻玉篇		1	2	1000	積山書局 上海	光緒16	石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小			5-16-4-1
大13 7 14	0710	全韻玉篇		1	2	1000	積山書局 上海	光緒16	石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小			5-16-4-2
大13 7 14	0711	御定奎章全韻		1	2	1000	積山書局 上海	光緒16	石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小			5-16-4-3
大13 7 14	0712	訓蒙字會	正祖	1	1	1000		正祖20	木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中			朝-01-8
大13 7 14	0713	高麗史 (目錄二卷欠)	崔世珍	1	4	20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09-9
大13 7 14	0714	本齋家塾東國通鑑提綱	野麟趾等	1	71	8500		刊年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3-11-2
大13 7 14	0715	國朝寶鑑 (別名=朝寶鑑)	洪河澈	1	7	1000		正祖10	木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3-7-2
大13 7 14	0716	國朝寶鑑	申叔舟等	1	8	750		世祖2	木版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0-2
大13 7 14	0717	勅撰龍飛錄	李容元等	1	30	7000		哲宗3	整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0-2-2
大13 7 14	0718	本齋家塾東寨置史	朴珽 吳熙常 洪奭周	1	6	800		英祖5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1-1-8
大13 7 14	0719	燃藜室記述 又續 (續八卷 別集一卷欠)	吳熙常 河謙鎮	1	22	45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3-1-2
大13 7 14	0720	史記英選	李肯翊	1	30	3000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51-1-1
			正祖	1	4	1500		正祖14	朝鮮版	保存	本府準務局	和	大			朝-47-13
						31350										

門別	1	2	3	4	5	6
冊數					6	
門別	7	8	9	10	朝	計
冊數					177	177

小計 冊 177 / 部 3

累計 冊 / 部

担當 校合 檢算 主任

069 070

1924.7.14. 조선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의 보관전환

<부록 3-1> 장서각 소장 '帝室圖書之章' 날인 도서와 『재산목록』 대조

장서각 소장 도서			『재산목록』상의 기재	
장서각 등록 도서명 / 표제(표제와 다를 경우)	청구 기호	인기	등재 표제	구입연월일
산천역설(山天易說)	K1-10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舊宮	山天易說	同上(隆熙四年五月十三日) 隆熙四年五月二十五日
시전대전(詩傳大全)	K1-39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	
예기집설대전 (禮記集說大全)	K1-73	帝室圖書之章	-	
광금석운부 (廣金石韻府) 金石韻府	K1-212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舊宮 外 3種	金石韻府	隆熙四年五月十三日
국조휘감(國朝彙鑑)	K2-33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國朝彙鑑	隆熙四年四月二十日
여강촬요(麗綱撮要)	K2-77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麗綱撮要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진승총(震乘總)	K2-101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震乘	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 明治四三年九月三十日
고사촬요(故事撮要)	K2-163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故事撮要	隆熙四年五月十一日
기자지(箕子志)	K2-174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箕子志	隆熙四年五月十三日
사백록(俟百錄)	K2-214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俟百錄	隆熙四年五月十三日
야승(埜乘)	K2-238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野乘	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
국조명신언행록 (國朝名臣言行錄)	K2-389	帝室圖書之章, 趙忠熙印, 信口, 李王家圖書之章	國朝名臣錄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삼인사적(三仁事蹟) 三仁錄	K2-420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三仁錄	隆熙四年五月十一日
광노자사적 (狂奴子事蹟)	K2-696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狂奴子事蹟	隆熙四年五月十一日

동어연보(桐漁年譜)	K2-726	帝室圖書之章, 舊官, 李王家圖書之章	桐漁年譜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초려선생연보 (草廬先生年譜)	K2-841	李王家圖書之章, 帝室圖書之章, 舊宮	-	
추계선생실기 (楸溪先生實記) 楸溪實記	K2-842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楸溪實記	隆熙四年五月十一日
휴암선생실기 (休庵先生實記) 休庵實記	K2-878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休庵實記	隆熙四年五月十一日
당호비고만성씨보목록 (堂號備攷萬姓氏譜目錄)	K2-1732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	
문보(文譜)	K2-1744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文譜	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
호보(號譜)	K2-1812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晩悟堂,齋沙	號譜	隆熙四年六月九日
호보(號譜) 東國號譜	K2-1813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東國號譜	隆熙四年七月二十日
만기요람(萬機要覽)	K2-2078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萬機要覽	隆熙四年五月十三日
흠흠신서(欽欽新書)	K2-3460	帝室圖書之章, 金景遂印, 李王家圖書之章	欽欽新書	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
송경지(松京誌)	K2-4249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松京誌	隆熙四年五月二日
평양지(平壤志)	K2-4326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平壤志	隆熙四年五月二日
평양지(平壤志)	K2-4327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趙萬九印, 經筵學士, 素亭	平壤志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죽계지(竹溪誌)	K2-4398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己卯文科, 趙忠燮印 外 2顆	조판재산목록 소재 竹溪集(隆熙四年五月十一日)과 동일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열하일기(熱河日記)	K2-4531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熱河日記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청구도(靑邱圖)	K2-4587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舊宮	靑邱圖	隆熙四年七月二十日

동평위공사견문록 (東平尉公私見聞錄) 東平聞見錄	K3-615	韓山李魯在禮伯印 , 禮伯,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東平聞見錄	隆熙四年五月二日
수문록(隨聞錄)	K3-628	舊宮,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隨聞錄	隆熙四年四月二十日
소대수언(昭代粹言)	K3-648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昭代粹言	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 明治四三年九月三十日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K3-660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舊宮	大東韻玉	隆熙四年五月十三日
국조시산(國朝詩刪)	K4-69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國朝詩刪	隆熙四年五月十三日
고산선생문집 (鼓山先生文集) 鼓山集(10책) 鼓山續集(3책)	K4-5757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鼓山集(10책) 鼓山續集(3책)	隆熙四年六月九日
둔암유고(遯巖遺稿) 遯巖實記	K4-5915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遯巖實記	隆熙四年五月十一日
매산선생집 (梅山先生集) 梅山集	K4-5980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梅山集	隆熙四年六月九日
석탄선생문집 (石灘先生文集)	K4-6145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石灘集	隆熙四年六月九日
송재선생문집 (松齋先生文集) 松齋集	K4-6195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松齋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수초당선생집 (遂初堂先生集) 遂初堂	K4-6219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遂初堂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樂章歌詞	K4-6774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樂章歌詞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연암집(燕岩集)	K4-6276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燕巖集	隆熙四年六月九日
용재선생문집 (庸齋先生文集) 庸齋集	K4-6326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庸齋集	隆熙四年五月十二日
은봉전서(隱峯全書)	K4-6394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隱峰全書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절곡집(節谷集)	K4-6451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節谷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제월당선생집 (霽月堂先生集) 霽月堂集	K4-6474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霽月堂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한정당집(閒靜堂集)	K4-6651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閒靜堂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해은선생유고 (海隱先生遺稿) 海隱集	K4-6657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海隱遺稿	隆熙四年六月九日
저헌집(樗軒集)	K4-6680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樗軒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활계선생유고 (活溪先生遺稿)	K4-6683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活溪先生遺稿	隆熙四年五月十一日
효염재선생유집 (孝廉齋先生遺集) 孝廉齋遺集	K4-6699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孝廉齋遺稿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용재선생문집 (慵齋先生文集) 慵齋集(2책)	K4-6325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慵齋集(3책)	隆熙四年五月十一日
용재선생유고 부눌재유고 (附訥齋遺稿) 慵齋遺稿(1책)	K4-6938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한포재집(寒圃齋集)	K4-6940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寒圃齋集	隆熙四年五月十一日
明史藁	C2-100	水曰征方學校之印, 新治縣師範學校之印, 帝室圖書之章, 舊宮, 李王家圖書之章	明史稿 80책으로 책수 동일	隆熙四年三月五日
西淸古鑑	C3-173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李王家圖書之章	欽定西淸古鑑 24책으로 책수 동일	大正元年十二月六日

*재산목록의 서명과 장서각 등록 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서각 등록 도서의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여 표제를 확인하고, 책수를 같은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부록 3-2> 벨기에 뢰번 가톨릭 대학교로 반출된 '규장각 도서' 목록

연번	규장각『도서출납부』		책수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조선총독부기증서」	
	도서번호	도서명		도서명(로마자)	도서명
1	72	周易諺解	5	Shūyeki genkai	周易諺解
2	234	童蒙先習	1	Dōmōsenshū	童蒙先習
3	346	詩經諺解	7	Shikyōgenkai	詩經諺解
4	369	中庸諺解	1	Chūyōgenkai	中庸諺解
5	413	孟子諺解	7	Mōshi genkai	孟子諺解
6	440	書傳諺解	5	Shoden genkai	書傳諺解
7	445	春秋經傳集解	15	Shunjūkeiden shikkai	春秋經傳集解
8	662	弘文館志	1	Kōbunkan-shi	弘文館志
9	1120	陸奏約選	1	Rikusōyakusen	陸奏約選
10	1170	皇明通紀輯要	24	Kōmin-tsūki shūyō	皇明通紀輯要
11	1889	孝經諺解	1	Kōkyōgenkai	孝經諺解
12	2118	聖學輯要	7	Seigaku shūyō	聖學輯要
13	2136	朱書百選	3	Shusho hyakusen	朱書百選
14	2199	唐宋八子百選	3	Tōsōhasshi hyakusen	唐宋八子百選
15	2290	朱子書節要	10	Shushi-sho setsuyō	朱子書節要
16	2645	敬信錄諺解	1	Keishinroku genkai	敬信錄諺解
17	3039	雅誦	2	Gashō	雅誦
18	3510	論語諺解	4	Rongo genkai	論語諺解
19	3833	自省篇	2	Gyosei jisei-hen	御製自省篇
20	3882	小學抄略內篇	1	Shōgaku shōryaku	小學抄略
21	3965	字恤典則	1	Jijutsu tensoku	字恤典則
22	3996	大學諺解	1	Daigaku genkai	大學諺解
23	4956	太學恩杯詩集	2	Daigaku onpai shishū	太學恩杯詩集
24	5334	論孟人物類聚	1	Gyotei ronmōjinbutsu ruiju	御定論孟人物類聚
25	5811	增修無寃錄諺解	2	Zōshūmuyenroku genkai	增修無寃錄諺解
26	6160	武藝圖譜通志諺解	1	Bugei-zufu-tsūshi genkai	武藝圖譜通志諺解
27	6505	還餉策題	1	Gyosei sakumon	御製策問

28	6631	人瑞錄	2	Gyotei jinsuiroku	御定人瑞錄
29	7217	萬歲曆	2	Banzai-reki	萬歲曆
30	7595	正音通釋	1	Katōseion tsūshaku inkō	華東正音通釋韻考
31	7622	萬國政表	4	Bankoku seihyō	萬國政表
32	7787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1	Bussetsu daihōbumo onjukyō	佛說大報父母恩重經
33	9810	千字文諺解	1	Senjimon	千字文
34	11020	太上感應篇諺解	5	Dajōkannōhen zusetsu	太上感應篇圖說
35	11460	离院條例	1	Riin jōrei	离院條例
36	11684	過化存神	1	Kaka sonshin	過化存神
37	11887	全韻玉篇	2	Zenin gyokuhen	全韻玉篇
38	12219	增補文獻備考	51	Zōho bunken hikō	增補文獻備考
총 38종 책수 합계			181		

부록 연표

연월일(양력)	내 용
1897. 2. 2.	고종, 경운궁으로 이차(移次)
1897. 10. 12.	고종,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
1904. 2. 23.	한일의정서 강요
1904. 10.	제실제도정리국 설치
1905. 3. 4.	궁내부 관제 개정 포달
1905. 11. 17.	을사조약 강요
1905. 12.	궁내부 재정회의 조직
1907. 7. 4.	임시제실유국유재산조사국 설치
1907. 11.	제실재산정리국 설치
1907. 11. 27.	궁내부 신관제 포달(1907. 12. 1. 시행)
1907. 12. 23.	법전조사국 관제 공포
1908. 2. 2.	궁내부 훈령 제64호로 궁내부 각 서고의 조사를 명함
1908. 9. 23.	규장각 분과규정 포달(1908. 9. 25. 시행)
1909. 4.	북한산행궁 도서 및 기록 이송
1909. 4. 26.	궁내부기록대출규정 제정
1909. 5.	정족산사고 도서 및 기록 이송
1909. 6. 11.	궁내부기록편찬보존규정 제정
1909. 7. 13.	이토 히로부미 도서 반출 (차람증상 일자)
1909. 11. 9.	제실도서대출규정 제정
1909. 11. 25.	제실도서보관규정 제정
1910. 4.	구 종친부 터 도서과 서고에 신축서고 착공
1910. 8. 29.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황실령 제20호 전 한국 궁내부 직원에 관한 건 반포(잔무 취급 개시)
1910. 12. 30.	이왕직 관제 재가
1911. 2. 1.	이왕직 업무 개시
1911. 6.	구 종친부 터 구 도서과 서고 신축서고 완공

1911. 6.	취조국의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강제접수
1912. 4.	취조국 폐지, 사무를 총독관방 참사관실로 이전
1913. 4.	조선총독부도서목록(조선판) 간행
1913. 10.	도쿄제국대학으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반출
1914. 11.	태백산사고·오대산사고 도서 및 기록 이송
1915. 5.	구관제도조사 사무가 참사관실에서 중추원으로 이관
1916. 1.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개시
1916. 3. 5.	활자 및 부속품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보관전환
1916. 12.	참사관분실 도서 정리의 일단의 완료
1921. 10.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간행
1922. 2. 22.	조선총독부 총무과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도서 보관전환
1922. 6. 12.	궁내성 도서료로 의궤 반출 (영수증상 일자)
1922. 11.	학무국 학무과분실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이관
1922. 12.	조선사편수위원회 설치
1923. 11.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 공포
1923. 11.	일제의 조선 제국대학 창설 위원회 발족
1924. 7. 14.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도서 보관전환
1924. 6.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교
1925. 3. 16.	일본에서 조선 도서를 벨기에로 발송 (총 6회 발송 중 제3차)
1925. 4. 3.	조선총독부도서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서 열람 시작
1929. 11.	경성제국대학 조선왕조실록 영인 사업 착수
1930. 8.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으로의 [도서 및 기록 일체] 보관전환 조회
1932.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잔존본 27책 경성제대로 이관
1933. 3.	경성제국대학 조선왕조실록 영인 사업 결료

[Abstract]

Reorganization of Joseon State-owned Book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Imperial Japan and Its Meaning

KIM, Sun-yo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untry's national record management system appears in relation to its political culture,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books and records were manag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uniqu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state. When politics by the intellectual class is maintained, the stat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also generally disclosed to the intellectual class. In the pre-modern period, knowledge and information generally tended to be monopolized by the ruling class. The aspect of the monopoly changed with moderniz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expanded from private to open, with the target of distribution expanded to ordinary citizens. Japan has denied the illegal forced annexation of Joseon and has insisted that it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 modernization of Jose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policy as it pertains to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d by Jose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the offices

of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in the palace and local National History Archives individually owned books and records. Depending on the purpose, various types of books and records, such as the king's words, Confucian Scriptures, and official documents, were kept together, with distinction and in order.

This management system began to be reorganized after Japanese involvement. On November 27, 1907, the Japanese led the revision of *Gungnaebu*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of the Korean Empire. The government offices belonging to *Gungnaebu* were merged. The functions of *Hongmungwan*, *Jongbusa* and *Donnyeongsa* were integrated into *Gyujanggak*. This reorganization was led by the Japanese to reduce the budget.

On September 23, 1908, the Regulations for the Subdivision of *Gyujanggak* were enacted and four divisions were established under *Gyujanggak.* These were *Jeonmo-gwa*, *Doseo-gwa*, *Girok-gwa*, and *Munsa-gwa*. The Japanese imperialists attempted to make *Gyujanggak* of *Gungnaebu* an organization with functions and structures similar to those of Japan's *Zushoryo* (Bureau of Drawings and Books) of *Kunaisho*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In addition, by each division under *Gyujanggak*, books and records under *Gungnaebu* were gathered by type.

Jeonmo-gwa managed the royal genealogy, the king's words, the king's portraits, and other such publications. *Doseo-gwa*, the Division of Books collected approximately 100,000 books from the old *Gyujanggak*, *Hongmungwan*, *Jibokjae* (King Gojong's library), *Sigangwon*, and *Bukhansan Haenggung* and managed them as "*Jesil* (Imperial Household) Books." *Girok-gwa*, the Division of Records managed the Records of *Gungnaebu*, which included "*Seungjeongweon Ilgi* (Daily Record of the Grand Secretariat),"

"*Ilseongrok* (The Record of Daily Reflections)," various *Deungrok* (transcribed records), *Uigwe* (illustrated records of rituals), and various official documents under Gungnaebu. *Munsa-gwa*'s work involved a variety of tasks, including the writing of "*Ilseongrok*" and the recording of history.

Regarding "*Jesil* Books," the opening of the Imperial Household Library was planned. However, the library was not opened, and along with Japan's forced merger with the Korean Empire, *Gyujanggak*, a management organization scheme for books and records, was abolished.

Books and records that were being managed by Gyujanggak were forcibly receiv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cords of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Korean Empire were also received by the Governor-General. The Investigation Bureau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took over and managed books and records owned by the Joseon state; a year later, it was managed by the Counselor's Office.

With being managed b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se books and records began to be considered 'books' regardless of their type. The Investigation Bureau, and later the Sub-office of the Counselor's Office, compiled a list and documentation of this book and its records. These books and records were used to investigate ancient customs and systems in Joseon. Japanese scholars also studied and referred to these books.

The purpose of the use of data by the Governor-General gradually shifted to 'historical compilation.' In November of 1922, books and records owned by the Joseon state were transferred to the administration of Academic Affairs Bureau.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ne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Library in 1925. For the opening of this library, some books that were kept in the Sub-office of the Academic Affairs Section were distributed. However, the distribution was limited to a few books. The Joseon State-owned books and records were still kept closed, and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were monopolized.

Meanwhile, when the Bureau of Investigation began to manage these books and records in 1911, some of them were separated and managed by *Yiwangjik* (*Yi* Household Agency). *Yiwangjik* mainly managed the records kept in *Bongmodang* by *Gyujanggak Jeonmo-gwa*, and the books and records of the *Jeoksangsan* History Archives. The royal records and general records were separately managed by *Yiwangjik*,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anag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act that books and records were leaked several tim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Regarding this issue, there are several well-known cases, and some have been returned to Korea. This study followed several unknown cases: books sent to *Terauchi Bunko* in Japan and books to the University Library in Leuven, Belgium. It is also necessary to track "*Hakbu*"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Korean Empire) books currently in the *Ogura Bunko* at the University of Tokyo.

keywords : book, record, catalog of books, Gyujanggak, *Jesil* (Imperial Household) Books, Sub-office of the Counselor's Office, library, Jangseogak

Student Number : 2017-36835